#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2012. 12

□ 연구 기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연구책임자 : 이 은 국 (연세대학교 교수)

□ 공동연구원 : 김 영 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 슝 용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이 정 주 (서울여자대학교 초빙강의교수)

□ 연구보조원 : 유 나 현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기 수 연 (서울여자대학교 석사과정)

신 등 연 (서울여자대학교 학부)

강 한 솔 (서울여자대학교 학부)

본 보고서는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 연 구 요 약



# 연구요약

#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성 차별적 요인과 배경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양성평등적 추진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이이 농·어업인의 삶의 질과 관련한 욕구에 부응한다는 사업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주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첫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분석을 실시했다. 둘째, 정부의 부처별 분야별 지원정책 현황 및 예산 등을 살펴봄으로써 사업분야별 실태를 파악했다. 셋째, 다양한 농어업인 지원 정책 중 성별 격차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배경에 대해 분석했다. 넷째, 각 정책 분야에 대한 수혜집단의 성별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요구도 차이인 성별요구도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성차별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제도를 발굴하고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 3.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사업지침, 실적, 지원 현황, 평가 계획, 결과보고 등에 대한 내용 분석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과 관련한 선행 연구 및 국외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종 통계를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서비스 이용 내용, 사업 인지도와 만족도, 개선사항

등을 설문조사하였다. 더불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과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에 에 있어서의 남녀 간의 차이, 지원사업의 효과와 성 차별적 요인과 배경, 그리고 개선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 4. 농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관련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분석

여기에서는 농어촌 남녀 인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농어촌 인구의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의 농가인구는 1980년 총인구의 28.9%인 1,083만 명이었으나, 빠르게 감소하여 2010년 6.4%인 306만 명이다. 인구구조도 변화하여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고령화율이 2010년 현재 농가인구중 31.8%로 전체인구에서의 11.3% 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의 고령화 정도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농가의 가족규모를 보면, 1990년 이후 큰 폭으로 축소하여 농가의 평균 가구원 수가 2010년 현재 2.6명이다. 또한 2인 가구 대부분은 65세 이상의 노인부부로 이루어진 가구이고, 1인 가구 대부분은 노인단독가구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농어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영세·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 대책이 내실있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여성 1인 노인가구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어촌여성의 연금 가입율이 낮고 특히 고연령층, 무배우자의 가입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어서 농촌의 극빈계층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 특히 노령화되어 있는 자급농의 경우 사회복지 정책을 통한 지원 요소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한편, 농산물시장의 개방 속에서 식품시장 규모가 커집에 따라 저장·가공부문의 역할이 증대되고, 유통경로의 전문화·다양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여성은 농업주종사자 중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농형태도 논벼 위주에서 채소·과수·화훼 등 원예작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들은 여성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작목이기 때문에 여성의 농업노동 참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발달, 상품의 포장과 마케팅 등 농업경영에 있어서도 여성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어 점점 그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영농인력의 주체로서 여성인력의 위상을 새롭게 하여 그에 걸맞는 IT 능력 등 다양한 역량 강화프로그램이 설계되고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2011년도 농가의 가구당 총소득은 3,014.8만원으로 전년대비 6.1%p 감소했다. 이와 같은 명목소득 수준에서의 농가소득의 감소는 도농간 소득격차를 확대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농가소득은 정체 및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며 도농간 격차를 벌이고 있으

므로 다양한 농외소득원 개발이 필요하다. 농산물가격의 상대적 하락으로 농업소득의 신장이 매우 불투명하고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농공단지와 같은 고용노동형 농 외소득 증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농촌지역의 고유한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 으로 녹색관광을 포함하여 다양한 농외소득원의 개발이 필요하다.

건강, 보육 등 돌봄노동, 문화향수 등 제반 측면에서 여성농업인의 복지수준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여성농업인 복지·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2008년도 농어촌 여성의 출산전후 몸조리 일수는 평균적으로 16.4일로서 도시(23.3일)에 비해 1주 정도 적게 나타난다. 관련하여 도시보다 낙후되어 있는 자녀의 교육여건 등을 포함한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2011년 통계청의 혼인통계 결과를 보면 남성 농림어업 종사자중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비율이 29%에 이른다. 농어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과 여성 결혼이민자의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입국 초 가족관계 형성기, 자녀양육 및 정착기 등으로 나누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섬세한 정책설계가 요구된다.

# 5. 농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 분석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표적인 법률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들 수 있다. 2004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보건복지, 교육, 문화, 지역개발 등 농어촌 생활의 전반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들어졌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특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중 제3장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 2, 제16조, 제19조, 제19조 2와 「대한민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농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게서 빈번히 발생하는 질병과 재해의 예방과 치료,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두 번째, 교육여건 개선 분야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가 농어촌 학교 학생과 교직원 및 시설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유소년 시기의 교육은 개인의 정체성과 직업의 방향이 정해지는 성장의 시기로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미래에 대한 투자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고등 교육에 대한 기회 보장과 투자는 농촌의 경제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세 번째로 생활인프라 확충 분야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제5장 중 제29조, 제30조, 제32조을 통해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경관의 보전, 그리고 정보화 촉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도로와 대중교통, 하수도, 생활 폐기물 등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의 기본적인 요소이며 정보화의 정도는 심화된 교육과정 참여와 리더 교육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

경제활동 다각화에 대한 내용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6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도농교류에 관한 내용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2장 제5조, 제6조, 제7조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제16조, 제17조, 제19조를 통해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섯 번째로 문화여가 여건 향상에 대해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제33조, 제34조는 농어촌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여섯 번째인 환경경관 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제5장 제30조에서 농어촌의 경관 보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2012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13개의 정부부처 및 조직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45개, 문화관광부 12개, 교육과학기술부 10개, 보건복지부 8개, 환경부 8개, 농업진흥청 6개, 산림청 5개, 지역자치단체 5개, 여성가족부 4개, 국토해양부 4개, 행정안전부 3개, 고용부 1개, 소방방재청이 1개의 사업을 시행중이다. 각 사업분야별로 부처의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9개, 보건복지부가 8개, 여성가족부 4개, 지역자치단체가 2개, 농업진흥청, 고용노동부가 각각 1개씩의 사업을 시행중이며,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사업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9개, 농립수산식품부 5개, 지역자체단체가 3개의 사업을 시행중이다. 세 번째인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분야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5개, 국토해양부 3개, 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2개씩의 사업을 시행중이다. 경제활동다각화 분야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7개, 농업진흥청 4개, 산림청 2개, 문화관광부 1개의 사업을 시행중이며, 환경·경관 개선부문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9개, 환경부 6개, 산림청 3개,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농업진흥청 각각 1개씩의 사업을 시행중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역량강화부문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9개의 사업을 시행중이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은 보건·복지 증진(농어업인 생활안정 강화,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농어촌 취약계층 복지지원, 농어촌의 능동적 복지기 반 강화),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우수 공교육 프로그램 확충 및 교원확보,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주도의 개발체계 정착지원, 정주계층별 선도거점 개발,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농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농어촌산업 고도화, 체험, 휴양기반 구축 및 도농교류 활성화), 문화・여가 여건 개선(생활친화형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농어촌 주민 문화향유 지원, 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 및 교육강화),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활용, 농어촌 환경오염 방지,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구축), 지역역량 강화(지역발전 인적자원 확충, 지역발전 컨설팅 강화, 지역발전 네트워크 강화, 도시민 및 귀농인력 활용 강화) 등 7개 분야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6.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분석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농어업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농업인력 육성정책 등의 다양한 정책 사업에 대해 과거에 실시되었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점이 발견되었다. 첫 번째로 여성의 실질적인 사업 참여율이 낮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와 욕구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다. 여성의 실질적인 참여기회를 확 대하기 위해서는 여성참여율최저쿼터제 등의 제도가 필요하며, 남성과 여성의 현실 및 욕구 차이에 대해 고려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사업 진행과정에서 여성들의 의견 반영이 이루어질 통로가 적어 여성이 주변적 지위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는 위원회에 여성 참여 규정을 명 시하고, 여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공무원 및 정책업무관 련자들의 양성평등 의식 및 성인지적관점 수준이 그리 높지 않으며, 성별분리통계의 수 집·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책 관련자들에게 양성평등교육 및 성인지적관점 제 고를 통해 인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성별분리통계 양식의 개발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사업 홍보 방식은 여성들이 정보 제공 받는데 있어 제한적이므로 부녀회 및 여성 개인 이메일 등의 여성의 정보 접근성이 높 은 수단을 활용하여 홍보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선행연구 이외에도 해외에서 연구·조사된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미국의 경우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국경지역여성건강조정센터'를 운영하여 여성을 위한 포괄적이며 다학문적 서비스를 개발하고, 여성에 특화된 설비와 인력 마련을통해 농어촌여성들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옹호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농어촌여성건강프로그램을 통해 성인지적 건강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개 지역의 여성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과 모임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도시경관계획의 일환으로 수행된 '대중교통에서의 성편향성 진단'에 서 교통부문이 남성통행자 중심으로 개발되는 원인을 여성 이용자의 의견 반영 실패로 지적하고 있으며 여성전문인 육성, 의사참여 확대, 양성평등에 대한 공공부문의 의무사 항 도입 등을 통해 해결하였다. 마지막으로 호주의 농업인력육성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농업과 자원관리에서의 여성을 위한 계획"은 농촌여성, 여성농업인, 농촌여성 관련 지 원기관 종사자로 구성된 '농촌여성 활동가 집단'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여성들의 정책 참 여를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지원을 돕고 있다. 연방 농림부는 여성을 주요 정책 수 혜자로 재인식하고, 여성을 농업 정책 사업의 결정 및 집행에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전략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실천지침을 개발하여 정책결정부문에서 여성을 포함함 에 있어 가장 좋은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방 빅토리아 주의 '농업 및 자원관리에서의 여성 등록명부 프로젝트'는 전문적 여성을 포함하는 데이터 개발을 통해 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에 농업 및 자원 관리 분야에 관심 있거나 경험 있는 여성 들을 임명하고 있다. 다양한 해외 사례는 여성들의 참여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 적 대안의 마련, 정책결정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의 개 발, 사업 진행과 운영과정에 여성의 적극적 의견 반영 등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 7. 성별요구도 분석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여기에서는 다양한 문헌분석과 전문가 인터뷰, 농어업인 면접 및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성별요구도를 바탕으로 사업과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다. 먼저 각분야별 성별요구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 · 복지 증진 분야에서는 농어업인 생활안정 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데 이를위해 농어업인 연금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후계 여성농업인을 위한 영농자금지원과 농부증 치료를 위한 한방치료 지원도 요구하고 있다.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건강관리서비스 및 효율적인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을 요구하고있으며, 농어촌 취약계층 복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고령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촌형일자리 창출, 여성 1인 노인가구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영세·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 대책 마련, 농번기 시 인력고용지원, 노령화되어 있는 자급농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을통한 지원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농업인을 위한 건강 관련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여성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보육

관련 복지정책 수립과 관련해서는 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보육료지원 대상범위 확대, 면단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보육도우미 서비스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다문화 가족과 여성 결혼이민자의 정착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확충 및 활용, 농번기시 가사도우미 제도, 다문화 여성에게 건강검진 홍보도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분야 사업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농 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사업에서는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확충을 요구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교육 수준의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경제활동 다각화 분야 사 업별 요구도 분석 결과는 이 분야에 대해 매우 다양한 요구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데, 먼저 농어촌산업 고도화 사업과 관련하여, 여성농업인 교육 강화, 특히 여성 농업인 을 위한 특화된 창업 교육 등 여성농업인의 창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사업의 활 성화, 부부공동 영농교육, 마케팅・브랜드・정보화・관리・리더십(토론 및 회의기법 등 포함) 교육 등 여성농업인 경영 능력 향상 지원, 여성농업인의 경영교육을 위한 통합 교 육기관 설치, 지속적인 기술 교육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법적 지식과 시설 설치 이 용에 대한 창업교육을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제공, 창업 후 지속적인 기술 및 경영교육 지원 및 창업뿐만 아니라 사업운영 자금지원, 농산물가공, 유통, 농촌관광 등으로 진출 하도록 기술 및 자금을 지원,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센터 설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 어, 많은 젊은 여성농어업인들은 농외 소득원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원하는데, 구 체적으로 지속적인 기술 및 경영교육, 일손 부족 문제 해결, 운영자금 지원, 고령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촌형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홍 보와 관리와 교육기간 동안 농사 도우미 제공도 현실적인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중요한 사업과제이다.

네 번째로 문화·여가 여건 개선 분야 사업별 요구도 분석 결과, 여성농업인을 위한 문화정책 수립, 여성농업인단체 및 소규모 동아리 지원, 여성농업인 센터의 확대 및 적극적 활용, 문화바우처 제공, 다목적 문화센터 마련 혹은 현재 시민문화센터를 다목적으로 활용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분야 사업별 요구도 분석 결과 환경·경관관리를 포함하여 복지, 주택, 환경 및 산업정책을 포괄하는 종합정책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역량 강화 분야 사업별 요구도 분석 결과, 여성의 지역사회활동이 우수한 마을 우대, 리더십 교육, 경영·관리 교육 등을 통해여성 인력을 육성, 귀농여성농업인에 대한 마을 주민과의 융화를 통한 정착 기회 제공, 귀농여성농업인에게 기술 분야에서의 여성친화적인 교육 제공, 여성용 농기계 개발 및 저가임대(보조금 지원 및 공동구매 기회마련),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교육 실시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성별요구도 분석을 바탕으로 118개의 사업과제를 살펴보고 대상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11개의 사업과제에서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는 결과를 얻었다.

분야	과제명	문제점 (개선 전)	해결책 (개선 후)
	농지담보 노후 연금제도 지원 (1-3-2-1)	1. 대부분의 농지소유자가 남성이므로 여성이 남성의 연금수령액에 의존 2. 농지연금 가입시 배우자 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조항 3.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 인'이라는 가입요건	1/2. 여성 농업인들도 '가 정경영협약'등을 통해 남편 이 수령하는 농지담보 연 금에 대한 권리 확보가 가 능하도록 개선 3. 영농경력을 증빙하는 서 류를 현실화하여 여성의 농업활동 인증이 용이해지 도록 개선
보건·복지 증진	취약농가 인력지원 (1-3-5-1)	1. 영농도우미의 사업 지원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며, 신청을 위한 자격 조건이 매우 까다로움 2. 1년간 영농도우미는 연 간 10일까지, 가사도우미는 12일로 제한 3. 농업인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에 걸 린 경우 영농도우미를 이용 할 수 없음 4. 영농도우미는 일당 (52,000원), 가사도우미는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활동 비 (10,000원)만 지급	1. 신청 조건을 완화하여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 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 2. 영농 및 가사도우미 이용 일수를 현실적으로 개선 3. 가족의 간병을 위해 영농업무를 할 수 없을 경우를 위해 가족의 사고 질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4. 가사도우미에게도 업무에 대해 영농도우미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도록 개선
교육여건 개선	한국농수산 대학 개편·운영	1. 여전히 낮은 입학생 비율 - 접근성이 떨어져 타 도에서의 입학과 통학이 어	1. 인터넷 강의 등의 확충 을 통해 접근성 문제를 해 결하여 여학생 비율을 높

	(2-1-5-2)	려움 2. 예비여성농업인을 위한 특화된 과목이 부재하여 졸 업 후 타 직종으로 취업 1. 정보활성화 교육 여성수	임 2. 여성에게 특화된 과목을 마련 1/2. 여성농업인센터 등을 활용하여 여성친화적인 환
기초생활 인프라	농어촌 정보이용활 성화 (3-3-3-3)	1. 경모될경화 교육 역정부 혜자는 2011년 38%로 점점 하락 2. 낯선 사람을 집안에 들 여야 하는 방문교육의 형태	결하여 역정전화적인 된 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함. 2. 여성교사를 적극 활용하 여 여성교육생에 대한 방 문교육을 실시
	복합산업화 지원 관리 (4-1-1-1)	1. 자부담 50% (국고 50%, 지방·자부담 50%) 조건은 경제적 자본이 남성에 비해 열악한 여성 농어업인 (단 체)에게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 더욱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음.	1. 여성 농어업인과 단체에 저금리 융자를 통해 자금 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경제활동 다각화	농어업 경영컨설팅 (4-1-3-1)	1. 법인단위 지원으로 (법 인 당 1명) 교육생을 선발 하는 경우 여성보다는 법인 의 대표인 남성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여성의 참여 율이 낮을 가능성이 있음. 2. 농업기술센터 등의 장소 가 교육장소로 활용될 경우 여성들이 이용하기 어려움	1. 여성을 공동대표로 세우 거나 농어업 교육에 법인 의 대표로 여성을 참여시 킨 경우 훈련비용을 경감 해주거나 농어업 경영관련 프로그램 지원 시 우선적 으로 선발권을 부여하는 제도 마련 2.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는 여성 농어업인의 특 성을 고려하여 보다 여성 친화적인 여성농업인센터 나 인터넷을 통해 강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

소규모 농어업 창업 및 소득화 지원 (4-1-3-2)	1. 복잡한 법률과 문서작성에 대한 두려움 2. 위생관리와 시설에 대한 강한 규제에 대한 정보의부재 3. 위생관리, 유통, 마케팅, 홍보 등 사업체 운영에 대한 어려움	1. 문서의 간소화 1, 2, 3. 문서작성, 법률상 담, 사업체 운영 컨설팅 (유통, 마케팅, 홍보) 등의 문제를 한 곳에서 묻고 대 답해줄 수 있는 원스톱 서 비스 스타일의 조직 운영
농가마을거 점별 특성화된 농어촌체험 휴양 기반 확충 (4-2-1-1)	1. 다단계로 이루어지는 교육 육 2. 접근성이 떨어지는 교육 장소 3. 가정주부 및 여성농어업 인이 참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교육기간 (1박 혹은 2 박) 4.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사 무장의 자격 요건	1. 교육단계의 개선: 1주일에 2회씩 4주 와 같은 형식으로 운영 2, 3. 교육생의 가정에서가까운 여성농업인센터,마을회관 등의 이용을 통한 교육 장소 접근성 강화;인터넷 강좌 등을 통한 교육 서비스 제공 3. 여성만을 위한 무박 교육프로그램을 신설 4. 자율근무제 등을 두어여성 사무장의 활동이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4-2-2-1)	1. 다단계로 이루어지는 교육 육 2. 접근성이 떨어지는 교육 장소 3. 가정주부 및 여성농어업 인이 참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교육기간 (1박 혹은 2 박) 4. 고급 수강을 위한 마을	1. 교육단계의 개선: 1주일 에 2회씩 4주 와 같은 형 식으로 운영 2, 3. 교육생의 가정에서 가까운 여성농업인센터, 마을회관 등의 이용을 통 한 교육 장소 접근성 강화; 인터넷 강좌 등을 통한 교

		리더 5년 조건	3. 여성만을 위한 무박 교육프로그램을 신설 4. 마을리더 5년 조건 해지 1. 여성농업인센터, 마을회관을 비롯한 여성친화적인
지역역량 개선	농업인 교육훈련 (7-1-1-0)	1. 여성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기술센터에 교육과정 개설 2. 여성수혜자 비율 28.9%는 다른 농어업 교육 프로그램에 비해 양호한 수치이나 여전히 사업대상자 비율 51.5%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환경에서 교육과정 개설 2. 여성에게 특화된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창업, 현장실습, 경영으로 연계 되는 교육훈련에 대해 적 극적인 홍보가 요구됨 3. 특정 지역에서 1년에 몇 차례 개설하는 교육방식 대신 주거지 근처나 인터 넷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여 성친화적 교육환경을 마련 해야 함

# 8. 정책개선 과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보건복지 증진, 교육여건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경제활동 다각화, 지역 역량 개선 등의 분야에서 성별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견되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정책에서 ① 가사·육아·농어업을 병행하는 여성의 삶에 대한 지원 부재, ② 남성중심적인 개인역량강화 훈련, ③ 창업 및 농업 외 활동 진출 장벽, ④ 여성 리더 육성 제도의 부재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각각의 문제가 개별적으로 여성 농어업인의 삶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연결고리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전반적인 농어촌에서의 여성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은 가사와 육아, 농어업을 병행하여 개인시간을 갖고 자기 개

발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도시의 사무직과 근로직과는 달리 업무 시 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주말이나 휴일에도 쉴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육체 노동이 요구되다. 따라서 개인역량강화를 위한 훈련이나 농업 외 활동을 통한 창업, 마 을 사무장 등의 리더십 등을 발휘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보육시 설을 통해 육아를 돕거나, 가사도우미, 영농도우미 제도를 통해 여성 농어업인들이 개인 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면·리 단위에는 보육서 비스 대상자인 어린이의 수가 너무 적어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대 로 된 보육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가사도우미나 영농도우미는 특정한 계층이나 중증 환 자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일반 여성 농어업인은 거의 혜택을 볼 수 없다 는 것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여성의 역 량향상을 위한 교육, 창업지원, 여성리더 발굴 등의 제도가 효과를 보기 매우 어려울 것 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여성 농어업인 자기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창업 및 사업운영, 기술 교육 등에 참여할 때 대신 가사와 농어 업을 돌보아줄 수 있는 도우미를 파견하도록 사업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읍·면·리 를 포함한 농어촌 지역에 다용도 마을회관 등을 활용하여 보육시설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여성 농어업인들이 가사·육아·농어업의 과중한 업 무를 경감하고 농어촌의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나타난 두 번째 문제점은 비효율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개인역 량 훈련에서 찾아볼 수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지방자치단체, 농협, 농업기술센터 등의 단체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농업기술과 농기계사용법에 대한 훈련, 창업과 경영에 대한 컨설팅 교육, 도농교류 및 마을 특색화 산업인력 양성 교육, 마을 리더 및 사무장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마을의 인재를 육성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만들어 가계수익 안정화를 도모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여러 기관이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때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효과적인 홍보도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와 사업수혜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다. 즉 특정 프로그램을 알고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여 다양한 교육을 받는 반면, 상대적으로 정보 습득이 떨어지는 집단은 전혀 교육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는 현상이 있다. 이 때 폭넓은 사회생활의 기회가 없는 여성은 교육과정에서소외되기 쉬우며 이는 장기적으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이어진다.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자격과 실행 방식도 여성의 교육 참여를 저해하는 큰 원인이다. 몇몇 프로그램은 전 단계 이수를 필수로 명시하거나, 농업경력 5년, 10년 이상을 자격에 포함시킨다. 여성의 농업활동이 근거로 남기 어렵고, 출산과 보육으로 인해 경력의 단절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이러한 자격 조건들은 여성의 교육 프로그램, 특히 고급 프로그램으로의 진입을 막게 된다. 또한 1박 2일, 2박 3일로 타 도시나 도에서 실시되고 있는일부 프로그램은 여성의 참여율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남성에 비해 장거리여행이 쉽지 않은 여성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남성중심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가사와보육을 책임져야 하는 여성이 참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근거리인 경우에도 농업기술센터처럼 이용자의 다수가 남성인 공간에서 남성과 함께 이루어지는 교육은 여성의 교육 참여 욕구를 꺽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여성의 경력 부분은 예외적으로 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도 1박 2일과 같은 형식으로 초중고급을 모두 참여해야 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대체 수강하여 타 지역으로의 이동과 숙박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지역을 중심으로 열리는 교육도 교육 내용을 여성의 필요에 맞추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장소도 마을회관이나 여성농업인센터 등으로 좀 더 여성친화적인 장소에서 여성에게 필요한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 번째로 여성의 창업과 농업 외 활동 (체험교사, 숲 설명가 등)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다. 농어촌 지역의 여성은 많은 자원을 스스로 축적한 상태로 그들이 향유하는 문화와 음식이 모두 좋은 소프트웨어의 자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를 상품으로 개발하기위해서는 많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즉 사업을 시작하기위해서는 각종 법적,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청서 작성부터 상표등록, 가공장비 설치, 홍보에 이르기까지여성 농어업인이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많은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여성 농어업인의 창업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높지만 실상 지원 프로그램의 활용도나 그 효과는 미비한 편이라 볼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 자체도 창업, 홍보, 마케팅 등으로 세분화되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여성 농어업인들이 시간을 따로 만들어 모든 훈련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프로그램 대신 여성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적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시키고 관리와 운영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원스탑 서비스가 요구된다. 즉 현재의 과목당 교육 대신 여성 농어업인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지식과 법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단일화된 창구를 만들어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농업 외 활동에 있어서도 현재 많은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미 지적한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교육도우미 지원,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많은 여성 농어업인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 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정 활동 (관광관련, 민박, 체험교실 등)에 대한 여성친화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목적 문화센터, 여성농업인센터, 마을회관 등에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여성이 경제·사회적으로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농어촌의 여성리더 부재현상이다. 여성들이 식품과 가공된 농산물을 통해 창업을 하고 숙박·민박 및 농촌 체험 등의 농업 외 활동에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농어촌의 여성리더는 찾아보기 쉽지않다. 여전히 대부분의 기업주와 실질적인 대표는 남성이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동을 제공하는 자리에 머물고 있다. 또한 마을에서도 사무장 등리더십 위치는 남성인력 중심이다. 그러나 도농교류가 활발해지고 여성의 소프트웨어가 농어촌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여성리더의 육성이 요구되므로 중점적으로 여성리더 육성을 위해 리더십 프로그램에 여성할당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 ABSTRACT

Gender Impact Assessment Analysis on the Policie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Farmers and Fisher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nduct Gender Impact Assessment Analysis on the policies improving quality of life for farmers and fishers and to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to make rural environment more beneficial for both men and women. 118 programs in seven policy groups – (1) health and welfare; (2) education; (3) infrastructure; (4) economy; (5) culture; (6) environment and landscape; (7) regional capacity were evaluated with Gender Impact Assessment Analysis. 11 programs among them contained gender-biased contents in rules and regulations as well as service implementation plan. Based on the results of Gender Impact Assessment Analysis, suggestions to make policies more gender-cognitive were made.

As the first step of the research, socio-economic environmental changes in Korean rural communities were analyzed to develop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farmers and fishers. In the demographical changes in rural areas, rapid industrialization results in the shrinking and aging rural population. The share of the members of farm households in the total population continuously dropped from 28.9% in 1980 to 6.4% in 2010. Young people have accounted for most of the decrease in the rural population, resulting in the rapid aging of the population. The falling rural population and rapid aging have resulted in the change of family structure as well. The average number of farm household members is 2.6 persons in 2010, overtaking urban families. In rural communities, the number of aged citizens who live alone has been rising. Most of the aged citizens living alone are women and they are not only economically poor and unhealthy, but they are also not well protected by social security net such as national pension system.

Under the circumstances, needs of women in farming and fishing industry have changed. As the types of businesses diversified, female farmers and fishers want to earn off-farm incomes and stabilize and expand their income sources. Farming in Korea has undergone a change from producing food crops mainly to planting different types of crops and producing livestock, specialty crops and flowers. And with the market opening of agricultural products, much value is added to the processing and preserving rather than producing. E-commerce is also activated in agricultural product market. Thus, the roles of women farmers are expected to be enlarged. Human resources of women farmers should be developed and special training programs should be provided including IT capacity building, tailored to the needs of these women.

In addition, women farmers and fishers feel the lack of welfare services such as child care and health services. They are discovered to enjoy far less welfare services. Many of them are limited in the access to health services, child care services, and cultural activities. More social welfare and cultural infrastructure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for rural women to enjoy equivalent benefits. In addition general living environments should be improved including roads, parking spaces, central water supply and sewage. Many women in rural communities concern the educational environments for their children, which should be addressed.

The results of Gender Impact Assessment Analysis showed inequities among 11 programs in 5 different policy groups. Major problems were found in programs related to economy and regional development, which were closely related to social and economic independence of women in rural and fishing communities. In addition to the detailed policy implications for each problem to amend gender inequalities in programs, more comprehensive policy recommendations were as follows; ① increases in child support and domestic help for women in business and leadership training as well as in busy agricultural and fishing works; ② institutional changes in training programs, which are inefficient and

	nted; ③ supp							
	institutional	efforts	to raise	female	leaders	in rural	and	fishing
communit	ies.							

# · 하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 목 차

제 1 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3. 연구 범위 및 방법 7
제 2 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관련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분석 11
1. 농어촌 인구의 변화
2. 농어촌 기족의 변화 21
3. 농어업 구조의 변화 26
4. 농어촌 환경의 변화 38
5. 요약 및 시사점 45
제 3 장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 종합 분석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령 51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 71
3.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과제 선정 89
제 4 장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분석 91
1. 선행연구 분석 93
2. 해외사례 분석
3. 요약 및 시사점
레트카 서버스그는 보셔
제 5 장 성별요구도 분석 ······ 123
1. 문헌분석

2. 면접결과 분석 ···································	
제 6 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1.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도출 2. 핵심사업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 7 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의 성 인지적 추진을 위한 개선 방향·  1. 정책의 성 차별적 요인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199 201 204 208
제 8 장 결론	215
참고문헌	223
부록	225

# 표 목 차

<표 1-1>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관계8
<표 1-2> 연구체제 ··········10
<표 2-1> 농어가 총인구의 변화14
<표 2-2> 연령계층별 농가 인구와 전체 인구 비교16
<표 2-3> 연령계층별 어가 인구와 전체 인구 비교
<표 2-4> 연령대별 농가 인구17
<표 2-5> 연령대별 어가 인구19
<표 2-6> 경영주 연령별 농가 분포20
<표 2-7> 경영주 연령별 어가 분포20
<표 2-8> 연도별 농·어가 수 변화 ··································
<표 2-9> 총가구수 대비 농·어가 규모 비중 ···································
<표 2-10> 가구원수별 농가 및 평균 가구원23
<표 2-11> 가구원수별 어가 및 평균 가구원23
<표 2-12> 세대별 가구구성 비교(2005년)24
<표 2-12> 세대별 가구구성 비교(2005년) ····································
<표 2-13> 결혼이민자 및 자녀수 추이 ···································
<표 2-13> 결혼이민자 및 자녀수 추이
<표 2-13> 결혼이민자 및 자녀수 추이       25         <표 2-14> 외국인 여성과 혼인한 농림어업인 수 추이       25         <표 2-15> 국내 총고용과 농림어업 고용 추이       28
<표 2-13> 결혼이민자 및 자녀수 추이       25         <표 2-14> 외국인 여성과 혼인한 농림어업인 수 추이       25         <표 2-15> 국내 총고용과 농림어업 고용 추이       28         <표 2-16> 전·겸업별 농가 수       29
<표 2-13> 결혼이민자 및 자녀수 추이25<표 2-14> 외국인 여성과 혼인한 농림어업인 수 추이25<표 2-15> 국내 총고용과 농림어업 고용 추이28<표 2-16> 전·겸업별 농가 수29<표 2-17> 전·겸업별 어가 수30
<표 2-13> 결혼이민자 및 자녀수 추이25<표 2-14> 외국인 여성과 혼인한 농림어업인 수 추이25<표 2-15> 국내 총고용과 농림어업 고용 추이28<표 2-16> 전·겸업별 농가 수29<표 2-17> 전·겸업별 어가 수30<표 2-18> 경지규모별 농가 수31
<표 2-13> 결혼이민자 및 자녀수 추이25<표 2-14> 외국인 여성과 혼인한 농림어업인 수 추이25<표 2-15> 국내 총고용과 농림어업 고용 추이28<표 2-16> 전·겸업별 농가 수29<표 2-17> 전·겸업별 어가 수30<표 2-18> 경지규모별 농가 수31<표 2-19>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수 및 품목별 농가 수 변화33
<표 2-13> 결혼이민자 및 자녀수 추이       25         <표 2-14> 외국인 여성과 혼인한 농림어업인 수 추이       25         <표 2-15> 국내 총고용과 농림어업 고용 추이       28         <표 2-16> 전·겸업별 농가 수       29         <표 2-17> 전·겸업별 어가 수       30         <표 2-18> 경지규모별 농가 수       31         <표 2-19>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수 및 품목별 농가 수 변화       33         <표 2-20> 연도별 소득종류별 농가소득       34

<표 2-24> 정보화 현황별 농가
<표 2-25> 정보화 현황별 어가····································
<표 2-26> 농부증 판정 결과····································
<표 2-27> 질병치료시 애로사항············41
<표 2-28> 출산 전후 몸조리 일수····································
<표 4-1> 충청남도 농업인력 육성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97
<표 4-2> 전라북도 농업인력 육성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99
<표 4-3>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101
<표 4-4> 사업 지침에 대한 개선방안103
<표 4-5> 기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공통 사항116
<표 4-6> 사업별 성별영향분석평가117
<표 4-7> 해외사례 분석
<표 5-1> 설문조사 결과: 삶의 질 만족도125
<표 6-1> 직업에 대한 만족도
<표 6-2> 월 수입에 대한 만족도168

# 그 림 목 차

<그림 2-1> 2010년도 남녀 농가인구의 연령별 구성18
<그림 2-2> 국내총생산의 산업별 비중 변화 추이 ···································
<그림 2-3> 전·겸업별 농가 구성비 ·······29
<그림 2-4> 농업 경영형태별 농가 구성비32
<그림 2-5> 농가소득 구성비 추이35
<그림 2-6> 여성농업인의 규모 (2010년)37
<그림 2-7> 가장 필요한 여성복지사업42
<그림 2-8> 자녀의 교육여건 만족도44
<그림 2-9> 가장 필요한 문화·여가시설 ····································
<그림 $2$ - $10$ > 농산어촌과 도시의 생활여건 등에 대한 만족도 차이45
<그림 4-1> 미국 농어촌/국경지역 여성 건강 조정센터(RFCCs)의 전달체계 109



# 제 1 장 서 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 연구 내용
- 3. 연구 범위 및 방법

# 제1장 서 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농업인이란 ①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②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一④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된다.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9조와「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그리고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4조 (조합원의 자격조건)도 농업인을 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④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농수산물 출하 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통칭하여 사용하는 용어로 어업자는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며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르면 어업인이란 ①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②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③ 영어조합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이다.

연구의 제목에 따라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법률에 정의한 농어업인으로 규정되어야하나 여성 농어업인의 경우는 가사, 육아와 함께 업무를 병행하기 때문에 실제법률상으로는 농어업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통계나 연구 상에서는 누락될 우려가있다. 또한 젊은 여성 농어업인의 경우 특정기간동안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법률적 기준에서의 농어업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나,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의 현실로 미루어볼 때 다시 농어업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여성 농어업인을

위한 정책개선의 목적이 강한만큼 연구의 대상을 농어촌 주민으로 정의하여 잠재적인 여성농어업 인력인 농어촌 거주 여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는 도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전국 1,200명을 대상으로 주택, 교육, 교통, 의료, 문화, 전반적 삶의 질 등 6개 분야 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농어촌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는 29.7%로 도시민의 40.3%보다 낮은 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주택, 사교육서비스, 대중교통, 문화생활 등의 분야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주택 만족도는 농어촌과 도시가 각각 52.2%와 52.3%로 비슷했으나 부엌, 화장실, 냉난방시설에 큰 불만족을 표시하였다. 또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있는 반면 학원 등 사교육을 이용할 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ㆍ교통 안전도는 농어촌이 51.4%로 도시의 48.8%를 앞섰지만, 대중교통 만족도는 농어촌이 40.4%로 도시의 60.3%에 비해 크게 낮았다. 문화생활 면에서도 농어촌이 22.4%로 도시 37.7%보다 매우 저조한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그 밖에도 현재 대한민국의 농어촌은 부족한 의료시설과 서비스 시설로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고 해당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농어업인들에게 각종 복지·의료·교육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차 5개년 계획은 2005년부터 5년간 22조 3천억을 투입해 ① 농산어가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② 의료기관 부족과 교육의 질 저하, ③ 도시에견취 기초생활여건이 크게 취약한 농산어촌의 현실 등을 전제로 4대 분야, 139과제가 추진됐다. 이후 2010년부터는 2차 5개년 계획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과 가구 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1년 3월 통계청이 5년마다 조사해 발표하는 '2010년 농림어업 총조사 잠정집계 결과'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국내 농가 인구는 전 인구의 6.4% (약 307만명)로 2005년(7.3%·343만명)보다 10.7%나 감소했다. 어가 인구는 더크게 줄어 5년 전보다 22.6%나 급감한 17만1,000명에 불과했다. 전 인구 대비 농어가 인구 비중은 6.8%에 그쳤다. 이러한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노령화로 농어업에 새로 참여하는 인구는 극히 적고 농촌의 젊은 인구는 도시로 나가는 반면기존의 고령 농민들이 사망하면서 인구규모 자체가 급감하고 있다. 농어촌의 구

조 또한 변화하여 겸업과 대농/대어의 비중이 늘어나는 특징을 보인다. 농가당경지면적은 2000년 1.16ha에서 2005년 1.19ha, 작년엔 1.26ha로 갈수록 늘고 있다. 반면 전통적 형태였던 전업농과 논농사 비중은 10년 사이 각각 65%에서 54%, 57%에서 45%로 떨어졌다. 어업에서도 전업어가는 36%에서 28%로 줄어든 반면, 5톤 이상 대형어선 보유 어가는 8.9%에서 10.5%로 늘었다. 특이한 것은 농가와어가에서 모두 겸업과 대농, 대어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한쪽에서는 어선을 타지 못해 갯벌채취와 같은 맨손어로에 나서는 노인들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몇 년간 농어업인들의 삶에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

외부 환경 면에서도 FTA의 도입에 따른 농어업 환경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값싼 외국 식품들이 유입되면서 농어업인들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농어업 가구를 둘러싼 내외적 환경의 변화와 계속되는 정부의 정책 지원 속에서 실질적으로 농어업인들이 느끼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5년부터 꾸준히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이 삶의 질의 향상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농어업 분야에서 여성 농어업인들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농어업인이 겪는 삶의 만족도 문제에 더해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까지 더하여 여성농어업인들이 느끼는 삶의 질의 지수는 남성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남녀간 소득격차와 이로 인한 여성의 빈곤 문제, 또한 고령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정책 등이 기존의 농어업인 삶의 질향상 정책에 대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알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부적, 외부적 변화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펴기 위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자 했 다. 이를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방 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즉, 이 연구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 가운데 핵심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성 차별적 요인과 배경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양성평등적 추진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의 기반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농ㆍ어업인 삶의 질과 관련한 욕구에 부응한다는 사업 본연의 목적 달성과 효과 증 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 2. 연구 내용

이 연구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정책과 그 효과를 분석하 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양성의 삶의 질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하 였다. 다양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효과가 양성에게 공평하게 전달되고 있 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양성 간의 정책 효과성 차이 분석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매뉴얼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이다.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이 사업의 정책입 안 및 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① 농어업인 삶의 질 정책이 성별 격차를 해소하였는가. ② 여성농어업인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였는가, ③ 전반적으로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켰는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사업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 을 통해 정책의 입안, 운영, 평가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개 선함으로써 남녀농업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전체적인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분석을 실시했다. 즉, 자유무역협정과 전 세계적인 경제공황 등의 외부적 요인과 농촌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요약되는 농어촌 내부의 변화, 또 도 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과 같은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요소들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다양한 통계자료와 문헌 분석 을 통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그 중에서도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는 환경적 요인을 이해하고자 했다.

둘째, 정부의 부처별 분야별 지원정책 현황 및 예산 등을 살펴봄으로써 사업 분야 별 실태를 파악했다. 2010-2011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성과와 2012년 시행계획 분석을 통해 복지, 교육, 경제활동, 생활 인프라, 서비스 전달체계 등 사업 분야별 실태를 알아 볼 수 있었다. 또한 농어업인 지원정책의 기존 성별영향분석평

# 가 현황을 분석했다.

셋째, 정부가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 중 정책 분야별로 성별 격차 발생가능성 또는 여성 지위향상과 많은 관련이 있는 핵심과제를 도출했다. 즉 다양한 정책 분야의 사업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될 핵심 사업을 찾아내어 이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넷째, 다양한 농어업인 지원 정책 중 성별 격차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배경에 대해 분석했다. 농어업인 지원 정책들 중 관련 법령과 사업 지침, 사업 추진 체계에서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 정책을 찾아내고 그러한 성차별과 성별격차가 발생하게 된원인을 분석했다.

다섯째, 각 정책 분야에 대한 수혜집단의 성별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요구도 차이인 성별요구도를 분석했다. 여러 정책 중 특정 성별에 더 많은 혜택을 주거나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라 다른 요구도를 보이는 정책들을 구분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라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조사·분석하여 성별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른 정책 요구가 존재함을 인지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성차별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제도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관련 정책들의 성차별적 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대체할만한 법령·사업계획 개선안 및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안했다. 정책 분야별로 성별현황 및 원인분석 결과를 반영한 사업별, 부문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개선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 추계 등이 실시되었다.

### 3.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헌연구와 실증조사, 사업 담당자 및 농어촌 주민의 심층면접, 마지막으로 전문가 및 사업 담당자와의 자문회 의를 활용하였다.

<표 1-1>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관계

	문헌분석	정책현황 분석	면접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조사	브레인 스토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관련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부처별, 분야별						
지원정책 현황 및	0	0				
예산 종합 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					$\bigcirc$	
대상 사업 도출	O .	0			0	
농어업인 지원정책의						
성차별적 원인 및			0	0	0	
배경 분석						
성별 요구도 분석			0	0	0	0
정책의 성차별적 요인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정책	0		0	0	0	
대안 도출						

이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문헌을 분석하였다. 삶의 질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시작 으로 특히 농어업인의 삶의 질과 연관된 개념에 대한 문헌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 석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 평가기준과 여성 삶의 질에 대한 관련 법률, 문헌을 종합하 여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의 근거로 삼았다. 통계청의 2010년 ' 농림어업 총조사' 결과와 2008년 실시된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등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특별법 시행령 등의 자료도 살펴보았 다. 또한 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관련 법률과 정책들을 검토 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시ㆍ도 권역별로 한 개의 농어업 기관을 선정하여 그 지역의 여성농업인 10여 명과 관련 담당 공무원(농촌지도관, 지도사, 실무자 등) 5명 정도를 대상으로 심층인터 뷰를 실시했다. 여성 농업인이 느끼는 애로점, 사업의 효율성과 능률을 저하시키는 장애 요인, 정책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고, 실무 담당공무원에게는 현장에서 느끼는 정

책의 효과성과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과 정책 방향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인터뷰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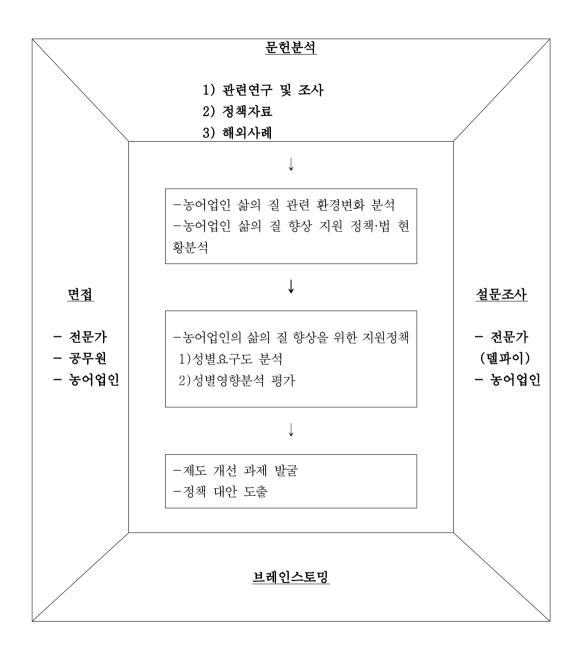
셋째,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조사를 실시했다. 전문가 조사의 내용은 크게 농어업 정책 전문가와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농업전문 연구소, 학계, 정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어업 정책 전문가를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운영 및 성과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지표개발 및 설문조사 설계가 이루어지고 조사문항이 만들어졌다.

넷째, 해당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와 이에 대한 통계분석이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그동안 실시된 정책들에 대한 농어업민의 실질적 만족도와 효과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여성응답자가 느끼는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고 농어업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켜 전반적인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 운영 등을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농촌지도자 회원 중 성별과 연령, 주요 사업을 고려해 조사인원을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전국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층화표본추출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11월 8일 - 12월 12일 사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028명의 응답 가운데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총 1,000명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자는 본인이 경험한정책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으므로, 각 정책별 총 응답자 수는 전체 응답자 수에 미치지 못한다.

다섯째, 브레인 스토밍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업 지역 삶의 질과 관련 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모색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이상의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을 연계한 이 연구의 전체적인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1-2> 연구체계





# 제 2 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관련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분석

- 1. 농어촌 인구의 변화
- 2. 농어촌 가구의 변화
- 3. 농어업 구조의 변화
- 4. 농어촌 환경의 변화
- 5. 소결 및 시사점

# 제 2 장 농 · 어업인 삶의 질 향상 관련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분석

2004년 3월에 제정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 한 특별법 | 에 기반을 두고 2005년부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5개년 기본계획(2005~2009년)"이 수립되어 현재 제2차 기본계획(2010~2014년) 이 추진 중에 있다. 동 계획은 보건·복지, 교육, 도시계획·생활인프라, 경제, 문화여가 등 5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종합계획으로서 동 계획의 추진성과는 적지 않을 것이나, 동 계획이 수립되어 추 진된 지 10년이 다가오고 있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 다고 본다. 여성은 전체 농어촌 거주자쁜 아니라 전체 농어업인의 절반을 차지하여 농어촌의 명실상부한 경제사회 주체라고 할 수 있다. 통상 여성 농어업인, 여성 농어 촌거주자는 남성과는 다른 경험을 바탕으로 상이한 요구를 갖게 되는데, 정책대상을 농어업인, 농어촌거주자 등으로 단일하게 가정하여 정책수혜기준을 설정하고, 서비 스전달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농어촌 여성들은 정책으로부터 동일한 수혜를 받지 못 하거나 사각지대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농어촌 인구의 구성은 도시와 다르다. 농어촌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도시보다 빨라 고령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다. 느리고 생태적 삶을 찾는 귀농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농어촌에 결혼이주여성의 증가 속도가 도시보다 빠르다.

정책대상인구의 다양화 추세 속에서 그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되어 온 지원정책을 대상으로 남녀의 상이한 환경과 정책요구를 고려하는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세부과제들의 실효성을 높이는 전략과 새로운 접근방 식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장에서는 해당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앞서, 농어촌 남녀 인구의 삶을 생각해보고 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농어촌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먼저 농어촌 사회 구성 원의 경제사회적 특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어촌 인구구성 및 가족의 변화로서 고령화, 다문화 및 귀농 추이를 분석하고, 농어 업 구조의 변화로서 전업농과 겸업농, 경작규모, 영농형태 및 농가소득 등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여기서 영농인구의 여성화 현상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의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를 추적할 것이다.

# 1. 농어촌 인구의 변화

#### 1) 총인구의 변화

우리나라의 농가인구는 <표 2-1>과 같이 1980년 총인구의 28.9%인 1.083만 명이 었으나, 빠르게 감소하여 1990년 15.3%인 666만 명, 2000년 8.7%인 403만 명, 2010년 6.4%인 306만 명으로 30년 만에 3분의 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어가인구도 농가인구와 같이 빠르게 감소하였다. 1990년에 약 50만 명으로 총인구 의 1.1% 이었으나 2000년에는 0.5%인 25만 명으로 10년 사이에 어가 인구의 절반이 줄어드는 빠른 감소세를 나타낸다. 2010년 현재 어가인구는 총인구대비 0.4%인 17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표 2-1> 농어가 총인구의 변화

(단위: 천명, %)

	1980	1990	2000	2010
농가인구	10,827	6,661	4,031	3,064
(총인구대비)	28.9	15.3	8.7	6.4
어가인구	_	496	251	171
(총인구대비)	_	1.1	0.5	0.4

출처: 2010 농림어업총조사 최종결과(보도자료)

# 2) 인구구조의 변화

다음으로 농어가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2-2>와 <표 2-3>은 농가, 어가와 전국 평균의 인구구조를 비교한 것이다. 2005 년 전국인구의 경우 15-64세 인구가 72.5%, 0-14세 인구 16.2%, 65세 이상 인구 11.3%의 구성을 보인다. 농가인구는 2005년에 0-14세 인구는 9.8%인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9.1%를 차지함으로써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1) 어가인구 또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8.8%, 0~14세 인구는 12.1%를 보여 농가인구에 비해 서는 고령화 속도가 늦지만, 도시에 비해서는 빠른 구조를 나타낸다.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고령화율은 2010년 현재 농가인구가 31.8%로 2005년 대비 2.7% p 증가한 것이며 전체인구 11.3% 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 나 농촌의 고령화 정도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중위 연령은 2010년 55.7세로 전체인구 38.1세 보다 17.6세가 높다.

농촌 인구의 구조를 보면 청장년인구인 15~64세 인구는 2010년 59.4%로 전체인구 72.5%와 비교할 때 낮은 편이며, 특히 유소년인구인 0~14세 인구 비중은 8.8%로 전 체 유소년인구 16.2%의 절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구조는 새로운 인 구의 전입이 미미하고, 젊은 층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노인인구만 상대적으로 급증 하고 있는 농촌의 현실에서 기인한다.

2010년 현재 어가인구의 고령화율은 23.1%로 전체인구 11.3% 보다 2배 정도 높아 서 농촌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고령화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고령화 정 도는 2005년 대비 4.3% p 증가하여 같은 기간 2.7% p 증가한 농가 인구와 비교해볼 때 고령화의 정도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위 연령은 2010년 53.3세 로 전체인구 38.1세보다 15.2세가 높다. 어촌 인구의 구조를 보면, 2010년 15~64세 인구는 67.7%, 0~14세 인구 비중은 9.2%로 전체 인구구조에서 동일한 연령대의 인 구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0~14세 인구의 경우 2005년 12.1%에서 2010년 9.2% 로 41.3%의 급격한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sup>1) 65</sup>세이상 인구의 비중이 7~14%미만이면 고령화사회, 14~20%미만은 고령사회, 20%이상은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표 2-2> 연령계층별 농가 인구와 전체 인구 비교

(단위: 천명, 세, %)

	2005	구성비	2010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인구	구성비
<u>합</u> 계	3,434	100.0	3,063	100.0	△371	△10.8	47,991	100.0
0~14세	335	9.8	270	8.8	△65	△19.3	7,787	16.2
15~64세	2,099	61.1	1,820	59.4	△279	△13.3	34,779	72.5
65세이상	999	29.1	973	31.8	△27	△2.7	5,425	11.3
중위연령	54.1		55.7		1.6		38.1	
고령화율1)	29.1		31.8		2.7%p		11.3	

주1) 고령화율은 65세이상 인구 비중임

출처: 2010 농림어업총조사 최종결과(보도자료)

<표 2-3> 연령계층별 어가 인구와 전체 인구 비교

(단위: 천명, 세, %)

	2005		2010		· 증 감		전체인구	
	2000	구성비	2010	구성비	ОП	증감률	ETTE I	구성비
합 계	221	100.0	171	100.0	△50	△22.6	47,991	100.0
0~14세	27	12.1	16	9.2	△ 11	△41.3	7,787	16.2
15~64세	153	69.1	116	67.7	△37	△24.1	34,779	72.5
65세이상	42	18.8	40	23.1	△ 2	△ 5.0	5,425	11.3
중위 연령	49.7		53.3				38.1	
고령화율1)	18.8		23.1		4.3%p		11.3	

주1) 고령화율은 65세이상 인구 비중임

출처: 2010 농림어업총조사 최종결과(보도자료)

<표 2-4>는 연령대별로 구분한 것으로, 2000년에 60대가 21.0%로 가장 높고, 50 대 16.8%, 40대 13.2%, 70대 이상 12.1% 등의 순이다. 2010년에는 70대 이상 21.5%, 60대 20.3%, 50대 19.2%, 40대 11.9% 순으로 50대 이상 농가인구가 61.0%를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과 비교해볼 때 특히 20대 이하 연령층이 8.2%로 감소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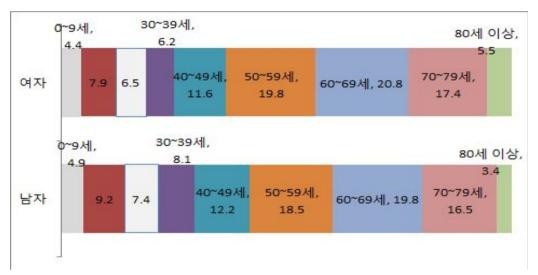
고 70대 이상 연령층은 9.4%로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성비는 2000년 95.7명, 2005년 95.4명, 2010년 96.1명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여초 현상을 보인다. 연 령대로 보면 30대까지는 남초, 50대 이상은 여초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초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하여 <그림 2-1>과 같이 2010 년 현재 50세 이상 연령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더 높다. 농가 여성인구의 고령화가 남성보다 더 진전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2-4> 연령대별 농가 인구

(단위: 천명, %)

		200	10			200	15			201	0	
											. 0	T
	합계	남	여	성비	합계	남	여	성비	합계	남	여	성비
합 계		1,971 (100.0)		95.7	3,434 (100.0)	1,677 (100.0)		95.4		1,501 (100.0)		96.1
0~9세	258 (6.4)	137 (7.0)	121 (5.9)	113. 7	182 (5.3)	96 (5.7)	86 (4.9)	112. 1	142 (4.6)	74 (4.9)	68 (4.4)	108. 8
10~19세	462 (11.5)	239 (12.1)	224 (10.9)	106. 7	311 (9.1)	165 (9.9)	146 (8.3)	113. 4	261 (8.5)	138 (9.2)	123 (7.9)	112. 5
20~29세	417 (10.3)	239 (12.1)	178 (8.6)	134. 7	292 (8.5)	161 (9.6)	132 (7.5)	122. 1	213 (6.9)	111 (7.4)	102 (6.5)	108. 4
30~39세	352 (8.7)	187 (9.5)	165 (8.0)	113. 5	248 (7.2)	139 (8.3)	109 (6.2)	126. 9	217 (7.1)	121 (8.1)	96 (6.2)	125. 5
40~49세	532 (13.2)	255 (12.9)	277 (13.4)	92.2		216 (12.9)	232 (13.2)	93.2	364 (11.9)	182 (12.2)	181 (11.6)	100. 7
50~59세	676 (16.8)	311 (15.8)	366 (17.8)	84.9	601 (17.5)	282 (16.8)	319 (18.2)	88.2	587 (19.2)	278 (18.5)	309 (19.8)	90.1
60~69세	846 (21.0)	393 (19.9)	453 (22.0)	86.7	760 (22.1)	352 (21.0)	408 (23.2)	86.2	622 (20.3)	297 (19.8)	324 (20.8)	91.8
70세이 상	487 (12.1)	210 (10.6)	277 (13.5)	75.7	591 (17.2)	266 (15.9)	325 (18.5)	81.9	657 (21.5)	299 (19.9)	358 (23.0)	83.4

출처: 2005 농림어업총조사 최종집계결과(보도자료), 2010 농림어업총조사 최종결과(보 도자료)



<그림 2-1> 2010년도 남녀 농가인구의 연령별 구성

연령대별 어가인구 비중은 2000년 50대가 18.5%로 가장 높고, 40대 17.9%, 60대 14.1%, 10대 13.9% 순이었으나, 2010년은 50대 23.7%, 60대 20.2%, 40대 14.2%, 70대 이상 14.0% 순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수치는 10년 동안 40대 이하의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50대 이상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70대 이상의 인구는 같은 기간 동안 7.4% 증가해서 고령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어가인구의 성별 분포는 성비가 2000년 101.8명, 2005년 100.2명, 2010년 100.0명으 로 전체적으로는 성비의 균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40대 미만의 연령대에서는 남 초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0년, 2005년은 20대 연령이 각각 145.3명, 133.1명, 2010년은 30대 138.3명으로 20, 30대에서 특히 남성인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70세 이상 인구의 성비는 2000년 51.7명, 2005년 63.1명, 2010년 71.9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여초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표 2-5> 연령대별 어가 인구

(단위: 천명. %)

		20	00			20	05			20	10	
	합계	남	여	성비	합 계	남	여	성비	합 계	남	여	성비
<u></u> 합계	251	127	125	101.8	221	111	110	100.2	171	86	86	100.0
H /11	(100.0)	(100.0)	(100.0)	101.6	(100.0)	(100.0)	(100.0)	100.2	(100.0)	(100.0)	(100.0)	100.0
0~9세	18	10	8	115.0	13	7	6	114.2	8	4	4	105.0
0~9/1	(7.2)	(7.7)	(6.8)	115.0	(5.9)	(6.3)	(5.5)	114.2	(4.8)	(4.9)	(4.7)	105.0
10~19세	35	18	17	1040	22	12	10	112.0	15	8	7	111.2
10~19/1	(13.9)	(14.0)	(13.7)	104.0	(9.9)	(10.5)	(9.4)	112.0	(8.5)	(9.0)	(8.0)	111.2
20~29세	28	17	11	145.3	20	12	9	133.1	12	7	5	124.1
20~29^	(11.2)	(13.1)	(9.2)	145.5	(9.2)	(10.5)	(7.9)	133.1	(7.0)	(7.8)	(6.3)	124.1
30~39세	27	13	13	1016	18	10	8	196 1	13	7	5	1202
30~39^II	(10.6)	(10.6)	(10.6)	101.6	(8.1)	(9.0)	(7.1)	126.1	(7.5)	(8.7)	(6.3)	138.3
40 4021	45	22	23	05.1	39	18	20	00.5	24	12	12	05.6
40~49세	(17.9)	(17.3)	(18.5)	95.1	(17.5)	(16.5)	(18.4)	89.5	(14.2)	(13.9)	(14.5)	95.6
50~59세	46	24	23	1027	47	23	23	100.7	41	20	21	95.0
30~39^II	(18.5)	(18.7)	(18.3)	103.7	(21.2)	(21.2)	(21.1)	100.7	(23.7)	(23.1)	(24.3)	95.0
co coal	36	18	18	100 5	40	20	20	101.0	35	18	17	1000
60~69세	(14.1)	(14.2)	(14.1)	102.5	(18.0)	(18.1)	(17.9)	101.2	(20.2)	(20.9)	(19.6)	106.9
الدادة الدرس	17	6	11	F1 7	23	9	14	CO 1	24	10	14	71.0
70세이상	(6.6)	(4.5)	(8.8)	51.7	(10.3)	(7.9)	(12.6)	63.1	(14.0)	(11.7)	(16.3)	71.9

출처: 2005 농림어업총조사 최종집계결과(보도자료), 2010 농림어업총조사 최종결과(보 도자료)

# 3) 경영주의 고령화

농업경영주의 연령은 2000년에 60대 34.7%, 50대 25.2%, 40대 17.2% 순으로 나타 나나, 2010년에는 70대 이상 30.9%, 60대 29.9%, 50대 24.4% 순으로 나타나 농업노동 력의 노령화가 심각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0세 이상 경영주 의 비율은 2000년 51.1%, 2010년 60.8%로 10년 동안 급격하게 늘어난 반면, 같은 기 간 동안 40세 미만 경영주 비율은 6.6%에서 2.8%로 감소한다. 이는 농업의 비교우위 상실로 신규인력이 농업부문으로 유입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경영주의 노령화는 후계자에 의해 농가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에 의해 경영이 승계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여성경영주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여

성 경영주는 2000년 16.2%, 2005년 17.0%, 2010년 18.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령 대로 세분해서 보면 2010년 현재 70대 이상 27.1%, 60대 18.9%, 50대 12.3%, 40대 9.9%, 40대 이하 11.0%로 대체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성경영주의 비율이 높아진다.

<표 2-6> 경영주 연령별 농가 분포

(단위: 천가구, %)

	합 계	40세미만	40~49	50~59	60~69	70세이상
2000	1,383(100.0)	92(6.6)	238 (17.2)	348 (25.2)	479(34.7)	227(16.4)
여자	224(16.2)	3(3.6)	15 (6.5)	47 (13.6)	100(20.9)	57(25.3)
2005	1,273(100.0)	42(3.3)	186 (14.6)	303 (23.8)	430(33.8)	311(24.5)
여자	217(17.0)	2(5.4)	12 (6.2)	34 (11.3)	88(20.4)	81(26.0)
2010	1,177(100.0)	33(2.8)	140 (11.9)	287 (24.4)	352(29.9)	364(30.9)
여자	218(18.5)	4(11.0)	14 (9.9)	35 (12.3)	67(18.9)	99(27.1)

출처: 2005 농림어업총조사 최종집계결과(보도자료), 2010 농림어업총조사 최종결과 (보도자료)

어가 경영주는 2000년에는 50대가 31.3%로 가장 많고, 40대 26.7%, 60대 25.0% 순 으로 나타난다. 2010년 현재는 50대가 31.7%로 가장 많고, 60대 31.3%, 70대 이상 18.1% 순으로 나타난다. 40대 이하 경영주는 2000년 37.5%, 2005년 26.4%, 2010년 18.8%로 10년 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고, 70대 이상 경영주는 2000년 6.2%, 2005년 12.3%, 2010년 18.1%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어가경영주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표 2-7> 경영주 연령별 어가 분포

(단위: 천가구, %)

	계	40세미만	40~49	50~59	60~69	70세이상
2000	82(100.0)	9(10.8)	22(26.7)	26(31.3)	20(25.0)	5(6.2)
2005	80(100.0)	4(5.2)	17(21.2)	25(31.6)	24(29.6)	10(12.3)
2010	66(100.0)	2(3.8)	10(15.0)	21(31.7)	21(31.3)	12(18.1)

출처: 2005 농림어업총조사 최종집계결과(보도자료), 2010 농림어업총조사 최종결과 (보도자료)

# 2. 농어촌 가족의 변화

# 1) 가구 수의 변화

1960년대의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산업 부문은 급속한 성장을 한데 비해 농어업부 문은 축소되고 이로 인해 농어가 수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1970년에 2,483천 가구이 던 농가 수는 1980년에 2,155천 가구, 1990년에 1,767천 가구, 2000년에 1,383천 가구 로 계속 감소하여 2010년 현재는 1,177천 가구에 이르고 있다.

농가 수의 감소원인은 시기별로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 70년대의 감소가 도시산 업 부문의 유인요인에 따른 것이라면 80년대와 90년대는 농산물 가격파동과 수입개 방으로 인한 농가경제의 악화 때문에 농업을 포기하고 떠나는 유출요인의 영향이 크 다. 그러나 2000년 이후는 농가의 자연소멸 요인으로 인한 감소가 늘어나고 있다(김 흥주, 2012).

어가의 가구 수는 농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난 1970년 14만 9천 가구에서 1980 년에 13만 4천 가구, 1990년에 12만 2천 가구, 2000년에 8만 2천 가구로 계속 감소하 여 2010년 현재는 6만 6천 가구로 줄어들었다. 지난 40년간 8만 3천 가구가 줄어들어 총 가구 수가 절반이하로 감소했다. <표 2-8>에 의하면, 어가의 가구 수는 1990년 이후 집중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농가가 198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최근에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 특징을 보인 다. 어가 규모의 감소는 어가 인구의 고령화, 어선 감척 사업, 어족자원 감소, 연안 어장 매립, 간척 등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2-8> 연도별 농·어가 수 변화

(단위: 천가구, %)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농가 수	2,483	2,155	1,767	1,501	1,383	1,273	1,177
증감률	_	-13.2	-18	-15.0	-7.8	-8.0	-7.5
어가 수	149	134	122	104	82	80	66
증감률	_	-10.1	-9.4	-14.0	-21.9	-2.0	-17.7

출처: 2005 농림어업총조사 최종집계결과(보도자료), 2010 농림어업총조사 최종결과(보 도자료)

<표 2-9>는 전국 총 가구수와 비교하여 농어가 가구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농가 비중은 1990년 15.6%, 2000년 9.7%, 2010년 6.8%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 나 증감률을 보면 2000년대 들어 감소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가수 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전국 총가구수 대비 어가의 비중 또한 해마다 줄어들고 있 다. 어가의 비중은 1990년 1.1%, 2000년 0.6%로 2000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2010 년 현재 0.4 %에 불과하다.

<표 2-9> 총가구수 대비 농·어가 규모 비중

(단위: 천가구, %)

	1990		1990 1995 2			2005		2010	
	1990	1995	증감률	2000	증감률	2005	증감률	2010	증감률
농가 비중	15.6	11.6	△4.0%p	9.7	△1.9%p	8.0	△1.7%p	6.8	△1.2%p
어가 비중	1.1	0.8	△0.3%p	0.6	△0.2%p	0.5	△0.1%p	0.4	△0.1%p

주 : 인구주택총조사 전체가구에 대한 농·어가 비중임

출처: 2005 농림어업총조사 최종집계결과(보도자료), 2010 농림어업총조사 최종결과 (보도자료)

#### 2) 가구크기의 변화

농가의 가족규모를 보면, 1990년 이후 지난 20년 사이에 큰 폭으로 축소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3인 이상의 대규모 가구가 크게 줄어드는 반면에 2인 이하의 소 규모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1990년과 2010년 사이에 가구 원 수별 농가를 비교해보면 가구원이 5인 이상인 농가는 23.9%, 4인 가구는 7.1%, 3 인 가구는 0.5% 감소한 반면에 1인 가구는 8.9%나 증가하였고, 2인 가구 또한 22.5%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10년 현재 2인 가구가 4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3인 가구 17.4%, 1인 가구 15.6%의 순으로 2인 가구가 주된 가구유형으로 나타 나고 있다. 4인 이상의 대규모 가구가 대폭 줄어들고 2인 이하의 소인 가구가 증가함 에 따라 평균 가구원 수는 2010년 현재 2.6명으로 줄어 든 상태이다.

농가의 경우 2인 가구 대부분은 65세 이상의 노인부부로 이루어진 가구이고, 1인 가구 대부분은 노부부만의 가구형태에서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이후의 현상으로 노인단독가구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농어촌 여성의 고령화로부터 이러한 노 인단독가구, 즉 1인 가구의 절반이상이 여성 1인 가구일 것으로 추정된다.

<표 2-10> 가구워수별 농가 및 평균 가구워

(단위: 천가구, 명, %)

	합 계		ブ	l구원수별 농	7}		평 균
	1 1 기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가구원
1990	1,767 (100.0)	(6.7)	(22.7)	(17.9)	(18.9)	(33.8)	3.76
2000	1,383 (100.0)	(13.1)	(38.7)	(17.6)	(14.4)	(16.3)	2.91
2005	1,273 (100.0)	188 (14.8)	559 (43.9)	212 (16.7)	160 (12.5)	154 (12.1)	2.7
2010	1,177 (100.0)	184 (15.6)	533 (45.2)	205 (17.4)	139 (11.8)	117 (9.9)	2.6

출처: 2005 농림어업총조사 최종집계결과(보도자료), 2010 농림어업총조사 최종결과 (보도자료)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어가의 가구원 수를 비교해보면, 2인 이하의 가구 수는 늘어나는 반면 3인 이상의 대규모 가구가 줄어들고 있어 전체 어가 가구규모는 점차 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증감률을 보면 지난 10년 사이 1인 가구가 12.5% 증가하여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2인 가구의 10.7%였다. 반면에 5인 가구 이상은 57.1%가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4인 가구 50%, 3인 가구 25% 순이었다. 이러한 증감 경향은 농가의 경우와 비슷하다.

<표 2-11> 가구원수별 어가 및 평균 가구원

(단위: 천가구, 명, %)

	합계			가구원수별 어	가		평균
	법제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가구원
2000	82	8	28	16	16	14	3.1
2000	(100.0)	(9.2)	(34.4)	(20.2)	(19.3)	(16.9)	5.1
2005	80	10	34	15	12	9	2.8
2005	(100.0)	(12.0)	(42.7)	(19.1)	(14.8)	(11.5)	2.0
2010	66	9	31	12	8	6	2.6
2010	(100.0)	(13.8)	(46.6)	(18.8)	(11.8)	(9.1)	2.0

출처: 2005 농림어업총조사 최종집계결과(보도자료)와 2010 농림어업총조사 최종결과 (보도자료)

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인 세대구성별 가구분포를 보아도 농가는 전 국의 일반가구에 비해 매우 특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의 일반가구에 비해 농가는 1세대와 2세대 가구의 비중이 매우 높아, 전체의 74.0%를 차지한다. 특히 1세 대 가구의 비중이 40.9%로서 전국의 일반가구 17.5%보다 23.4%p 높고, 도시 특성을 보이는 동지역보다는 25.4%p 높다. 이처럼 농가에서 세대구성의 단순화 경향이 도시 지역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2-12> 세대별 가구구성 비교(2010년)

(단위: 가구, %)

						<u> </u>
구분	총가구수	1세대	2세대	3세대 이상	1인 가구	비친족가구
전국	17,339,422	17.5	51.3	6.2	23.9	1.2
동지역	14,031,069	15.5	54.2	6.1	23.1	1.1
읍면지역	3,308,353	25.6	39.1	6.8	27.1	1.4
농가	1,177,318	40.9	33.1	10.1	15.6	0.3
어가	65,775	42.6	34.1	8.5	13.8	1.0

자료: 통계청 KOSIS의 2010년 인구총조사, 농가총조사, 어가총조사 원자료에서 집계함.

어가의 경우에도 전국의 일반가구에 비해 1세대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2세대 이상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1세대 가구가 어가중 42.6%를 차지하여 전국 일반가구의 17.5%보다 두 배 이상이다. 2세대 가구는 전국의 일반가 구가 51.3%를 차지한데 비해 어가는 34.1%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어가의 세대 별 가구구성은 농가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 3) 다문화 가정의 증가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표 2-13>과 같이 우리나라 결혼이민자는 2011년 현재 21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1년 통계청의 혼인통계 결과를 보면, 남성 농림 어업 종사자중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비율은 29%인데 2006년의 42.5%에 비해서는 감소한 수치이다(<표 2-14>). 또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도시 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고령화된

농촌사회에서 자녀출산과 후계농업인력 유입이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되지만 단기적으로는 한국사회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요구되 는 실정이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2011년 현재 13만 6천명에 이르고 이들 중 상당수가 농어촌에 거주하므로 결혼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시행 이 필요할 것이다.

<표 2-13> 결혼이민자 및 자녀수 추이

	2010년	2011년
결혼이민자	181,671	211,458
남성	19,672	22,878
여성	161,999	188,580
자녀	105,502	135,938

자료: 행정안전부의 각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표 2-14> 외국인 여성과 혼인한 농림어업인 수 추이

(단위: 명, %)

			•
	농림어업종사자	외국인 아내	비율
2005	7,578	2,883	38.0
2006	8,292	3,525	42.5
2007	7,669	3,171	41.3
2008	6,459	2,472	38.3
2009	5,640	1,987	35.2
2010	5,971	2,023	33.9
2011	5,355	1,559	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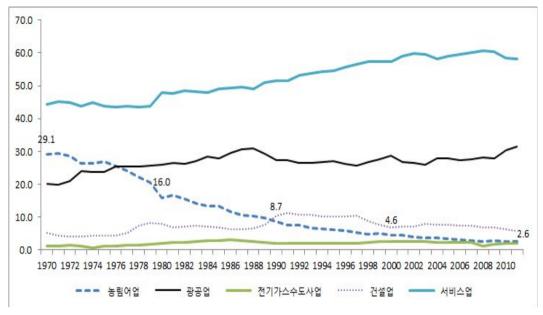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에서 산출.

# 3. 농어업 구조의 변화

# 1) 국내총생산, 고용과 농림어업

세계 각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 가 농림어업의 상대적 비중의 감소현상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며 최근의 세계 화 추세는 농림어업 산물의 국제적 이동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농림어업의 경쟁력을 더욱 취약하게 하고 있다. 전체산업구조에서 농림어업의 상대적 비중 감소 경향은 국내 총생산에서 농림어업 부문의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와 산업별 경제활동 인구구조에서 농림어업 종사자의 축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는 국내 총생산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 다. 전통적으로 농림어업부문의 비중이 컸던 우리나라는 1977년까지 국내총생산에 서 농림업부문이 제조업을 앞서고 있었으나 1978년 이후 역전되어 해가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지고 이에 따라 2010년 현재 국내 총생산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 은 2.6%에 불과한 반면 광공업(제조업)의 비중은 전체의 30.5%를 차지하고 있고, 서 비스업 부문은 58.5%를 차지하고 있다(그밖에 전기가스수도업이 2.0% 건설업이 6.3%). 특히 농림어업의 개방이 본격화된 지난 1990년대 초반 이후 농림어업 생산규 모가 절대액 측면에서 거의 정체되고 있으며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림 2-2> 국내총생산의 산업별 비중 변화 추이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작성

국내 총고용 구조에서 농림어업 인구의 고용현황을 정리한 것이 <표 2-15>이다.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1963년에 476만 4천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이구 756만 3 천명의 63.0%를 차지하고 있다. 80년대 들어 농림어업의 고용인구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산업구조의 패턴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70년대 후반 우리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농림어업이 소득원으로서의 비교우 위를 상실하면서 고용인구도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다. 2011년 현재 농림어업의 경제 활동인구는 155만 1천명으로 전체의 6.4%에 불과하며, 고용인구가 가장 많았던 1976 년 560만1천 명보다는 405만 명, 고용률이 가장 높았던 1963년 63.0%보다는 56.6% p 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15> 국내 총고용과 농림어업 고용 추이

(단위:%,명)

	계	농림어업	광공업(제조업)	SOC 및 기타서비스업
1963	100.0(7,563)	63.0	8.7	28.3
1970	100.0( 9,617)	50.4	14.3	35.3
1980	100.0(13,683)	34.0	22.5	43.5
1990	100.0(18,085)	17.9	27.6	54.5
2000	100.0(21,156)	10.6	20.4	69.0
2010	100.0(23,829)	6.6	17.0	76.4
2011	100.0(24,244)	6.4	16.9	76.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에서 작성

# 2) 농어업 생산부문의 구조 변화

전술한 바와 같이 1970년 대 이후 우리나라 농업의 비중이 감소하여 왔을 뿐 아니 라 영농구조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겸업농의 증가, 전업농 육성에 따른 경지면 적의 확대, 새로운 영농형태의 확산 및 전문화 경향 등이 그것이다.

<표 2-16>에 따르면 2010년 전업농가는 53.3%, 겸업농가는 46.7%를 나타내고 있 다. 전업농가의 비율은 2000년 65.2%, 2005년 62.6%, 2010년 53.3%로 꾸준히 줄어들 고 있으며 특히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9.3%의 급격한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겸업농가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2종 겸업농가의 경우 2000년 18.6%, 2005년 24.5%, 2010년 30.3%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농업소득의 감소를 겸업을 통해 서 해결하려는 농업외 취업자의 증가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2-16> 전·겸업별 농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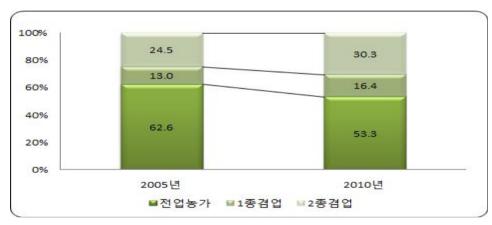
(단위: 천가구, %)

	2000		2005		2010	
	2000	구성비	2005	구성비	2010	구성비
합 계	1,383	100.0	1,273	100.0	1,177	100.0
전업농가	902	65.2	796	62.6	627	53.3
겸업농가	481	34.8	477	37.4	550	46.7
1종 겸업	225	16.2	165	13.0	193	16.4
2종 겸업	257	18.6	312	24.5	356	30.3

출처: 2005 농림어업총조사 최종집계결과(보도자료), 2010 농림어업총조사 최종결과(보 도자료)

주: 1) 1종 겸업 : 농업 수입이 농업 이외의 수입보다 많음 2) 2종 겸업: 농업 이외의 수입이 농업 수입보다 많음

<그림 2-3> 전·겸업별 농가 구성비



출처: 2010 농림어업총조사 최종결과(보도자료)

<표 2-17>에서 나타나듯이 어가는 1990년 121,525 가구에서 2005년 79,942 가구로 3분의 1가량이 감소했고 2010년에는 65,800 가구로 감소세를 이어간다. 앞에서도 설 명한 바가 있지만, 1990년대 어가 수의 감소는 1997년 수산물시장의 완전개방, 총허 용어획량 제도(TAC)의 도입,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 체결, EEZ(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 경제수역)체제에 맞는 어업질서체제의 추진 등 어업환경의 변화에 기

인한 것으로 보인다(김준, 2008).

어가의 경우에는 대체로 전업어가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전업어가의 비중 이 1990년 23.1%에서 2010년 29.4%로 증가한 반면, 겸업어가는 1990년 76.9%에서 2010년 70.6%로 감소한다. 특히 1종 겸업이 1990년 59.4%에서 2010년 52.2%로 감소 하며, 2종 겸업은 1990년 40.6%에서 2010년 47.8%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2-17> 전·겸업별 어가 수

(단위: 가구, %)

	하	합계		전업		겸 업							
연도	<u>ਬ</u>	/1	包拍		7	계		1종 겸업		겸업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어가	구성비			
1990	121,525	100.0	28,051	23.1	93,474	76.9	55,510	59.4	37,964	40.6			
1995	104,480	100.0	26,016	24.9	78,464	75.1	48,455	61.8	30,009	38.2			
2000	81,571	100.0	29,699	36.4	51,872	63.6	29,233	56.4	22,639	43.6			
2005	79,942	100.0	25,342	31.7	54,600	68.3	28,410	52.0	26,190	48.0			
2010	65,800	100.0	19,000	29.4	46,000	70.6	24,000	52.2	22,000	47.8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농가의 총 경지면적은 2000년 160만 2천ha에서 2005년 151만 1천ha, 2010년 144만 9천 ha로 감소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 동안 농가당 경지면적은 1.16ha, 1.19ha, 1.23ha 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에서 2010년까지 경지규모별 농가수의 추이를 보면 0.5~3.0ha미만의 중간 규모층의 농가는 감소하고, 0.5ha미만 농가와 3.0ha이상 농가는 각각 8.3%p, 2.1%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지면적의 양극화 현상이 보인다.

2010년 현재 1ha미만 경작 농가가 전체의 64.5%를 차지하고 있으며, 3ha이상 경작 농가는 8.2%로 나타난다. 경지규모가 0.5ha미만인 농가의 수가 증가한 것은 고령가 구의 경지 축소와 도시근교 출입경작농가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경지규모가 3ha이 상 농가가 증가한 것은 전업농 육성 등의 경영규모화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2-18> 경지규모별 농가 수

(단위: 천가구, %)

		경지			경지	농가당					
	합 계	없는 농가	소계	0.5ha 미만	0.5~ 1.0	1.0 ~ 2.0	2.0 ~ 3.0	3.0ha 이상	면적1) (천ha)	경지면적 (ha)	
2000	1,383 (100.0)	14 (1.0)	1,369 (99.0)	441 (31.8)	379 (27.4)	352 (25.4)	114 (8.2)	85 (6.1)	1,602	1.16	
2005	1,273 (100.0)	17 (1.3)	1,256 (98.7)	458 (36.0)	331 (26.0)	281 (22.1)	93 (7.3)	93 (7.4)	1,511	1.19	
2010	1,177 (100.0)	14 (1.2)	1,164 (98.8)	473 (40.1)	288 (24.4)	229 (19.4)	78 (6.6)	97 (8.2)	1,449	1.23	

주: 경지면적은 농업총조사에서 조사된 농가의 경지면적이며, 농림부 경지면적조사 결 과와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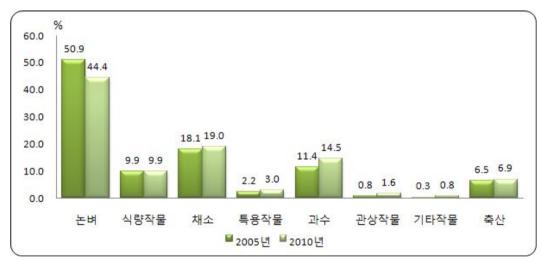
출처: 2005 농림어업총조사 최종집계결과(보도자료), 2010 농림어업총조사 최종결과(보 도자료)

최근 농업의 특징으로 농업경영 규모의 확대와 함께 전문화 경향을 들 수 있다. 특 히 전업농가는 대체로 특정한 품목에 전문화되어 있으므로, 경영규모와 연계한 영농 형태의 구분은 농업구조 변화의 방향을 알 수 있게 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농업 총조사 에서 영농형태는 논벼, 과수, 특용작물, 채소, 화훼, 일반 밭작물, 축산, 기타 등의 8개 분야로 나뉘는데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가장 많았던 농사를 주 작목으로 하 여 영농형태를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은 1970년대 말에 주곡 자급을 달성할 정도로 식량작물 중심의 농업 이 전개되어 왔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 다양한 소득작목이 도입되는 등 상업농 체 제로 전환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에는 개방화 진전으로 수입 농산물에 대응한 작 목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초에 농업성장을 주도했던 축산, 특용작물, 화훼 등은 그 후 감소세로 반전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안정된 논벼, 과 수, 채소 등의 경종농업이 다시 중가추세를 나타낸다(김정호외, 2007). 이와 같이 과

수, 채소 등 전통적으로 여성농업인의 참여도가 높은 작목의 비중 증가는 여성농업 인의 노동강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

2010년 현재 농가의 경영형태는 논벼(44.4%), 채소(19.0%), 과수(14.5%), 식량작물 (9.9%) 순으로 나타난다. 2005년에 비해 논벼(6.5%p) 농가의 비중은 낮아진 반면, 과 수(3.1%p), 채소(0.9%p), 관상작물(0.8%p), 특용작물(0.8%p), 기타작물(0.5%p), 축산 (0.4%p)의 비중은 높아졌다.



<그림 2-4> 농업 경영형태별 농가 구성비

출처: 2010 농림어업총조사 최종결과(보도자료)

아울러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친환경농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라 함은 무농약과 유기농으로 친환경 농산 물을 재배한 농가를 의미한다. 특히 2000년과 2005년 사이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수 가 60,275가구에서 87,199가구로 44.7%p 증가하여, 친환경농업이 빠르게 확산되었음 을 보여준다. 품목별 변화를 보면 2000년에 비해 논벼는 25.2%p, 과수는 80.4%p, 채 소는 23.5%p, 특용작물 121.6%p, 기타작물 140.7%p 각각 증가하였다. 다른 작목에 비 해 기타작물과 특용작물, 과수 농가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수는 58,000가구로 다시 감소한다. 2010년 현

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는 전체 농가의 4.6%를 차지하며, 작물별로는 논벼가 56.4% 로 가장 많고, 기타작물(28.1%), 채소(24.7%) 순이다.

<표 2-19>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수 및 품목별 농가 수 변화

(단위: 가구, %)

AL.	지키 노키스	품목별 농가수							
연도	실천 농가수	논벼	과수	채소	특용작물	기타 작물			
2000	60,275	41,494	7,886	18,776	1,993	2,718			
2005	87,199	51,964	14,225	23,180	4,417	6,541			
증감률	44.7	25.2	80.4	23.5	121.6	140.7			
2010	58,000(100.0)	33,000(56.4)	_	14,000(24.7)	_	16,000(28.1)			

주 : 2가지 이상 재배하는 농가는 각각 집계하였으므로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각 년도

#### 3) 농가소득

2011년도 농가의 가구당 총소득은 3,014.8만원으로 전년대비 6.1%p 감소했다. 이와 같은 명목소득 수준에서의 농가소득의 감소는 도농간 소득격차를 확대할 것으로 우 려된다. 2011년도 농가소득 감소의 주된 이유는 농업소득이 전년대비 13.3%p 하락했 기 때문이다. 농업소득의 감소는 축산수입(대동물) 감소와 사료비 증가에 주로 기인 한다(통계청, 2011년 농가어가 경제조사 결과). 농업소득의 감소로 농가소득에서 농 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9.0%인데 비해 겸업소득과 임금, 자본수입 등의 사업외 소득으로 구성된 농업외소득은 43.0%로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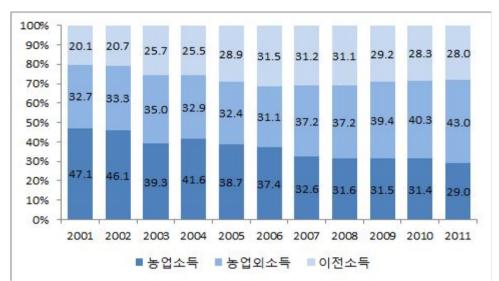
# <표 2-20> 연도별 소득종류별 농가소득

(단위: 천원,%)

	200	)8년	200	2009년		2010년		2011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11/'10)
농가소득	30,523	100.0	30,814	100.0	32,121	100.0	30,148	100.0	-6.1
- 농업소득	9,654	31.6	9,698	31.5	10,098	31.4	8,753	29.0	-13.3
- 농업외소득	11,353	37.2	12,128	39.4	12,946	40.3	12,949	43.0	0.0
- 이전소득	5,289	17.3	5,481	17.8	5,610	17.5	5,453	18.1	-2.8
- 비경상소득	4,227	13.8	3,507	11.4	3,467	10.8	2,993	9.9	-13.7

자료: 2011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지난 2000년 이후 농가소득 구성비 추이를 보면 농업소득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농외소득이 빠르게 증가하여 농외소득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농외소득이나 이전소득은 농가의 연령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 농외ㆍ이전소득 비중이 증가하다가 고령화 시대를 겪으면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고령화속도가 빠른 우리나라도 가까운 장래에 농외ㆍ이전소득 비중이 정체 또는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농업소득의 정체와 함께 농가소득의 하락을 예고한다(김영옥·김이선, 2003).



<그림 2-5> 농가소득 구성비 추이

주: 분석의 편의를 위해 비경상소득(경조수입, 퇴직일시금 등)을 이전소득에 포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결과, 각년도

경영주 연령별로 보면 농가소득은 40대에 최고점에 도달이후, 경영주의 연령이 높 아짐에 따라 감소 추세로 전환하다. 농가인구가 고령화될수록 저소득 계층에 속하는 비중이 높아지는데 전반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향후 고령농업인에 대 한 생활안정 대책이 시급함을 암시한다. 어가의 경우 농가에 비해 소득이 더 많다. 그러나 경영주 연령이 40대인 어가의 소득이 가장 많고, 고령층으로 갈수록 소득이 감소하는 추이는 농가와 유사하다(<표 2-21> 참고).

<표 2-21> 2011년도 경영주 연령별 농어가 소득

(단위: 천원)

	평 균	39세 이하	40~49세	50~59	60~69세	70세 이상
농가소득	30,148	37,011	45,646	44,213	31,803	20,608
어가소득	38,623	51,881	55,783	45,542	35,804	21,724

자료: 2011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어가의 경우에는 2011년도에 어가의 가구당 총소득은 3,862.3만원으로 전년대비 8.2%p가 증가한다. 이는 패류(전복), 해조류(김) 등의 양식소득 증가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어로수입(11.2%)과 양식수입(34.0%)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한 어업 소득은 전년대비 23.0%, 공적보조금이 증가하면서 이전소득은 전년대비 3.6% 증가 한다. 임금소득과 임대료 등 자본수입이 감소한 어업외 소득은 전년대비 4.6%p, 비 경상소득은 전년대비 11.7%p 감소한다. 한편 어가소득중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은 어업소득으로 52.9%를 차지한다.

<표 2-22> 연도별 소득종류별 어가소득

(단위: 천원,%)

	200	8년	2009년		201	0년	201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11/'10)
어가소득	31,176	100.0	33,945	100.0	35,696	100.0	38,623	100.0	8.2
어업소득	13,801	44.3	16,220	47.8	16,607	46.5	20,432	52.9	23.0
어업외소득	10,120	32,5	11,136	32.8	11,931	33.4	11,378	29.5	-4.6
이전소득	2,423	7.8	2,857	8.4	3,191	8.9	3,309	8.6	3.7
비경상소득	4,831	15.5	3,732	11.0	3,968	11.1	3,504	9.1	-11.7

자료: 2011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 4) 영농인구의 여성화

농가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농업 인력의 고령화로 농업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 한 농업 현실에서, 농가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은 농업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표 2-23>을 보면 전체 농가인구에서 여성의 비율은 1970년 50.3%, 2000년 51.1%, 2010년 51.0%로 40년 동안 1.0%p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농업 주종사인구 중 여성의 비율은 1970년 28.3%에서 2000년 52.5%, 2010년 52.5%로 여성의 노동참여가 빠르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그림 2-6>에 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여성농업인은 2010년 현재 112만명이고, 농업주종사자는 97 만명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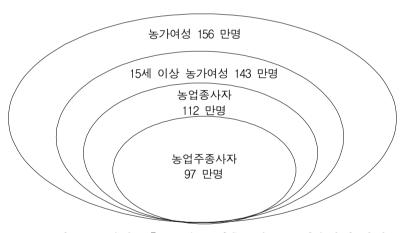
<표 2-23> 농가인구의 농업주종사자 변화추이와 여성비율

(단위: 천명. %)

7	그ㅂ		1970				2000			2010			
구분		합계	남	여	비율	합 계	남	여	비율	합 계	남	여	비율
농가	전체	14,442	7,164	7,258	50.3	4,032	1,972	2,060	51.1	3,063	1,501	1,562	51.0
	15세 이상	8,150	3,932	4,218	51.8	3,701	1,772	1,929	52.1	2,793	1,369	1,483	51.3
농업주종사 인구									52.5			968	52.5

자료: 농림부, 1970, 2000, 2010 농업총조사 결과에서 산출

<그림 2-6> 여성농업인의 규모 (2010년)



자료: 통계청, 「2010년 농업총조사」를 활용하여 작성

친환경 농업, 농산품의 인터넷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 생산 및 가 공뿐만 아니라 유통, 소비의 전 영역에서 여성이 담당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으 로 예상된다. 또한 체험마을 등 농촌관광사업의 시행에 따라 서비스인력으로서도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마을 노인 돌봄, 보육교사, 학교급식,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방문교육 도우미와 후견인 역할 등 농촌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

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중요성도 증대될 전망이다.

여성농업인은 농업 인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체로 협업배우자의 지 위에 머물러 있으며, 법적이나 실질적 측면에서 보상체계가 미약하다. 예를 들어 농 가의 주요 자산(농지, 주택 등)은 가구주인 남성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 어 여성농업인은 각종 정책대상자 선정이나 정책자금 대출 등이 제한되고, 농업종사 경력도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직업인으로서 각종 사회보험의 독자적인 가입대상이 되지 못하여 사회보장서비스 및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등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2008년 실태조사에서 여성농업인 본인 이름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비중은 16.9% 에 그쳤다(강혜정 외, 2008) 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 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국민연금 지원대상자는 총 338,645명에 이르는데 이중 여성은 11.6%(39,140명)에 불과하였다.2)

협동조합 등 농어업인 조직 참여율도 낮은 편이다. 2007년 기준으로 농협과 수협 의 전체 조합원 대비 여성조합원 비율은 각각 29%, 26%이었고 대의원 중에서는 각 각 13%, 3.5%이었고 임원 중에서는 각각 3.4%, 0.5%에 그쳤다.

#### 4. 농어촌 환경의 변화

#### 1) 정보화

우리 사회는 1990년대 이후 급속한 정보화를 경험하고 있으나 정보화도 도시중심 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정보화를 위한 투자가 컴퓨터 보 급 확대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정보화 교육의 효율성이나 수용성이 낮은 것이 현 실이다. 그러나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화와 다양화는 인터넷을 통해 농수산물 관련

2)

<표> 농어업인 성별 연금지원 대상자 및 납부자 현황(2007)

구분	지원대상자		   납부자(B)		납부율	
下正	( A)	구성비(%)	日十八(D)	구성비(%)	(B/A)	
합계	338,645	100.0	287,983	100.0	85	
남자	299,505	88.4	251,603	87.4	84	
여자	39,140	11.6	36,281	12.6	93	

자료: 농림식품부, 2008, 「'07년 농어민연금지원대상자 현황 내역 분석」.

정보 수집과 판매 등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컴퓨터 활용능력의 차이가 농·어가들 간의 소득 격차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김철규, 2008). 컴퓨터 보유 농가의 수는 2005년 농가의 37.0%인 47만 가구에서 2010년 농가의 45.7%인 53만 8천 가구로 증가해서 2005년에 비해 14.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를 농업에 활용하는 농가도 2005년 10.6%에 비해 2010년 20.5%로 빠르게 증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활용 용도를 보면 2005년, 2010년 모두 농업정보 수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농축산물 판매는 2005년에 비해 2010년에 154.2%p 증가하여 활용 용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어가의 컴퓨터 보유율은 2010년 42.5%로 2005년 34.4%에 비해 8.1%p 증가했다. 컴 퓨터를 어업에 활용하는 농가도 2005년 7.8%에 비해 2010년 19.3%로 11.5%p의 증가 율을 보이고 있다. 주 용도는 2005년, 2010년 모두 어업정보 수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4> 정보화 현황별 농가

(단위: 천가구, %)

	농 가	PC 보유 농가	농업에 활 용	활 용 용 도1)				
				농업정보 수집	농축산물 판매	주말농원등 관광	기타	
2005	1,273(100.0)	470(37.0)	135(10.6)	120(9.5)	7(0.6)	2(0.1)	14(1.1)	
2010	1,177(100.0)		,,	224(19.0)	18(1.5)	2(0.2)	19(1.6)	
 증 감	△96	67	107	103	11	1	4	
증감률	△7.5	14.3	79.1	85.9	154.2	48.4	30.0	

주 : 1) 2종류 이상 활용한 농가가 있으므로 활용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출처: 2010 농림어업총조사 최종결과(보도자료)

#### <표 2-25> 정보화 현황별 어가

(단위: 천가구, %)

	어 가	PC 보유 어가	어업에	활 용 용 도 1)			
	91 /1	10 21 97	활용	어업정보 수집	수산물 판매	기 타	
2005	80(100.0)	28(34.4)	6(7.8)	5(5.9)	1(0.8)	1(1.7)	
2010	66(100.0)	28(42.5)	13(19.3)	11(16.9)	1(1.7)	2(2.8)	
증감	△14	0	7	6	0	1	
증감률	△17.5	0	116	120	0	100	

주, 출처: <표 2-24>와 동일

여성농업인의 정보화 수준에 대해서는 2008년 실태조사에서(강혜정 외, 2008) 조사 대상 여성농업인 중 5.1%(76명)만이 현재 농업과 관련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농업정보 수집과 농축산물 판매(인터넷 판매)를 위해 컴퓨터 및 스마 트폰 등 정보기기 활용 능력은 계속 요구될 전망이므로 여성농업인의 정보활용능력 을 포함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 2) 건강 및 복지

여성농업인의 건강문제는 여러 연구에서 계속 지적되어 왔다. 특히, 농업노동의 중년화와 시설재배의 증가로 여성농업인의 직업병이라고 할 만한 특정 증세가 일반 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증상도 심각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실제로 여성농업인 들은 지속적인 노동 부담과 작업재해 등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 며 건강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다.

농어촌 인구의 건강상태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농부증」을 진단하는 방법이 있 다. 농부증이란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농민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정신적ㆍ신체적 장 애 증상군으로 Huji(1952)에 의해 어깨결림, 요통, 손발저림, 야간빈뇨, 호흡 곤란, 불 면증, 어지러움, 복부팽만감 등 8가지 증상으로 정리된 바 있다(통계청, 2008년 농림 어업인 복지실태조사에서 재인용). 판정방법은 농부증 증상을 점수화하여(증상없음 0점, 가끔있음 1점, 항상있음 2점) 합계점수가 0~2점은 '농부증 없음', 3~6점은 '농 부증 의증', 7점 이상은 '농부증 양성'으로 판정한다.

이렇게 할 때,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가구주 또는 배우자중 52.9%

가 농부증 증세(양성+의증)를 나타낸다. 이들 농림어업인 중 여자(77.6%)가 남자 (53.6%)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증세 비율이 높다.

<표 2-26> 농부증 판정 결과

(단위: %)

	しょしゃしゃ			농림이	H업인			
	농산어촌 (읍면부)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20~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양 성	18.0	15.4	31.2	10.2	5.4	17.7	29.7	
의 증	34.9	38.2	46.4	19.1	36.6	40.0	45.7	
없 음	47.1	46.4	22.4	70.7	58.0	42.3	24.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통계청, 2008년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

농산어촌의 질병 치료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치료비가 많이 든다'이며(43.1%), '의 료기관이 멀다(24.3%)'가 그 뒤를 잇는데, 도시지역(4.2%) 보다 월등히 높아 농산어촌 지역의 의료기관에의 접근성 곤란을 반영하는 결과라 하겠다.

<표 2-27> 질병치료시 애로사항

(단위: %)

	농산어촌( 읍면부)	도시(동부)
치료비가 많이 든다	43.1	58.8
의료기관이 멀다	24.3	4.2
환자를 돌 볼 사람이 없다	19.6	26.5
기타(의료서비스 질이 낮다 등)	13.0	10.6

출처: 통계청, 2008년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

농어촌 여성의 출산전후 몸조리 일수는 평균적으로 16.4일로서 도시(23.3일)에 비 해 1주 정도 적게 나타난다. 농어촌 여성 중에서도 비농림 어가 여성(18.8일)에 비해 농림어가 여성의 몸조리 일수가 11.3일로 더 짧다. 농림어업의 특성상 사업장과 가정

의 구분이 어려워 산후조리에 집중하기 힘들기도 하지만 열악한 농림어업의 현실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될 수 있다. 농어촌 지역에서 7일 이하의 짧은 몸조리 기간을 갖 는 여성의 비중이 44.1%에 이른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2-28> 출산 전후 몸조리 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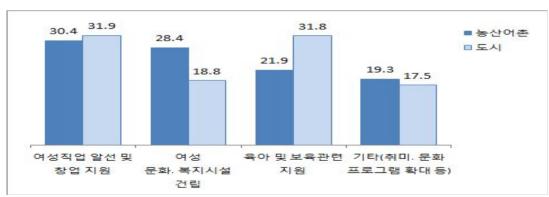
(단위: 일, %)

	농산어촌(읍면부)									도시	
		가구구분(일)		몸조리 기간별 비율(%)						(동부)	
	(일)	농림 어가	비농림 어가	0~ 3일	4~ 7일	8~ 10일	11~ 15일	16~ 20일	21~ 30일	31일 이상	
출산전후 몸조리일수	16.4	11.3	18.8	19.3	24.8	6.0	10.7	5.8	28.7	4.7	23.3

출처: 통계청, 2008년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

현 거주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여성복지사업으로는 '여성직업 알선 및 창업 지 원'(30.4%)으로 나타났지만, '여성 문화·복지시설 건립'을 지적한 비율도 28.4%에 이른다. 이것은 도시에 비해 정책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영역이다.

<그림 2-7> 가장 필요한 여성복지사업



출처: 통계청, 2008년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

그렇다면 여성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정책우선순위는 어떠한가?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서(강혜정 외) 향후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 여성농업인의 38.7%가 '복지시설 및 복지 제도 확대'라고 응답하였고, 28.2%가 '노동부담 경감', 10.3%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9.1%가 '농업관련 기술 및 자금지원', 7.7%가 '보 육 및 교육시설 확충', 4.6%가 '전문경영교육 강화'로 응답하였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요구는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40대 미만 여성농업인의 40.5%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육 및 교육시설 확충이라고 응답하였다. 젊은 여성농 업인의 농업인력화와 역할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 시키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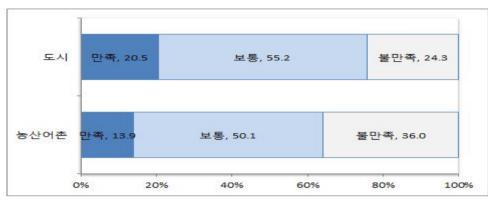
40대, 50대 중장년 여성농업인의 31%는 복지시설 및 복지제도 확대를 가장 시급하 과제로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24.7%가 여성농업인의 노동 부담 경감을 제1과제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농업노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농촌사회에서 활발하게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장년 여성농업인에게는 과중한 노동 부담으로 인한 여가 생활이 부족과 건강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 더불어 활동하기 편한 노 동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60대 이상 여성농업인의 44%가 복지시설 및 복지제도 확충을 제1순위 정책으로 꼽았으며, 그 다음은 30.7%가 노동부담 경감으로 응답하였다. 고령 여성농업인을 위 한 실질적인 복지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3) 교육·문화 및 생활여건

농산어촌의 「자녀의 교육여건(학교시설 및 교육 수준 등)에 대한 만족도」에서 13.9%만이 만족하다고 응답하여 도시(20.5%)에 비해 낮은 수준인 반면 불만족하는 비율은 36.0%로서 도시의 24.3%보다 높다. 그리고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교육비 부담 경감(37.3%), 교육시설 현대화(22.1%), 우수교사 확 보(17.9%), 교육정보화 촉진(8.2%), 우수학생 지원제도 도입등 기타(14.4%)로 나타난 다.

<그림 2-8> 자녀의 교육여건 만족도



출처: 통계청, 2008년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

한편 여성농업인의 문화향수는 낮은 수준으로 문화복지와 문화자본을 형성하는 체계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에서(강혜정외) 에서 지난 1년 동안 문화행사 및 문화시설 관람 또는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서는 70.4%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통계청 실태조사에서 농산어촌에서 가장 필 요한 문화 · 여가시설은 다음과 같이 '문화센터 및 취미센터'와 '찜질방'의 순서로 나 타나, 문화향수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9> 가장 필요한 문화·여가시설



자료: 통계청, 2008년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

지역생활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첫 번째 질문인 「생활환경 쾌적성에 대한 만 족도」에서는 농산어촌(50.0%)이 도시(38.4%)에 비해 만족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기초생활여건(주택, 교통,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등)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농산어촌(32.5%)이 도시(39.1%)에 비해 만족도가 다소 낮았다. 「이웃과의 만족도」 는 농산어촌(61.0%)이 도시(29.7%)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 여건(우편, 전화,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 대한 만족도 L는 59.6%로 도시의 62.7%보 다 약간 낮았다.



<그림 2-10> 농산어촌과 도시의 생활여건 등에 대한 만족도 차이

자료: 통계청, 2008년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

#### 5. 요약 및 시사점

농어촌 인구가 감소하는 한편 신규인력이 유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은 영농인 력의 절반 이상(51%)을 차지할 정도로 중심인력이 되었다. 농촌여성은 농업인력일뿐 만 아니라 미래 노동력을 키우고 가정을 유지하며 또한 지역사회를 계승・발전시켜 온 주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농촌·농업여성의 기여와 다중역할에 대해 응분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 인구,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특히 그간 소외되어온 농어촌 여성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첫째,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농어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영세·고 령 농업인의 생활안정 대책이 내실있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여성 1인 노인가구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어촌 여성의 연금 가입율이 낮고 특히 고연령층, 무배우자의 가입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어서 농촌의 극빈계층을 양산 할 우려가 크다. 특히 노령화되어 있는 자급농의 경우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지원 요 소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산물시장의 개방 속에서 식품시장 규모가 커집에 따라 저장ㆍ가공부문의 역할이 증대되고, 유통경로의 전문화ㆍ다양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처럼 농업을 생 산과 가공, 유통과 무역이 체계적으로 연계된 하나의 종합산업으로 보고, 그 산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의 성장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영농형태도 논벼 위 주에서 채소・과수・화훼 등 원예작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들은 여성노동 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작목이기 때문에 여성의 농업노동 참여는 더욱 늘어날 전 망이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발달, 상품의 포장과 마케팅 등 농업경영에 있어 서도 여성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어 점점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영농인 력의 주체로서 여성인력의 위상을 새롭게 하여 그에 걸맞은 다양한 역량 강화프로그 램이 설계되고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여성농업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IT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하다. ILO는 정보접근 제고가 농업·농촌과 같이 대안이 많지 않은 곳에서 최고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Hafkin, N. & N. Taggart, 2001). 그런데 우리나라 농어촌 여성의 정보화 접근 및 능력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단순히 컴퓨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활용 해 판매·유통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설계와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농가소득은 정체 및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며, 도농간 격차를 벌이고 있으므 로 다양한 농외소득원 개발이 필요하다. 농산물가격의 상대적 하락으로 농업소득의 신장이 매우 불투명하고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농공단지와 같은 고용노동형 농외소득 증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농촌지역의 고유한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녹색관광을 포함하여 다양한 농외소득원의 개발이 필요하다. 일자리 마련 을 통한 소득보장이 최대의 복지일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여성농업인 복지·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 보육 돌봄노동, 문화향수 등 제반 측면에서 여성농업인의 복지수준은 우리나라의 일반적 인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여성농업인 명의로 연금에 가 입하는 경우가 드물어 독자적인 연금수급권도 제한되어 있으므로 여성농업인의 독 자적인 연금가입을 독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다섯째, 도시보다 낙후되어 있는 농촌의 생활환경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농어촌다움을 살릴 수 있는 환경·경관관리를 포함하여 농촌이 생활공간으로서 장점 을 회복하도록 하는 복지, 주택, 환경 및 산업정책을 포괄하는 종합정책을 지속적으 로 펼쳐야 할 것이다.

여섯째, 농어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비중이 증가하는 다문화 가족과 여성 결혼 이민자의 정착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입국 초 가족관계 형성기, 자녀양육 및 정착기 등으로 나누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섬세한 정책설계가 요구된 다.



# 제 3 장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 종합 분석

-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률
-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
- 3.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과제 선정

## 제 3 장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 종합 분석

#### 1. 농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률

#### 1) 보건 · 복지 증진

보건·복지와 관련한 지원 정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 진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와 「대한민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 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 진에 관하 특별법 \_ 중 특히 제3장 중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 2, 제 16조, 제19조, 제19조 2은 농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게서 빈번히 발생하는 질병과 재해의 예방과 치료,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등에 대해 명시하 고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부는 농어업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14조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 의 예방·치료 및 보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15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 ①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 사망 등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 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 업인의 치료 · 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15조의2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질환 및 업무상 재해 의 원인규명과 관련 연구와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교 또는 병원 등이 농어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 · 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7.23]

제16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정부는 농어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17조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의 영유아를 보 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19조 (고령 농어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경영을 이양(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19조의2 (고령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 다. [본조신설 2010.7.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각 법령을 성별격차 발생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 제14조: 농어업인들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질환 중에서도 특히 여성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행하는 질환에 대한 예방·치료·보상이 적절하게 지원되고 있는가?
- 제15조: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의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에 대한 지원에 대해 성별 차를 고려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제15조 2: 재해의 치료,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때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수가가 적용되는가?
- 제16조: 노령여성인구 비율이 높은 현실을 현재의 국민연금보험이 반영하고 있는가?; 배우자 사망 시 여성 미망인의 연금보험을 대신 수령할 수 있으며 그 제도가 현실적인가?
- 제19조, 제19조 2: 노령 농어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과 영양개선 사업에서 남녀의 기대수명 차이와 필요의 차이가 다른 점을 고려한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가?

「대한민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은 농어촌보건복지의 기 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 지역에 보건의료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다.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기준 (제 19조)을 제시하고 자활지원시책의 시행 (제20조), 사회복지시설의 우선지원 (제21조) 을 명시하였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 (제4장 제22조)와 노령인구 (제4장 제24 조), 한부모가족 지원 (제4장 제26조)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4장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 제19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 ① 국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 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동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어민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을 추가하여 인정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농어민가구의 재산의 소득화산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 하여 소득환산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요인의 추가인정사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20조(자활지원시책의 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 및 이와 생활수준 이 유사한 농어촌주민의 자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제21조(사회복지시설의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개선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농어촌에 있는 사회 복지시설에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2조(영유아의 보육지원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거나 그 밖에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개정 2011.6.7.>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과 영유아 의 보육에 있어 농어촌의 특성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 다. <개정 2011.6.7>

#### 제23조(아동가정보호사업의 지원 확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농어촌아동에 대한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가정에 대하여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개 정 2011.8.4.>

- 1.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
- 2.「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위탁받은 가정
- 3.「입양특례법」제2항 제2호에 따른 요보호아동(要保護兒童)을 입양한 가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다.

#### 제24조(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하여 주거·건강증진·여 가·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무료 또는 실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1조 각호의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25조(저소득층 노인의 요양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의 저소득층노인에게 간병· 수발, 일상생활지원, 재활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저소득층 농어민 가구에 대하여는 간병비용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 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26조(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의 특례) 국가는 농어촌의 한부모가족을 선정하는 경 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제목개정 2007.10.17

#### 제27조(건강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농어민이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감되는 보험료를

포함한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1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지원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28조(부과표준소득의 산정에 관한 특례)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농어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72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휴·폐경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의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11.12.31.>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민의 재산에 적용할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제29조(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특례)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제84조에 따 라 농어민의 보험료 등을 결손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 및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 제30조(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유예)

- ① 공단은 농어민이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제78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기 한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12.31.>
- ② 농어민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유예받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농어민이 신청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유예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민에게 보험료 납부기한의 유예기간 등 필요한 사항 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④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납부기한의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납부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렁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1조(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국가는 농어민이 「국민연금법」제88조제3항에 따 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7.23>

제32조(농어촌특별세의 우선 지원)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농어촌보건복지 사업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대한민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의 각 법령을 성별격차 발생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 제3장: 암검진 항목과 대상을 결정할 때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였는가?
- 제4장 19조: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중 여성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가?
- 제4장 20조: 자활지원과 복지시설의 서비스 내용이 여성의 특성과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있는가?
- 제4장 22조: 영유아 보육지원의 내용과 성과가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및 경제적 발전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 노인의 주거·건강증진·여가·문화 등의 복지서비스가 성비와 성별특성에 맞게 신설 · 유지되고 있는가? (제4장 24조, 25조)
- 제4장 26조: 농어촌의 한부모가족 지원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는가?
- 제4장 27조, 28조, 29조, 30조: 국민건강보험료의 수가 산정과 지급에 있어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였는가?
- 제4장 31조, 32조: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에 있어 재산권이 없는 여성도 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연금대상자인 남편의 사망시 미망인이 승계할 수 있는가?; 그 과정에서 여성의 평균수명과 경제적 자립도 등이 고려되는 등 연금지급액과 기간이 현실적인가?

#### 2) 교육여건 개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는 농어촌 학교 학생과 교직원 및 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교육 부문에 대한 법령은 농어촌 학교에 필요한 양질의 교사를 공급하여 농어 촌 지역 학생들에게도 차별없는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지속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 의 학력 수준을 향상시키며, 농어촌 지역에서도 남녀의 차별없는 좋은 수준의 교육 을 제공함으로써 교육기회와 내용의 면에서 양성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다. 또한 고등 교육에 대한 기회 보장과 투자는 농촌의 경제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비용 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23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 다. [전문개정 2010.7.23]

제24조 (농업ㆍ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수산업에 종사할 기초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수산계 고등학교의 설치 · 운영에 필 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25조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배치)

교직원의 임용권자는 농어촌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원 과 행정직원이 농어촌학교에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26조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 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우대, 연수 기회의 우선적 부여, 근무부담의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 제27조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 ①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시 · 도지사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소속으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를 둔다.
- ②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 ·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28조 (농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등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시설 · 설비 및 교구(교구)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필요한 시 설과 설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중 제3장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후계 농어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교와 농어업교육 지원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여성 농 업 리더 육성을 위해 농어촌 후계자 및 리더 육성 과정에 대한 여성의 교육 참여 확 대와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 등이 요구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후계농어업인력의 양성과 경영 규모화 제9조. 제10조 제9조(학교 등 농어업교육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농어업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농업 및 수산업 계열 학교 또는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농어업 관련 실습교육 또는 농어업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농어업경영체와 협력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자의 농어업현장연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 또는 어업인후계자(漁業人後繼者)(이하 "후 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후계농어업경영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 체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 업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 1.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2. 융자금의 사용 및 사업추진현황 등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심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발전 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렁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 1.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연령, 영농·영어경력 및 교육이수 실적, 그 밖에 후계농어 업경영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 2.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 3. 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의 방법 ·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각 법령을 성별격차 발생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 제9조: 농업 및 수산업 계열학교 또는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농어업 관련 실습교육 또는 농어업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때 여성에게 불리한 지원 조건이 있는가?; 학교 혹은 조직 내부적으로 여성인력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 제10조: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시 연령, 영농, 영어경력 및 교육이수 실적 등에서 여성이 배제될만한 조건이 있는가?

#### 3)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제5장 중 제 29조, 제30조, 제32조는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경관의 보전, 그리고 정보화 촉 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도로와 대중교통, 하수도, 생활 폐기물 등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은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화의 정도 가 심화된 교육과정의 참여와 지도자 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정보화는 간접적 으로 성별격차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장 농어촌지역개발

제29조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 및 정비

-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 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정비
- 5.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 6.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라목
- 에 따른 마을하수도의 개량 ·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제30조 (농어촌 경관의 보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농어촌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야 하다.
- ② 시 · 도지사나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주변 경관을 고려한 주택의 형태 및 색채 정비 등 경관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마을 단위로 농어촌 주민 과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 · 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마을 에 대하여는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 제32조 (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 게 접근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지원할 수 있다.
- 1. 농어업의 경영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
- 2. 농어촌 주민을 위한 정보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 3. 농어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력육성 및 교육 · 훈련
- 4. 그 밖에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7.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각 법령을 성별격차 발생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 제5장 29조, 30조: 기초생활여건 개발과 변경에 있어 여성 농어업인들의 필요가 반영되었는가?
- 제5장 31조: 정보화사업을 통해 여성의 정보이용시설 이용 및 정보화 인력육성 및 교육 훈련 참여가 증가하였는가?; 정보화와 정보화 교육 훈련이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과 가정 경제에 대한 도움으로 연결되었는가?

#### 4) 경제활동 다각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하 특별법」중 제36조는 특 히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활성 화하고 도로·용수 및 하수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돕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비 용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6조(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투자되는 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 설·교육연수시설·산림휴양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 단화된 시설에 대하여 도로·용수 및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7.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각 법령을 성별격차 발생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 제36조: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지역개발이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가?;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성 농어업인의 의지와 참여는 배제되지 않는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2장 제5조, 제6조, 제7조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를 활성화하기 위한 농어촌 체험·휴양 사업 사업자 지원 및 육성과 지원, 관리 등에 대해 명시하였다. 농어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을 개발시키는 사업은 점차 인구가 줄고 급속히 노령화되어가는 농어촌 지역에 인구를 유입하고 농외소득을 통해 수입을 안정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

제5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 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 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 2. 사업계획서
- 3.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 4.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참여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
-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한 때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대표자 변경 등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등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 ④ 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을 그 마을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신청 및 지정·변경지정의 절차,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 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영어(營漁)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휴양 자원의 개발
-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
-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반 정비
- 4.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
- 5.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경영 지원
- 6.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연구
- 7.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등에게 농어촌체 험·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제7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

- ①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 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도·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②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는 그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5.27>
- 1.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
- 2.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의 준수
- ③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제2항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운영되거나 그 밖의 지정요건 등에 맞지 아니하면 농어촌체험·휴양 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의 각 법령을 성별격차 발생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 제2장 5조: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의 선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율을 낮추는 불리한 조항이나 사례, 제도의 문제는 없는가?
- 제2장 7조, 9조: 설치하는 공중이용시설과 체육시설의 종류가 여성에게도 적합한가?; 여성 농어업인의 필요를 채워주는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장 16조, 17조, 18조, 19조는 경쟁 력 있는 농어업법인을 설립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설치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 을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 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 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를 준 용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원에 영농조 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출자, 사업,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부터 제29조까지,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 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 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다
- ②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 지 못하다.
- ③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으로 가입할 수 있다.
- ④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수산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 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자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영어조합법인의 정관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 제1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 명회사(合名會社)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 합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합자회사 (合資會社)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직변경의 결의 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조합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 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공고 내용을 알 려야 한다.
- ④ 채권자가 제3항에 따른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조직변 경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⑤ 채권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조직변경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⑥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직변경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 조합법인은 해산등기를,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 다.

⑦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제2항에 따라 유한책임사원 이 된 자는 제6항에 따른 본점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 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 인의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 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 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 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농업회사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 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어업회사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 다
-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ㆍ출자, 부대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 제3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 ⑧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 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법령을 성별격차 발생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여성이 조합원 또는 회사 설립자로 참여할 때 지원 자격과 활동에 제약이 있는지?
-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홍보되고, 정보 수집이 수월한가?

#### 5) 문화 · 여가 여건 향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제33조, 제 34조는 농어촌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명시하고 있 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농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전통문화를 계승 · 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토문 화축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보다 높은 문화 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촌에서 문화예술 공연 · 전시 등이 활성 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34조 (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 · 노인복지 · 문화예술공연 · 도서관 · 생활체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 6) 환경 · 경관 개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제5장 제30

조는 농어촌의 경관 보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장 농어촌지역개발

제30조 (농어촌 경관의 보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자연화경 및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농어촌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야 한다.
- ② 시 · 도지사나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주변 경관을 고려한 주택의 형태 및 색채 정비 등 경관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마을 단위로 농어촌 주민 과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 · 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마을 에 대하여는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 2. 농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

1) 부처별 농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실행 계획

현재 진행 중인 「2012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45개, 문화관광부 12개, 교육과학기술부 10 개, 보건복지부 8개, 환경부 8개, 농업진흥청 6개, 산림청 5개, 지역자치단체 5개, 여 성가족부 4개, 국토해양부 4개, 행정안전부 3개, 고용부 1개, 소방방재청이 1개의 사 업을 시행중이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9개, 보건복지부가 8개, 여성가족부 4개, 지역자치단체가 2개, 농업진흥청, 고용노동부가 각각 1개 씩의 사업을 시행중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령 및 영세 농어업인의 주거환경 개선과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주로 보건소 업무를 포함한 의료기관 관리와 영·유아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워 중심의 서비스를 제 공하고, 지역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센터지원과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실 행하고 있다. 장수마을 육성과 지역 실업자 대상의 직업훈련은 각각 농업진흥청과 고용부에서 실행하고 있다.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사업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9개, 농림수산식품부 5개, 지역 자체단체가 3개의 사업을 시행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농어촌지역에 특성화학교 육성과 양질의 교육제공을 위한 사업을 실행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 출신 및 농어촌 고교생, 대학생의 학자금과 장학금을 지워하고 있다. 지역자체단체는 통학버 스 지원, 평생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분야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5개, 국토해양부 3개, 환경부 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2개씩의 사업을 시행중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주로 뉴타운조 성, 주거환경 개선 등 포괄적인 농어촌 개발사업을 실행중이고, 국토해양부는 농어 촌지역의 편리한 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해 여객선 건조 및 운임보조를 실행하고 있 다. 환경부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행정안전부에서는 도로정비 및 정보화마을 조성으 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실행한다.

경제활동다각화 분야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7개, 농업진흥청 4개, 산림청 2개, 문화관광부 1개의 사업을 시행중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주로 지역전략식품산 업 및 관광자원개발, 농어촌기업에 대한 지원을 실행하며, 농업진흥청은 향토자원 발굴 및 관광상품의 경쟁력강화를 지원한다. 산림청과 문화관광부는 휴양공간조성 지원을 통한 녹색관광 자원화를 실행하고 있다.

환경·경관 개선부문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9개, 환경부 6개, 산림청 3개, 행정안전 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농업진흥청이 각각 1개씩의 사업을 시행중이다. 농림수 산식품부는 주로 친환경농업기반구축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사업을 실행중이 다. 환경부는 주로 농어촌지역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청은 산림보전과 친환경연료사용을 장려하는 사업을 실행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녹색마 을 조성, 국토해양부는 해양폐기물정화, 소방방재청에서는 하천정비사업을, 농업진 흥청에서는 농촌경관조성 및 관리를 위한 기술구축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지역역량강화부문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9개의 사업을 시행중이다. 농림수산식 품부에서는 주로 농어촌과 도시지역을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농어촌의 역 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부문	사업명	소관부처
보건복지증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복지부
	농어촌지역 보건기관 기능보강 지원	복지부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현대화	복지부
	농어촌 보건의료 인력의 확보	복지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복지부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복지부
	농어촌 보육시설 확충	복지부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복지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지자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지자체
	농지담보 노후 연금제도 지원	농식품부
	영세·고령농어업인주거복지개선	농식품부
	경영이양 직불제	농식품부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농식품부
	다문화가정 농업교육	농식품부
	취약농가 인력지원	농식품부
	농업인 복지시책 교육·홍보 강화	농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	농식품부
	농어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농식품부
	여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여가부
	농촌여성일자리 지원사업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여가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여가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진청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고용부
교육여건개선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교과부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교과부
	기숙형고교 지정·육성	교과부
	우수영어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과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교과부
	농어촌학교 우수교원 유치방안 마련	교과부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	교과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교과부
	지역균형 선발제 확대 유도	교과부
	한국농수산대학 개편·운영	농식품부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농식품부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농식품부
	농어촌대학생 장학금 지원	농식품부
	자영농수산고교 급식비 지원	농식품부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지자체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지자체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	지자체
기초생활인프라확충	일반농어촌개발(포괄보조)관리	농식품부
	지역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확대	농식품부
	농어촌형 뉴타운 조성	농식품부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농식품부
	농어촌정보이용활성화	농식품부
	교통서비스 강화	국토부
	국고여객선 건조	국토부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국토부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환경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환경부
	농어촌 도로정비	행안부
	정보화마을 조성	행안부
경제활동다각화	복합산업화지원(포괄보조)관리	농식품부
	농어촌생산품 수요확대 지원	농식품부
	농어촌지역 창업, 기업성장 지원	농식품부
	지역간 연계·협력 프로그램 지원	농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농식품부
	농어촌 체험·휴양기반 확충(낙농체험목장)	농식품부

	초중등학생의 농어촌 체험·교류확대	농식품부
	향토자원 발굴 및 D/B화	농진청
	소규모 농업인 창업 및 소득화 지원	농진청
	농어촌 관광상품 품질제고	농진청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농진청
	산림휴양공간 조성	산림청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	산림청
	슬로시티 녹색관광 자원화	문화부
문화·여가여건 향상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문화부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 지원	문화부
	농어촌 작은 도서관 조성	문화부
	지역문화 컨설팅 기반 구축	문화부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문화부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운영	문화부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	문화부
	문화나눔사업	문화부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문화부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문화부
	농어촌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문화부
	지방테마과학관 건립 지원	교과부
	지역개발과 문화예술프로그램 연계	농식품부
환경·경관 개선	경관보전직불제	농식품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농식품부
	유기질비료(친환경비료) 구축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기반(지구조성) 구축	농식품부
	유리온실 등에 지열냉난방 지원	농식품부
	가축분뇨처리지원	농식품부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농식품부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2)	농식품부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	농식품부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	 환경부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환경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환경부
	농어촌지역 쓰레기 수거·처리	환경부

	가축분뇨자원화·에너지화	환경부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3)	환경부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	산림청
	목재펠릿 사용 확대	산림청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4)	산림청
	저탄소녹색마을조성(1)	행안부
	해양폐기물 정화	국토부
	소하천정비	방재청
	농촌경관조성 관리기반 기술 구죽	농진청
	농어촌형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_
지역역량 강화	단계별·맟춤형 교육훈련 강화	농식품부
	역량강화 교육품질 제고	농식품부
	지역개발 총괄계획가제도 활용	농식품부
	지역발전협의회구성	농식품부
	전국단위 지역개발 네트워크 구축	농식품부
	농어촌개발 포털사이트 확충	농식품부
	시군의 도시민 유치활동 지원	농식품부
	도농 인재 매칭시스템 구축	농식품부
	함께하는 우리농어촌 운동	농식품부

#### 2) 농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분야별 지원정책

제 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은 9개 부처, 1개 위원회, 3개 청, 13개 시·도의 지자체에서 주체하였고, 보건복지 증진,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기 초생활 인프라 확충, 농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 문화·여가여건 향상, 농어촌 환경· 경관 개선 및 지역발전 역량 강화의 7개 부문으로, 기본계획에 따른 118개의 과제가 진행중이다.

### 1) 보건·복지 증진

보건·복지 증진부문에서는 농어업인 생활안정 강화를 위한 연금·건강보험료를 지 원하고 농어업 작업 재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농어업인 413천세대에 대해 건강보험료의 28%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 후생활을 위해 230천명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공공 보건의료 시설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강화하여 농어촌 지역의 보 건·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사업도 시행 중이다. 이를 위해 보건 소 등 공공보건 기관의 신·증축 (183개소) 및 의료장비의 현대화 (343개소), 지역거점 공공병원 (21 개)의 설치 등을 통해 시설과 장비를 개선했다. 또한 의료취약지에 공중보건의를 우 선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체 의사인력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 지 역에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막고자 한다. 이와 함께 낙도와 같은 오ㆍ벽지 지역 주 민을 위해서 강워, 충북, 경북, 경남 등의 지역에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인 천, 충남, 전남, 경남 지역에는 병원선도 운영하고 있다.

고령농과 다문화가족 등 농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 업이 진행 중이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13개소) 및 소규모 어린이집(10개소)을 확충 하여 양육과 보육 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200개소)의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인력 1명을 추가 배치하 였다.

#### 2)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먼저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를 육성하고 농어촌 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면지역 초・중학교 78개교를 농어촌 전원학교로 육성하고 있으며,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학급을 소규모학교에서 전체학교로 확대 시행중이다. '11년 17,162학급에 515억워 지워되었던 방과후학교 지원을 '12년에는 46,948학급, 657억원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버스를 교체하고 통학버스 운영비 및 통학비를 지원(352억원)함으로써 농어촌 학생이 원거리에서도 통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와 함께 농어촌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도 진행 되고 있다. 먼저 영어 공교육 프로그램 등 우수 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 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지역 교사에게 특별연수 및 해외연수 기회를 확 대하여 교사의 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교원 직무연수과정에 농어촌 체험 등 농어촌 연수프로그램을 개설 · 운영하여 농어촌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하였 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거점학교를 50개교로 확대하여 농어촌 다문화 가족 학생의 한국어 및 학과 보충수업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농어촌 학생에 대한 학자 금 지원·융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활용되고 있다.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지원 대상을 방통대, 사이버대까지 확장하여 '00년도 205억원이던 총융자 금액을 '11년 1,103억원 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농어업인 대학생 자녀 7,512에 대해 장학금 145억워을 지원하 였으며,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7만여 명에 학자금 전액 (713억원)을 지원한다. 이러한 각종 학자금 지원 및 융자 확대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이러한 사업 의 목표이다.

#### 3)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농어촌의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은 전반적인 주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를 위해 일반농어촌 개발사업을 통해 120개 시·군에 총 9,304억워을 지원하고, 지 자체의 자율적 지역개발 추진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통합적 인 지역 개발을 하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주민협의, 자원분석, 시공 등 지자체 지역 개발사업 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하는 민간 지역개발 출신의 총괄계획가 제도를 통해 포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또한 「마을-소생활권-거점읍·면·중소도시」로 이어지는 정주계층별 선도거점 을 개발하여 340개 마을권역을 정비하고,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144개 권역)를 통 해 거점 기능을 강화하였다. 전원마을 등 신규마을을 33개소에 조성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에 도시민 유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노후주택 개량, 상수도 확충,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 등을 통해 농어 촌 기초생활여건 개선한다. 이를 위해 8천동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슬레이트 3,019동을 철거하였다. 또하 면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를 통해 '10년 56.1%였던 보급 률을 '11년에는 65%, '12년에는 67%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벽지 버스 노선과 도서 민의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통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도 기 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행중이다.

#### 4) 농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

농어촌의 경제활동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먼저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1-2-3차 산업 을 융복합화하는 사업이 시행중이다. 이를 위해 4,062억원을 투입하여 복합산업화지 원사업을 실시하여 농어촌 산업 인프라를 조성한다. 즉 향토자원 및 농어촌기업과 연계한 특화농공단지 6개소를 신규조성하여 '11년에 17개소 310억원이던 것을 '12년 에는 23개소 374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28개 향토자원을 신규 발굴하여 산업화하고 있으며, 매년 4개의 새로운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센터를 설치하여 시제 품을 생산하고 품질개선, 기술교육 등 창업지원 기회를 제공한다.

농어촌의 경제 발전을 꾀하기 위해 농어촌 체험·관광 방문객 1,000만 명 달성을 목 표로 다양한 체험·휴양기반을 구축하고 도농교류를 활성화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을 통해 '07년 405만명이었던 농어촌 체험·관광 방문객의 수가 '11년 946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에 발맞추어 농어촌 관광의 품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관광사업 등급제를 도입하여 체험마을 · 민박 등의 체험관광 품질, 안전, 위 생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신안 (증도), 완도 (청산), 담양 (창평), 하동 (악양), 청 송 (파처) 등 10개 지역을 슬로시티로 개발하여 국제적 농어촌 관광지로 발전하도록 37억원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1사1촌 운동을 농수산물 직거래, 일손 돕기 등 단순 교류에서 법률・세무・금융상담, 의료서비스 등의 재능기부로 확산하는 사업도 시 행중이다.

#### 5) 문화·여가여건 향상

문화· · 여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농어촌 공공도서관 11개소에 대한 건립을 지 원하고 도서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작은 도서관 22개소를 조성한다. 또한 읍·면에 17개의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11년까지 26개를 설치하도 록 한다. 지방테마과학관 9개소를 장흥, 순창, 거창 등의 지역에 건립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테마의 과학관을 설치한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문화서비스의 일환으로 소외지역에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을 제공하고, 예술 강사 4,263명을 파견하여 농어촌 학생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도록 한다.

#### 6)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지역발전 역량 강화를 위해 11개소에 농어촌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해 양폐기물 처리를 위해 15억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하수도를 확충하고 보급 률을 '11년 56.6%에서 '12년 60%로 확대하며 우리나라 농어업·농어촌의 고유한 농 법과 이로 인해 만들어진 경관 등의 산물을 보전하기 위해 「농어업 유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신재생 에너지 활용 지원을 통한 환경보호를 위해 목재펠릿보일러 3000대를 보급 하고 지열냉난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확충하 고 가축부뇨 자원화 시설도 '11년 69개소에서 '12년 95개소로 확대 설치하다.

#### 7) 지역발전 역량 강화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핵심주체 10만명을 선정하여 기초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술/지역개발 전문교육을 제공하여 농어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핵심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시민 및 귀농인력 등 도시 우수인력을 농어촌 발전에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민유 치 지원 사업 대상을 시·군에 확대하고,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설치하여 귀 농·귀촌 정보를 일원화하였다. 또한 농어촌 재능기부자 3만명 확보하여 마을발전을 지원하고, 연 4회 지자체, 언론,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농어촌지역정책 포럼을 개최하도록 한다.

#### 1) 보건·복지 증진

#### (1) 농어업인 생활안정 강화

농어촌거주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복지증진을 위해 국민연 금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재해공제 지원 확대 및 가입률 제고를 통해 농어 업인 생활·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전문인력활용과 기술개발을 통해 작업환경을 개선 하고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작업재해를 예방하여 농어업인의 안전성을 향상시 킨다.

## (2) 농어촌 보건 · 의료기반 확충

응급의료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 인프라를 구축하여 농어촌 주민의 생 존률을 개선한다.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어촌지역 공공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의료장비의 현대화 를 지워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 여건을 개선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전문인력이 직 접 찾아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의료접근성 이 낮은 낙도 등 소외지역에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3) 농어촌 취약계층 복지지원

농어업인의 기초생활보장강화를 위해 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농어민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을 추가 인정하고, 농어업과 관련되는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기준을 완화한다.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 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농지연금을 지급(65세 이상·영농경력 5년 이상·소유면적 30,000㎡ 이하인 농어인)하고, 농어촌 지역의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의 집 고쳐주기(375가구, 주택별 상태에 따라 개·보수 비용 실비 지워)를 통해 영세·고 령농어업인의 주거복지를 개선한다.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65세~70세)에게 ha당 연 300만원(매월25만원) 의 경영이양 직불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한다.

농어촌에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공립보육시설 13개소,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10개소를 지원하여 농어촌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고,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 사(42천명)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 11만원씩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여성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확대하고, 생산적인 여 가활동과 건강하게 장수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농촌건강장수마을 163개소를 조성하 여 농촌노인에게 맞는 건강생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 훈련을 위해 11억원을 투입하여 385명에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훈련과정을 개설 및 운영한다.

결혼이민자 여성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우수여성농업인으로의 육성을 위해 500명에게 기초농업교육을 실시하고, 600명의 이주여성농업인에게는 전문 여 성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하여 작목별로 1:1 맞춤 농업교육을 실시한다.

해외에서 이주한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200개소)를 통해 한국어 교욱,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다문화 가족자녀의 언어발달을 위 해 언어지도사 200명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치하여 언어발달교육을 실시하며, 농업인의 안정적 생활유지를 위해 취약농가에게 영농 및 가사도우미를 지속적으로 지워하다.

# (4) 농어촌의 능동적 복지기반 강화

지역주민, 귀촌인력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워을 활용하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여 공공서비스 공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농 어촌 공동체회사(54개소, 개소당 50백만원)를 지원한다. 지역문화복지센터 운영을 통 해 맞춤형 농업인 복지사업을 확대('11년 500개소→'12년 520개소)하고, 농어촌에 찾 아가는 문화순회공연사업(농협)을 620회 실시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문화향유 기 회를 제공한다.

# 2)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 (1)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10~'11년 동안 추가로 지정한 농어촌 전원학교 78개교에 대한 지원(56억원)을 계속하고, 농어촌 학교의 수업효과 제고를 위해 e-러닝 교수·학습지원시스템(파스텔, Fastel) 활성화를 지원한다.

농어촌 지역의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여 농어촌 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시키고, 이것을 통해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도록 재정을 지원(145개 시군)하며, 기숙형

고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연구·모델학교 운영 등 학교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지원(150교, 67억원)한다.

농어촌지역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농어촌주민의 평생학습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도서관 개방 등 학교시설 이용과 평생학습관의 신규 설 치 및 운영을 지원한다.

우수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이론 및 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졸업생을 중 심으로 한 농어업인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내실화를 추진한다.

# (2) 우수 공교육 프로그램 확충 및 교원확보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TaLK) 8, 9기 배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496명)하 고, 원어민 원격 영어 화상수업 지원 등 농어촌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다문 화 거점학교를 통해 농어촌 다문화가족 학생의 한국어 교과보충수업을 지워하고, 교·사대 재학생과 다문화 학생의 1:1멘토링 실시로 상담 및 학습지도를 한다. 농어촌 학교에 우수교원을 유치하기 위해 학교·지역 단위별 교원임용제도를 실시하고, 시· 도교육청 소속 교원 대상으로 농어촌 관련 연수지원 확대 및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 한 연수프로그램의 개발을 권고한다. 사이버가정학습 중앙센터 운영, 사이버가정학 습 관련연구 등 초·중학생 3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개발로 사이버가정학습 을 활성화시킨다.

#### (3)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

도시에 비해 교육여건이 불리한 농어업인 학부모에게 교육비 지원을 통해 농가부 담 경감시키고, 농림수산계열학과 재학생인 농어업인 자녀 또는 농어업에 직접 종사 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학금을 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부터 마련·지원하 여 젊고 유능한 후계농업인을 양성한다.

초·중·고등학교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을 지원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수 농산물 소비기반을 확보하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한다.

농과계 고등학교 자영농과 재학생, 수산계 고등학교 자영수산과 재학생을 대상으

로 급식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 및 농어촌정착을 유도한다.

농어촌지역의 원거리 통학이 용이하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농어촌학교 노후통학 차량을 교체하고,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운영 등을 지원한다.

개별 대학이 해당 대학의 특성 및 교육방침에 적합한 방식으로 독자적인 선발 기 준을 설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개별 대학의 전형 유형 파악 및 선발 인원 통 계관리를 하도록 하여 지역균형선발제 확대를 유도한다.

# 3)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 (1) 지역주도의 개발체계 정착지원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하에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있게 집행, '10년도에 개편된 포괄보조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모니 터링 등을 지원하다. 민간전문가가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총괄계획가 제도의 시 범사업 추진 등 민간참여 확대와 파트너쉽에 의한 지역개발을 추진한다.

# (2) 정주계층별 선도거점 개발

은퇴자·슬로우푸드·예술인마을 등 특색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부지조성, 도로, 상 하수도, 전기·통신, 공원·녹지, 주차장 등 마을기반을 조성하며, 지역특성을 감안한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마을을 권역화하여 전략적으로 개발한다. 인근 도시 와 농어촌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서의 읍 면소재지 역할강화를 위해 교 육, 문화 복지시설 등을 적정수준으로 확충함으로써 서비스 기능향상을 도모한다. 도시거주 젊은 인력을 농촌으로 유치하기 위해 주거환경 및 생활편의 시설을 갖춘 농어촌형 뉴타운을 조성한다.

#### (3)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농어촌지역에서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과 농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출을 지원한다. 석면비산 및 건강 위해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영세 농

어가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을 지원하고, 농어촌면지역, 도서지역의 생활용 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확대하다. 농어촌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노폭 협소구근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실시(7.1km, 121억원)하고, 벽지 노선 운행손실,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 4) 농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

#### (1) 농어촌산업 고도화

지자체가 예산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는 포괄보조금 제 도 도입에 따라 지자체의 전략적·체계적 투자를 촉진한다. 농어촌지역 생산품에 대 한 수요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제4회 농어촌산업박람회를 개최('12.6월)하여 계약체결 확대를 유도하고 유통판로 확보를 추진한다.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농어촌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보육 지원센터(8개소) 운영을 지원한다. 농 어촌산업의 규모화·광역화와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특 화 농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킹 구축, 가공·유통시설, 공동 브랜드 개발 등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으로 지역 주도의 농어촌산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한다.

#### (2) 체험. 휴양기반 구축 및 도농교류 활성화

농가·마을·거점별로 특성화된 농어촌 체험·휴양기반을 확충하고, 산림을 휴양과 연계된 공간으로 조성하며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초중 등학생의 농어촌 체험·교류확대를 위해 농어촌 유학지원 사업 실시(5개소), 농촌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팜스쿨(30개소)을 지원한다

#### 5) 문화 · 여가 여건 개선

#### (1) 생활친화형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농어촌지역에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농어촌공공도서관 11개관, 지방 테마과

학관 5~6개소 건립을 지원한다. 농어촌지역의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5개소(6억원/개소) 조성을 지원,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농 어촌 작은 도서관 조성(15개소)을 지원한다. 지역문화 컨설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전문가 및 문화기반시설 관계자 가 참여하는 컨설팅팀을 구성하여 지역내 정책혂안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다.

# (2) 농어촌 주민 문화향유 지원

국립예술단체의 우수공연 및 지역맞춤 프로그램을 소외지역 문예회관(80개소)에 공연하는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으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보육 원, 저소득층 결손·조손가정 등 소외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독서프로그 램,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하여 안정적 독서기반 제공하고 정보문화 격차를 해소한 다. 어르신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150개 소, 335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역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있는 관광축제 45개 내 외를 등급에 따라 구분하고, 차등 지원하여 국제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 농어 민 소득을 창출한다.

# (3) 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 및 교육강화

국악, 연극, 영화 등 분야별 전문 예술강사를 전국 초.중.고교에 파견하여 학생들에 게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다. 1인 1예능활동이 가능하도록 농어촌 등 소외/취약 지 역 초등학교 대상인 '예술꽃씨앗학교'운영을 위한 전문 예술강사 배치하고, 교육프 로그램, 교육 기자재를 지워한다.

#### 6) 농어촌 환경 · 경관 개선

#### (1)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 활용

경관보전직불제를 작물 보조금 중심에서 마을을 포함한 생활·자연경관, 역사·문화 자원 보전 활동에 대한 포괄적 지원으로 확대한다. 조건불리지역 법정리 내의 농지 및 초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지 급(밭·과수원 500천원/ha, 초지 250천원/ha)한다. 지역생태숲(24개소), 자생식물원(8개 소) 조성을 통해 향토·자생식물의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식물교육 등 자연학습 및 환 경교육의 공간으로 제공한다. 농어촌 경관관리를 위해 농업유산제도를 통한 농업유 산자원을 발굴 및 지정하고, 경관우수마을 선발전 및 농어촌 경관사진 공모전 등을 추진하다.

# (2) 농어촌 환경오염 방지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마을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관거 설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 고,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를 위해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11개소)하 여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공급 확대를 통한 화 학비료 사용량 절감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한다.

친환경농업지구 및 광역단지 구축을 위해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장비, 친환경농 산물 생산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유통시설·장비, 친환경농업교육시설·장비 등을 지 원하다. 페비닐 수거비 지원으로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활성화를 통 해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을 개선한다. 해양폐기물 정화·쓰레기 수거사 업을 통해 수산자원회복 및 해상교통을 개선한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재해를 사전 에 예방하고 치수·이수와 자연환경이 조화된 다목적 정비로 친수환경을 조성(2,269 억워)하다.

#### (3)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구축

농어촌지역에 목재팰릿의 사용확대를 위해 연중 목재팰릿보일러의 보급(가정용 2,800대, 주민편의시설용 200대) 및 제조시설을 설치(1개소)하여 고유가대처 및 온실 가스 감축 등에 기여한다. 유리온실 등에 지열냉난방 지원하여 고유가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한다. 가 축분뇨 해양투기 금지('12년부터)에 따라 가축분뇨 전량을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 록 자원화시설 확대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장비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유통기반을 구축한다. 농작물과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확보 및 저탄소 경제를 실현한다.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으로 농어촌의 에너지자립도 를 제고하고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 7) 지역역량 강화

## (1) 지역발전 인적자원 확충

농어촌 지역리더, 사무장,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 다양한 지역개발 주체에 대해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도농교류 전문인역 양성 프로그램 인증제도의 지 자체 이양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상반기)한다.

# (2) 지역발전 컨설팅 강화

지역개발 관련 교수·전문가 중에서 시장·군수가 위촉하여, 중장기 지역개발 방향 을 수립하고 마을정비계획 등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지자 체가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11)한다

# (3) 지역발전 네트워크 강화

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 계획수립, 모니터링 등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한다. 농 어촌지역정책포럼을 연중 운영하고, 농어촌 체험마을 정주지원 정보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웰촌포털(www.welchon.com)의 운영 기능을 확충한다.

## (4) 도시민 및 귀농인력 활용 강화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을 신청한 시·군 중 선정된 시·군(27개)에 대하여 3년간 5~6억원 이내에서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하다. 도시농어촌 인적교류 확대를 위하 활동 및 사업추진 하고, 농어촌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재능뱅크 운영·관리 및 홍 보를 추진하다.

# 3.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과제 선정

2011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통해 추진되는 정책은 크게 (1) 보건·복지 증진, (2)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3)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4) 경제활동 다각화, (5) 문화·여가여건 개선, (6)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7) 지역역량 강화 등의 총 7개 사업분야로 나누어진다. 7개 사업분야는 다시 21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지고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18개의 사업과제가 실 시되고 있다. 제6장에서는 2011년에 실시된 118개의 과제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기 준에 따라 살펴보고 이 중 개선의 여지가 있는 18개의 사업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농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 보다 양성친화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선정 기준에 따라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여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농촌여성일자리 지원사업" 등의 여성관련 사업 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이외의 사업과제를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 및 문 화·여가 인프라 확충 사업과 환경·경관 개선 사업을 비롯한 몇몇 사업과제들은 사 업수혜에 있어 양성이 모두 혜택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며, 성별 특성과 예산배분에 서 양성간의 혜택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사업수혜와 예산배분을 살펴보았을 때 다문화 관련 사업과 양육ㆍ보육 관련 사업은 수혜자의 대다수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각종 다문화 관련 사업 ("다문화가정 농업교육," "다문화가족지워센터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교 육지원")과 양육·보육 사업 ("농어촌 보육시설 확충."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 원")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필요가 낮아 심층적인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외의 사업 중 농어촌 여성의 요구가 높은 반면 여성수혜자의 비율이 낮고 예산 배분과 사업운영 면에서 성별 수혜에 불평등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총 18개의 사업과 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사업과제의 목표와 대상을 살펴보고 해당 사업을 사업의 성별요구도와 성별형평성 면에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21개의 세부사업 중 6개 세부사업에 대해 사업수혜와 예산배분, 그리고 사업계획에서의 성별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사 항을 제안하였다.

사업분야	세부사업
보건·복지 중진(33)	농어업인 생활안정 강화(10)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확충(5) <b>농어촌 취약계층 복지 지원(15)</b> 농어촌의 능동적 복지기반 강화(3)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15)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5)우수 공교육프로그램 확충 및교원확보(4)교육비 부담경감 및 균등교육기회제공(6)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16)	지역주도의 개발체계 정착지원(2) 정주계층별 선도거점 개발(4) <b>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10)</b>
경제활동 다각화(15)	농어촌산업 고도화(8) 체험, 휴양기반구축 및 도농교류활성화(7)
문화·여가여건 개선(12)	생활친화형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5) 농어촌 주민 문화향유 지원(6) 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 및 교육강화(1)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20)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활용(5) 농어촌 환경오염 방지(8)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구축(7)
지역역량 강화(7)	지역발전 인적자원 확충 및 컨설팅 강화(2) 지역발전 네트워크 강화(3) 도시민 및 귀농인력 활용 강화(2)



# 제 4 장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분석

- 1. 선행연구 분석
- 2. 해외사례 분석
- 3. 요약 및 시사점

# 제 4 장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분석

# 1. 선행연구 분석

본 장에서는 농어업인 지원정책에 관한 성별영향평가의 기존 연구를 분석하여 선 행연구의 한계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경남발전연구원(2007)에 서 경상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분야에서 성별영향평가 를 실시한 결과 크게 4가지 부문으로 문제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농어촌의료서 비스개선사업 입안·결정단계의 성별영향평가의 문제점이다. 특히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성별현실과 요구 상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공공보건기관의 진료실적 및 보건사업실적은 성별분리통계가 생산·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지침에서 인적 통계는 인구현황을 제외하고 모두 성별분리 되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양성의 차이와 욕구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에 있어 양성평등 정책 방향 고려할 때, 사업지침 상에 양성평등 및 여성을 고려한 사업 목표나 추진계획이 별도 로 명시 되지 않고 있었다. 시설개선의 경우 장애인용 화장실이 성별 구분 없이 1개 씩만 설치되어 있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는 산부인과계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 으나 장비지원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방문보건차량 지원은 보건진료원은 제외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입안과정의 성 인지적 업무 추진 경험 및 인식 역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고학력자, 공중보건의의 성 역할 태도는 양성평등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여성 관련부서 경험, 관련 교육 경험이 평등적 성 역할 태도 함양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입안·결정과 정에서 양성평등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함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위한 평가·심의 기구인 시도평가위원회(경상남 도)의 경우 총 7명의 위원 중 여성은 2명(28.6%)이며 7명 모두 공공보건 관련 공무원 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 위원 비율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어 농어촌 및 여성의 현황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는 개선안이 요구된다. 예산안을 입안 할 때도 양성평등을 고려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즉 각 사업의 예산 편성 시, 성 별 수혜도 및 보건의료 욕구보다는 기관의 규모 및 유형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사 업 예산 편성이 성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보건기관 이 용 취약 계층을 고려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보건위생과 자체 사업으 로 만성질환자, 65세 이상 고령자, 여성결혼이민자 등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나 성 별분리 통계를 산출하지 않고 있고,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모집단 대비 관리실적은 10% 미만으로 대체로 저조한 수준이었다.

둘째,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집행단계에서 나타나는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부분이다. 무엇보다 성별 수혜 실태의 점검과 환류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지역별로 여성 수혜자의 비율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즉각 적 후속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를 바탕으로 할 때, 사업 홍보 방식의 성 인지성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및 사업 홍보 시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충분히 홍보·전달한 적이 있다는 경우는 전 체의 42.4% 였으며, 성 인지적 홍보 방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5.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필요없다의 경우도 24.2%로 나타나 공공보건기관 종사자의 성 인지 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성 인지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성별에 따른 유병률을 파악하더라도 이를 사업 실행으로 100% 연결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행과정의 성 인지적 업무 추진 경험과 인식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평가단계의 성별영향평가 부분이다. 특히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수혜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수혜현황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검토와 원인 파악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2007년 사업 계획 및 내용에 환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수혜결과에 대한 성별 만족도 분석결과에서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개선사항의 경우 여성은 진료과목 확대(27.7%), 물 리치료실 증설/신설(16%), 방문보건사업(33.5%) 등이 남성 에 비해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무료진료사업(35.6%)은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 사업 예산 수혜의 성별 형평성을 살펴보면 방문보건세트를 가장 많이 지워 받 았으나 전체 수혜자가 타 시·군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지역에 대한 점검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병원선의 경우 성별분리통계를 산출하지 못해 사업 예산 수혜의 성별 형평성 정도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사업과정에서는 지역 주 민의 건강수준 향상 및 직원의 직무 만족도를 높여 보건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병원선은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주요 전달체계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주민들의 의료적 욕구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 여성을 위한 별도의 고려는 이루 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평가과정의 성 인지적 업무 추진 경험 및 인식을 살 펴보면 사업결과의 작성·보고 시 성별분리통계 작성(67.3%), 양성의 동등 수혜 여부 평가(84.4%), 성별 차이 원인 분석 및 환류 경험(82.6%), 수혜도가 낮은 집단을 위한 별도의 대안 마련(77.6%)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가단계 업무의 성 인지적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개선사업에 따른 성별 분석 및 보고 역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4 년 사업 시행부터 현재까지 남녀 이용자 및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와 욕구조 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본 사업으로 인한 수혜의 성별 형평성에 관한 내용이 간과된 측면이 있다. 이와 함께 만족도 및 효과에 관한 점검 과 모니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를 찾을 수 없었다. 내 부문건 및 평가회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의 인구 구조의 특성과 성별에 따 른 차이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내용도 찾을 수 없었으며 남녀 수혜자의 비율, 주 요 질환, 이용 목적, 만족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했다.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자원·조건의 구비 정도를 확인한 결과 12개 항목 대부분에서 전혀 없음 혹은 거의 없음이라고 응답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업무지침 및 연수기회 제공을 통 한 인식 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공보건기관에서 사용하는 각종 보고서식에 성별을 주요 변수로 지정하는 변화가 함께 요구된다.

위에 대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첫째, 인적통 계의 성별분리 작성과 보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보건기관의 진 료사업 및 보건사업실적의 성별분리통계 산출이 가능해야 하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원 기관의 경우 진료실적 및 해당 보건사업의 성별에 따른 수혜자 증감 정도를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지침에 포함된 인적통계의 성 별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공보건 서비스의 성별 형평성 제고하는 측면에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의 수렴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욕구 및 주요 문제 제시할 수 있 어야 한다.

이전신축의 경우 접근성 제고를 위해 차량우행 지원하도록 해야 하고 시설개선 시 장애인 화장실 성별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도평가단은 10명 이내로 구성 할 수 있는 만큼, 여성 및 농어촌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여성위원 비율은 40% 내외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해야하다. 또한 의료장비 개선계획 평가항목 가운데 장비 운영계획(30점)에 주사용자·예상진료건수·사후관리계획·사용계획 등에 성별 관련성을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한 경우 30점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성별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 행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남성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공 공보건기관의 전문성을 담보로 신뢰도 자체를 높이는 방안이, 여성은 차량운행과 위 치 홍보 등과 같이 성별에 따른 접근성 확보 방안에 차이를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공공보건기관 종사자의 성인지성 함양하기 위해 양성평등교육 및 성별영 향평가 관련 연수 기회를 확대해야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성별분리 통계 산출 및 활용해야 하며 단위사업의 설문조사 시 성별을 주요 변수로 분석・보고 하는 체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하는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방문보건사업용 차 량 지원은 보건소 뿐 아니라 지소 및 진료소 확대 지원이 요구되며 차량에는 '스쿠 터'를 포함한 소형 차량을 포함하는 등 지원 차종 확대가 필요하다. 응급의료인력 채 용 및 응급의료 관련 장비 구입 시에도 별도 투자가 필요하며 시도보건의료사업지원 의 경우 병원선 외에 이동 치과차량, 이동 산부인과·소아과 등의 운영을 적극 검토 하여 군 지역 의료공백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문보건ㆍ 순회진료·차량 운행·긴급이송서비스 등 지역에 따른 특화 사업 개발 및 운영 장려하 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농어촌여성건강센터'로서의 기능 보강차원에서는 보건소·보건지소·보 건진료소가 농어촌지역 여성을 위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조정 기능

을 담당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요 여성질환, 우울, 골관절염 등에 대 한 진료와 예방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진료과목별로 일반의료기관과의 정기적 협진을 실시하고 예방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농번기나 여성결혼이민자 및 혼자 사는 고령노인 가정 등에는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소·진료소에 방문보건세트 지원을 확대하고 인력에 대한 투자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대한 공공보건기관 종사자 및 지역 주민 홍 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도보건의료사업지원에서 성별에 따른 유병율 및 보건의료와 관련하 '욕구 맞춤 서비스' 개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 결 과보고 이후 성별에 따른 주민 만족도 및 효과도 제시되어야 한다(경남발전연구원, 2007).

다음으로 충청남도의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성별영향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표 4-1> 충청남도 농업인력 육성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문제점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방안
1.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법과 거시적 인 계획 틀의 내용이 당위적인 목표와 기 본적 방향에서 제시되었을 뿐, 시행령이 나 규칙의 차원에서 이러한 목표와 방향 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근거 규정과 내용 등이 제시 되지 않고 있다.	1.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및 〈여성농업 인육성5개년계획〉등 기존의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근거법령 및 계획이 정책추 진기관 및 담당자들로 하여금 여성 농업 인력 육성의 역할과 책무가 있음을 명시 해야 한다.
2. 하부기관에 대한 상부기관의 사업지침 서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성별이 분리된 통계가 활용되지 않았으며, 결과 자료 역 시 성별로 분리되어 생산되지 않고 있다.	2. 사업시행지침서나 시도사업지침서 등의 지침서에는 반드시 담당자들이 모든계획이나 결과를 성별 분리된 통계 및 자료를 활용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사업대상자 선정에 있어 여성에 대한 가산점 부여의 조건을 제시함에도 불구 하고 낮은 선정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후	3. 농업 인력육성 정책에 대한 사업지침 의 정책 수혜도에 있어 성별 격차가 큰 사업의 경우 반드시 원인 파악과 격차를

계농업인육성사업의 경우 1999년 이후 여성농업인 선정은 20%에 못 미치는 수 준이다.

-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수립시행하도 록 해야 하며, 그 과정을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형평 성의 관점에서 여성에게 불리하거나 차별 적인 조건이나 관행이 있는지 살펴볼 필 요가 있다.
- 4. 농촌관광마을인력육성 사업의 경우 관 련된 농업인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 분업에 따라 마을 주민대표나 의사결정 이 남성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배경은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있 어 주변적 위치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 4.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삶의 조건과 요 구, 우선순위를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되 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이 교육훈련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수혜 받는지 분석해야 한다.
- 5. 후계농업인 선정 시 농가단위로 선정 및 지원이 이루어져 여성이 배제될 가능 성이 높다.
- 5. 후계농업인 선정 시 농가단위가 아닌 개인단위의 선정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 록 '부부 중 한사람에게만 지원가능' 조항은 삭제될 필요가 있다.
- 6. 교육운영에 있어 여성의 현실적 조건 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 고, 실제 자녀양육을 전담하고 있는 여성 의 경우 교육 참여 의사가 있더라도 참여 하기 어렵다.
- 6. 모집에서 교육운영까지 성인지적 관 점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여성들의 조건을 고려하여 여성친화적인 교육환 경을 마련해야 한다.
- 7. 농촌 지도자들의 성인지적 관점은 성 인지적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매우 중 요함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의식 및 성 인지적 관점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 가되고 있고, 농업인육성에 대한 정책적 방향이나 성 인지적 관점의 개념 및 의미 등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 7. 농촌 지도자 및 농업 인력 육성 사업 관련자들에게 양성평등교육 및 성주류 화정책 교육과 함께 각종 활동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의 제고 및 인식수준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출처: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4,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라북도 역시 농업인력 육성정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 <표 4-2> 전라북도 농업인력 육성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문제점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방안
1. 농업인력육성정책 사업 중 후계농업경 영인육성사업의 경우 여성들의 선정 가 능성이 높다하더라도 농촌의 사회 문화 적 제약, 정보 접근성의 한계, 제도적 문 제, 낮은 학력 수준과 고령화 등으로 인 해 여성 지원율 자체가 낮은 수준이다.	1. 여성농업인 스스로가 농업인으로서 정체성과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 대상의 인식 교육과 권리 신장에 대한제도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정책 업무 담당자들의 성인지적 관점 이 낮은 수준이며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중립적 사업 추진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2. 정책 각 추진단계에서 성별영향평가 실시, 담당공무원의 성인지적 관점의 견 지, 여성농업인의 주체성과 권리의식의 내면화 등이 선행 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해야 한다.
3. 정책의 입안 및 기획단계에서 성별에 따른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성별분리통계이다. 하지만 농업인력육성정책 전반의 성별분리통계의 수집과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모든 관련 사업 보고 양식에 성별분리 된 통계의 수집 및 활용을 의무화할 필요 가 있다.
4. 농업인력육성정책에 대한 심의는 농업 농촌기본법 제43조의 농정심의회 조항에 준하여 구성된 농정심의회를 통해 결정 된다. 그러나 농정심의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에 여성 위원 위촉에 관 한 별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위원회 구성이 남성으로 편중될 가 능성이 높다.	4. 농정심의회의 여성위원 참여 비율을 30%로 높이고, 인적구성에 있어서도 여성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성인지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전문 위원을 추천할 필요가 있다.
5. 창업농 후견인제 사업의 경우, 타지역은 사업시행지침에 20% 범위 내에서 여성을 우선적으로 선정 가능하도록 한 여성우대조항을 삽입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경우 각 사업에 있어 여성우대조항을 삽입한 시행지침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5. 여성농업인의 인력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우대제도의 구체적 사업지침을 마련하고여성우대조치에 대한 삽입 조항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
6. 농업인력육성정책은 수혜율의 성별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2006년 창업	6. 성별 격차가 큰 사업의 경우 반드시 원인 파악과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8.7%, 후계농업인육성은 18.2%,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15%에 불과하다. 정책 수혜자의 성비를 정책대상 모집단 과 비교했을 때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을 제외하고 여성은 남성의 20%정도에 해 당하고 있다.

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성 형평성의 관점에서 여성에게 불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이나 관행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7.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홍보의 최종 전달자는 성인지적 관점을 인지하지 못 하는 마을의 이장인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의 다른 농정사업과 일괄적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여성 인력의 우대 조 항이나 지원에 대한 정책이 여성농업인 에게 선별적으로 전달되는 과정이 생략 되어 있다.

7.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정책 홍보 수단이 필요하다.

출처: 전라북도, 2006, 전라북도 농업 인력 육성정책 성별영향평가

더불어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농업인 대학을 통한 농업인 CEO 양성사업의 성별 영향평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아직까지 양성평등이 충분하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농업인대학 사업 참여자는 여성이 38.3%, 남성이 61.7%로 여성 참여율은 남성보다 23.4% 낮으며 이는 모집단의 성별분포와 비교해도 여성 참여율은 남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사업 참여자의 성별격차가 크기 때문에 여성 농업인 참여 제고를 위한 조치가 요구되며, 사업수행방식에서도 지원자를 선발함에 있어 성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신입생 선발 시 여성에게 가점 부여, 여성의 우선 선발기준의 근거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사업수행방식에서도 지원자 선발에 있어 성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신입생 선발 시 여성에게 가산점 부여하는 등의 여성의 우선 선발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부부 중 남성이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농업인의 관심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이 부진함을 고려하여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도 함께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 홍보 방식에 있어서는 시군 지역신문 및 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부녀회 및 여성 개인 이메일을 통한 방법 등과 같이 여성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홍보가 병행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별 분리통계 양식의 개발을 제시하며 성별, 학력, 연령별, 소득수준별 결과 보고가 이루 어질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전라북도, 2011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9).

<표 4-3>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문제점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방안
1. 여성농업인에 대한 규정을 따로 조항 으로 두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없었으며 현장의 농업기술센터의 연도별 교육과정 운영 계획과 결과보고서에 성별에 대한 구분이 없이 작성되는 곳이 있었다.	1. 농진청의 경우는 1년 동안 시행한 농업인대학 교육과정의 실적보고 양식 또한분기별 실적보고 양식처럼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하여야할 것이며, 현장의 기술센터 또한 성별구분이 가능한 통일된 결과보고 양식을 개발하고 이를 사용함으로써 전국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성별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하여야할 것이다.
2.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제정한 "여성농업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외한 나머지 조례는 대부분 여성농업인에 대한 조항을 따로 두지 않고 있었다.	2. 조례 조항 중「입학자격 및 선발 조항」 이나「교육」또는「교육훈련」에 여성에 대한 규정을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3. 여성 농업인이 농업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농업인대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았다. 대부분의 농업기술센터는 수강생의 자격을 정하고 신청기간 동안선착순으로 등록을 받고 있는데, 여성들은 농업인대학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접하지 못했거나 농사일과 가사일 병행으로 남성들에 비해 늦게 내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다.	3. 여성참여율 최저 쿼터제를 통해 여성을 우선적으로 모집하고 신청기간이 지나도 여성 신청자가 정원 미달일 경우 남성신청자 중 우선순위가 있는 남성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4. 여성들은 가부장적인 농촌문화, 자녀 양육과 가사부담, 자신감 부족 등의 문제 로 남성에 비해 참가율이 낮다. 공무원들 은 여성의 교육기회를 제한하는 요인들을 대체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나 이를 완화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못 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은 여성의 교육 수요를 대체로 파악하고 있으나. 주로 지 역주민과의 접촉 경험에 의존하므로 객관 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4. 농업인대학 교육사업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성 인지적 예산의 의미와. 성 인지적 예산편성 사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농업인대학 교육사업의 예산편 성 시에, 여성들만 참여하는 교육과정 운 영을 위한 예산, 양성평등에 대한 오리엔 테이션 비용, 여성을 위한 시설개선 등을 예산 계획에 명시하도록 한다.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농업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 농업인대 학 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이와 함께 여성의 교육수요 반영을 위해서는 5년 주기로 농업인대학에 대한 여 성교육수요 조사를 실시, 여성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 하고 남녀 농업인 대상 양성평등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인대학 교육사업 유영을 담당하는 공무워들에게 성 인지적 예산의 의미와, 성 인지적 예산편성 사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함께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대학 교육사업의 예산편성 시 여성들만 참여하는 교육과정 운영 을 위한 예산, 양성평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비용, 여성을 위한 시설 개선 등을 예 산 계획에 명시하도록 한다고 보고 있다.

창워대학교 여성커리어개발센터에서는 경상남도 창업농 후계 농업경영 육성사업 및 도시 경관 계획 수립을 위하여 성발영향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다 (창원대학교 여 성커리어개발센터 2005).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농업 인구는 청년인구의 유출과 출 산률 감소로 인하여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여성의 비율이 농업 종사 인력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농업인력 육성정책이 이러한 성별 비율을 반영하고, 양성에게 양적ㆍ질적으로 공평한 평등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 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농업종사자의 52% 이상을 여성 농업인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들은 기술과 자본과 정보에 서 소외되고 의사결정과정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농림부의 구체적인 사업수행지침에 있어서는 2004년도에 실시하였던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거의 반영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와 2005년도의 후계 농업경영인 관련 사업 수행 지침은 거의 일치하였으며, 2004년도의 성별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제언은 거의 수용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후계 농업경영인 선정 현황에 있어서도 여성의 비 율이 낮았으며, 지원액에 있어서도 여성의 비율이 전반적으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우선적으로 다양한 정책이 양성에게 평등한 영향을 미치 기 위해서는 가족 내에서의 양성평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둘째, 정책이 양성에 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동등한 혜택을 미치기 위해서는 정책 시행의 기준을 수립할 때, 양성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본 사업에 관 계된 농림부, 여성가족부, 경상남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 지침에 대한 개선방안 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4> 사업 지침에 대한 개선방안

제언 주체	제언 내용
	1) 선정 기준에서 여성의 현실 고려해야
	선정 기준에 있어서 학력별 차등, 교육 훈련기간별 차등 점수 폭
	을 좁게 해야 한다. 현재 농촌 인구에서 여성의 학력이 더 낮고, 과
	중한 역할 부담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한다
	면, 학력별 배점 및 교육 기간에 따른 배점의 차이를 좀 더 좁히는
	것이 좋다.
	2) 여성 할당제를 고려해 보도록
	여성 지원자를 우대한다고 하여도, 현재의 기준으로는 여성이 남
	성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양적으로 여성에 대한
	할당을 하는 것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농림부	3) 지원 절차의 간소화
	창업농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남성과 여성이 공통적으로
	지원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지원하고 나서 그 결과를 알게 되기까
	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점을 불만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따
	라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좀 더 여성 친
	화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지원 연령의 상한선 상향조정
	현재 농촌의 인구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고, 특히 여성 농업인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한다면, 현재 35세로 되어 있는 지원 연령의 상
	한선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35세 이후 귀농하여 영농하
	고자 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지원 연령의

상한선을 높일 필요가 있다.

#### 5) 성별분리통계를 더 많이 요구하고 활용해야

본 평가를 위하여 현재까지 작성된 통계를 경상남도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하였을 때, 여성 후계 농업경영인에 대한 통계는 선정 인원, 지원액 등 극히 소수였으며, 연령별 통계조차 성별로 집계되어있지 않았다. 사업에 관련된 통계는 농림부에서 행정사항으로 요구하는 분야만 집계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지는 않고 있었다. 따라서 연령, 영농 업종, 교육 참석도와 수료율 등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다른지 또는 유사한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항목에 대하여 성별분리통계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 6) 교육에 대한 융통성 필요

심층면담에 응한 많은 여성 농업경영인들이 교육 일정과 내용이 적절하지 않아서 참여하기 어렵거나, 또는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후계 농업경영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농업경영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찾아가서 교육하는 것 이지만,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차원적이고 수혜자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농림부 차원에서 인터 넷 화상 강의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것도 여성 농업인을 위한 좋은 교육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농 종목별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한 후 그 내용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해 간단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 또한 대안으로 생각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 교육 일정 및 장소에 대한 융통성 있는 운영 필요

예산과 일정상의 어려움, 그리고 사업 담당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후계 농업경영인 개개인을 모두 배려하기는 어렵겠지만, 각 시·군 별로 선정된 인원이 많은 곳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개별적인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경상남도

#### 2) 여성친화적인 홍보 필요

좀 더 많은 여성들이 본 사업의 양성평등적인 목적과 시행 방침을 알 수 있도록 여성친화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여성회관, 여성농업인센터 등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방문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기존에 선정된 여성 농업경영인들이 이 사업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여성가족부

#### 1)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확대

무엇보다도 성별영향평가 제도 자체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더 포

함할 필요가 있다. 2005년도에는 총 7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 사업 8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 졌는데. 이는 절대적 으로 극히 적은 수치이다.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가 실시되면, 정책 담당자와 대상자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지도 또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예산 확 대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평가 필요

정책 담당자나 국민의 의식이 대도시보다는 지방에서 더 보수적 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의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지방자치단 체를 더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된다면 지방에서의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을 고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 3) 성별영향평가 기간의 확대

2005년도의 성별영향평가는 8월에 시작되어 12월에 최종 보고를 하는 5개월의 일정으로 잡혀 있었는데, 이는 정책과 그 시행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통해서 평가를 하기에는 상당히 짧은 일정 이라고 판단된다. 각 사업의 특성에 맞추어 자료를 수집하고 정책 담당자와 수혜자에 대한 설문 조사, 면담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하는 데, 5개월은 심층적인 자료 수집과 그에 대한 고찰과 평가가 이루어 지기에는 짧은 시간이었다. 따라서.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연구 용역 기간을 좀 더 길게 할 필요가 있다.

# 4)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선정과정의 개선

성별영향평가가 보다 객관적인 견지에서 실시되기 위해서는 평가 대상 정책이나 사업의 선정과정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 된다. 현재의 선정 방법에 대한 대안으로, 여성부에서 성별영향평가 자문 위원에게 위탁하여 평가 대상 사업을 지정하는 방법과, 연구자 들이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 5) 사후평가가 아니라 사전평가 중심으로

현재는 성별영향평가가 실시되는 초기이므로 각 사업에 대하여 사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전평가로 실 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06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사전평가 를 위한 사업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 하다.

대구대학교에서 분석한 평가보고서에서는 농기계입대사업의 성별영향평가를 분 석하고 있는데, 그 대상지역은 강화, 영월, 해남, 영주, 합천 등이다 (2009).

우선 분석결과 나타난 문제점으로, 첫째, 농기계 교육은 농기계 임대사업과 반 드시 연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자체만이 아니라 농기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등 관련사업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둘째, 강화와 해남의 경우는 조례에 농기계 임대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여성 농업인을 운영위원회 등에 포함시키는 규정은 없었다. 농기계 운영위원회 등에 여성 농업인 대표 등을 참여시키게 되면, 임대 농기계의 선정 및 임대에 관련한 결정에서 여성농업인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셋째, 임 대 농기계의 선정은 여성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가 구입되는가에 있어서 중 요한 문제인데 반하여 현재 실시되는 요구도조사가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또 한 농기계임대사업에서 실무 담당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각 항목에서 성별 인지정도가 보통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담당자의 경우 여성 농업인의 규모와 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았 으며 전반적인 성 인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농업인의 비율이 더 높음 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임대를 하는 사람은 남성이 더 많은 현실에 대해서 특별히 문 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었다. 넷째, 여성 농업인에 대한 별도 교육을 실시하 는 기관은 없었다. 여성만을 따로 교육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으며, 여성에 대한 별도 교육은 또다른 성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다섯째, 모든 농기계 임대 사 업 담당자들이, 여성에 대한 우선권 부여는 또 다른 형태의 성차별이 될 수 있기 때 문에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는 여성이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한 정보 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전화번호를 잘 모른다거나, 자동 전화 예약 시스템에 낯 설어하거나, 인터넷을 잘 못할 경우 등)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응답으로서, 몰성(沒性)이 성평등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여섯째, 다섯 곳 의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두 2008년도에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 였으나, 성별로 분리하여 실시하지는 않았으며, 성별 규모 또한 파악되지 않은 상태 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함께 성별영향평가 지표 역시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고 보았다.

첫째, 성별 통계의 생산 및 활용에 대한 평가결과, 사업기획서, 결과보고서 등에 성별 분리통계를 활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농기계 임대 시 인적 통계를 성별로 분리 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둘째, 정책(사업) 결정과정의 양성평등 참여에 대한 평 가결과, 명시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을 의도적으로 참여시켰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셋째, 성 인지적 예산편성에 대한 평가결과, 농기계 임대사업은 가구단위의 작업 지원으로 성별로 분리하여 개별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책(사업) 수행방식의 양성 평등성에 대한 평가결과,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된 경로를 보면, 정보를얻는 경로는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섯째, 정책개선 및 환류에 대한 평가결과,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요구분석, 평가 등은 꾸준히 수행되고 있었으나 성 인지적 고려는 보이지 않았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우선 농기계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 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들을 위해 경량의 승용형 농기계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기계제조 회사는 수익성을 이유로 여성용 농기계의 개발에 소극 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여성 농업인의 농기계 사용률을 증가시킨다면 그만큼 농업생산에 대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성농업인 및 남성농업인에 대한 성인지 교육의 기회를 증가시 킬 필요가 있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각 지역의 조례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위원회 등의 여성참여비율을 할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농기계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농기계를 사용하면서 농업기술 향상 에 관심을 갖게 되고 농가 소득의 배분에도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여 성농업인의 여건을 개선해주어야 한다. 여섯째, 농기계 임대 여건을 여성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여성농업인이 협동조합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여성농업인이 농가 소득배분과 농지 등 생산수단 공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농작업 상해공제에 여성농업인이 쉽게 가 입할 수 있도록 완화하거나 지원하고 교관을 위한 위험수당 편성, 교육생을 위한 보 험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일곱째, 성 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의 진전도와 체감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성별영향평가에서 나타난 지표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다

음과 같을 수 있다. 첫째, 농기계 임대 사업이 성별 분리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 지침서에서 성별 분리 통계를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결과 보 고서에 성별 분리 통계를 포함하도록 한다면 성별 분리 통계가 생산되고, 다음 해의 사업에도 성별 분리 통계에 근거한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이 사업의 성 별관련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는 사업 지침, 공문 등에 이 사업의 성별 관련성을 부각하고 성별 분리 통계 작성, 성별 분리 수요 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명시한다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기계 임대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 실시 또한 담당자들이 사업의 성별 관련성 을 파악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정책 결정 과정의 양성평등참여 확대 를 위해 농기계 임대 사업과 관련된 운영위원회 구성 시 여성 할당 목표를 둔다면 여성 농업인의 의사 결정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현 재 농기계 임대 사업의 예산 편성이나 지출 과정이 성인지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농기계 임대 사업의 예산을 성인지적으로 편성하고 지출하기는 쉽지 않으나, 여성 농업인 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 등을 한다면 여성의 수혜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정책 수행 방식의 양성평등성은 높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 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임대 사업을 시행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농기계와 관련 된 보험을 확대하여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여성의 농기계 임 대 확대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 친화적인 농기계 교육, 보험과 안전 문제의 개선, 성별 분리된 요구도 조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연 구 수행시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 그리고 각 시군의 사업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고, 빈번한 의견교환, 결과발표 및 전문가 패널토의에 전국의 담당자들 이 참석한 점은 중요한 정책 환류의 하나로 지속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대구대 학교 산학협력단, 2009, 농기계임대사업 성별영향평가)

#### 2. 해외사례 분석

이 장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국, 캐나다, 호주해외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미국에서는 농어촌/국경지역 여성건 강조정센터(National Rural/Frontier Women's Health Coordinating Centers, RFCCs)가 운영

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기관인 보건 인적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HHS) 소속 여성건강국(The Office on Women's Health, OWH)에서는 생애주기관점에 기반하여 여성에게 포괄적이고 통합적이며 다학문적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농어촌/국경지역 여성 건강 조정센터(National Rural/Frontier Women's Health Coordinating Centers, RFCCs)를 구성하여 전미지역에서 11개의 유관기관 의 서비스를 조정·관리하고 있다. RFCCs의 전달체계는 <그림4-1>와 같다.



<그림 4-1> 미국 농어촌/국경지역 여성 건강 조정센터(RFCCs)의 전달체계

RFCCs는 2001년에 농어촌 지역에서 여성건강증진사업을 시작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 는 650만명, 즉 전미 농어촌지역 거주 인구의 1/4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농어촌 및 국경지역 거주자들은 도시지역 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빈곤율과 낮은 수준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진을 포함한 건강 관련 자원이 부 족한 상황이다.

특히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은 심장질환, 고혈압, 암 등의 발병률이 도시지역 거 주 여성이나 동일지역 거주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농어촌지역 여성의 건강 문제에 대한 효과적 전략으로서 포괄적인 농어촌/국경 여성건강조정센터를 설립하여 운 영하고 있는 것이다. 각 센터에서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뿐 아니라 여성을 위한 포괄 적이며 다학문적인 건강 케어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에 농어촌 여성들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옹호(advocacy) 전략을 활용하며, 공공행정기관과 의료서비스 전문가를 대상으로 농어촌 여성 건강에 대한 적절한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11개 네트워크 기관의 전달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 아리조나 지역사회건강센터협회(Arizona Association of Coomunity Health Centers)
- 콜로라도 노숙자현합(Clorado Coalition for the Homeless
- 켄터키 지역사회케어(Kentucky River Community Care, Inc.)
- 노스컨츄리 건강조합(MNorth Country Health Consortiun, Inc)
- 리오아리바 가족케어네트워크/ 노던뉴멕시코 건강센터(Rio Arriba Family Care Network, Inc. / Health Centers of Northern New Mexico)
- 서던지역 건강교육센터(Southern Area Health Education Center)
- 서던네바다 건강교육센터(Area Health Education Center of Southern Nevada)
- 유타나바요 건강조직(Utah Navajo Health System, Inc.)
- 위스콘신 여성건강재단(Wisconsin Womens's Health Foundation)
- 여성의 건강과 모성 센터(Women's Wellness and Maternity Center)
- 와이오밍 건강 연합회(Wyoming Health Council)

이 가운데 '여성의 건강과 모성센터(Women's Wellness and Maternity Center)'와 '위스콘 신 여성건강재단(Wisconsin Womens's Health Foundation)'에서는 여성에 특화된 설비 및 인력을 마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의 건강과 모성센터(Women's Wellness and Maternity Center)'는 농어촌 지역의 여성과 신생아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3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여성 뿐 아니라 라틴계열 인구를 위한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프로그램으로는 임산부 건강관리(산전관리, 분만관리, 산후관리 등), 모유수유 교육 및 가족계획, 영유아관리(발육측정 및 예방접종관리), 영양관리 등을 들 수 있다.

위스콘신 여성건강재단(Wisconsin Womens's Health Foundation)은 2000년에 설립되어 소수민족 여성과 농어촌 여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로 유방암, 심장혈관계 질병, 가정폭력, 정신질환, 결핵, 흡연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여성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별히 임신여성의 금연과 단주를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과 아동을 위하여 쉼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사를 파견,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및 소식지 발행과 캠페인 등을 통하여 재단의 모든

사업을 홍보함으로써 여성 건강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개선에 힘쓰고 있다.

두 번째 사례로는 Tri-State Rural Health Partnership Wisconsin Coulee Region Community Action Program이 있다. Tri-State Rural Health Partnership은 아이오와의 미시시 피강과 알라마키 지역, 미네소타의 호스턴 지역, 그리고 위스콘신의 버논지역 등 의료서 비스기반이 충분하지 못하며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다른 유사한 프로그램과는 달리 빈곤층의 의료욕구에 집중하기 보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설계되어 있다.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 경제는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수준 또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지역주민들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특히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이나 심장질환 예 방, 그리고 학교보건에 대한 욕구가 높은 편이다.

Tri-State Rural Health Partnership은 7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운영보고서에서는 지역사회의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사를 대상으로 질병관련 교육이나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찾아가는 방 문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주민들은 의료서비스와 정보에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 다고 보고하고 있다. 현재 6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골다공증 예방 프로그램을 실 시하다가 최근 젊은 여성들에게 확대 실시하고 있고 특히, 여성노인을 위한 운동과 건 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해 매우 효 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농어촌 여성 건강 프로그램(A Rural Women Health Program, RHP)을 운 영하고 있다. South Westman 지역의 지역건강국(Regional Health Authority, RHA)에서는 1999년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Invisible Women: Gender and Health Planning in Manitoba and Saskatchewan and Models for Progress'에 기반하여 Saskatchewan 지역과 Manitova 지역 에서는 성(gender)을 건강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여 성 인지적인 건강센터를 설립 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South Westman의 지역건강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RHP는 Melita와 Borssevain이라는 2개 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전체 인구 50.1%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 한다. 캐나다의 농어촌 여성 건강 프로그램(RHP)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지역자문 위원회(Lecal Advisory Committees)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2개 지역의 여성과 Boissevain 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결과를 근거로 각각의 지역에 관련 월례교육을 오찬 모임(monthly Educational Luncheons) 형태로 실시하고, 월 1회 여성전문건강클리닉(A Women Health Clinic) 운영하며,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프로그램을 상시 운영

한다.

지역자문위원회는 해당지역의 여성 집단과 RHA의 직원들이 모여 세부 프로그램의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점이나 신규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을 논의한다. 즉, RHA의 직원과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이 RHA에 높은 수준으로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월례교육 오찬모임은 우울이나 골다공증, 자궁암이나 운동 및 유행하는 다이어트 등 특히여성과 관련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평균 100여명의 여성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오찬모임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이나 경제활동여성, 그리고 여학생 등 참가자의 프로그램 만족도는 평균 55%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성건강 클리닉은 기본적으로 여성 질환, 예를 들어 자궁암이나 우울, 골다공증, 임신 및 출산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여성의료진이 2개의 지역에 월 1일 동안 상주하여 원하는 지역사회 여성들이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성흡연율을 줄이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젊은 여성들 및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호주에는 "농업과 자원관리에서의 여성을 위한 계획"(The National Plan for Women in Agriculture and Resource Management)을 시행하고 있다. '계획'은 호주 전역에서 구성된 '농촌여성 활동가 집단'(the Rural Women's Working Group)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며, 이 활동가 집단은 농촌여성, 여성농업인, 농촌 여성 관련 지원 기관 종사자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 '계획'의 비전은 여성 잠재력의 완전한 실현을 통하여, 혁신적인 농업,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활력 있는 농촌 공동체를 달성하는 것이다. '계획'은 5가지의 주요 원칙에 기반하고 있으며, 5개의 핵심 분야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 〈워칙〉

- ▶ 여성과 남성은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책임을 공유하고, 농업과 공동체를 위한 성과를 달성하는 일을 하는데 있어 책임을 공유하다.
- ▶ 농업의 번영과 지속가능성은 농촌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기술 과 관점을 활용할 때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
- ▶ 여성의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을 줄이는 것은 정부, 산업, 공동체의 공동 책임이다. 이 작업은 파트너십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 다양한 스텝들의 숙련 기술들을 효율적으로 끌어내는 조직들은 다양한 수혜자들에

대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훌륭한 자료의 축적 및 연구조사는 효과적인 변화 관리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원칙과 전략에 따라 호주 정부는 여성들의 정책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의 지원 및 가동, 서비스 지원, 업무 담당자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하여 호주 농촌 여 성 및 여성농업인들의 정책 결정 참여를 강화하고 있다. 3)

또한 연방 농림부의 '수혜자로서의 여성' 전략(AFFA, Women as Clients)이 있다. 호주 연방 농림부는 '계획'과 함께 여성을 주요 정책 수혜자로 재인식하고, 여성을 농업 정책 사업의 결정, 집행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을 수행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지침을 개발하였다. 1999년 농림부는 '수혜 전략대상으로서의 여성'(Women of client strategy)을 정책 추진의 의제로 삼았다. 이것은 농림부의 수혜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인 식을 새롭게 하고, 농림부 프로그램, 정책, 서비스의 개발에 여성의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 발의한 것이다. 그 전략은 '농업 및 자원관리에서의 여성을 위한 계획'을 보완하는 것이며, 정책결정 부문에서 여성을 포함하는데 있어 가장 좋은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공 해주는 것이다.

호주 연방 정부의 전국적인 계획 외에 보다 구체적인 농업정책의 성 인지적 정책 프 로그램으로는 빅토리아 주에서 실시한 '농업 및 자원관리에서의 여성 등록명부' 프로젝 트(Women in Agriculture and Resource Management Register)를 들 수 있다. WARM 프로젝 트는 농업과 자원관리 부문에서의 정책결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 었다. 등록명부는 이 분야와 관련된 전문적인 여성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로 개발되 었으며, 위원회나 자문단이 구성될 때 활용되었다. WARM 등록명부 프로그램은 여성들 이 그 등록명부에 등재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WARM 등록명부는 농업 및 자원관 리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빅토리아 주 여성들이 농업 및 자원관리국이나 위원회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WARM 등록명부는 공식적 으로 2000년 3월부터 시작되었다. WARM 등록명부의 홍보는 빅토리아 농촌 여성 네트 워크, 라디오 및 언론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주요 홍보 활동으로는 농촌여성들에게 WRAM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인터넷을 통해 등록명부의 등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

<sup>3)</sup>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4,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여성부.

안된 워크샵들이다. WARM 등록명부 프로그램은 이용자들이 응모 원서 작성법, 인터뷰 테크닉, 자기평가 구축 및 리더십 기술 개발 등에서 보다 쉽게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등록명부에 대한 공공 부문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200명 이상의 여성들이 여기에 등록했고, 현재도 많은 여성들이 등록을 하고 있다.4)

뉴질랜드 농림부에서는 성 평등한 지속가능 농업 촉진 프로그램(Gender Equal a Sustainable Agriculture Facilitation Programme)을 운영하고 있다. 뉴질랜드 농림부는 1990년 대 후반부터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개발 및 서비스와 같은 부문에 대한 조사 연구에 많은 지원을 해왔다. 이 중에서 1997년에 나온 Mary Jane Rivers의 〈변화와 다양성: 뉴질랜드 농촌 여성의 기회와 제약〉이라는 뉴질랜드 농림부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5)

이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장벽들을 극복하려면 이론적 인 측면에서, 실천적인 측면에서 모두 성 평등성이 필요함을 밝혔다. 성 평등성은 지역 의 농촌 자원 기반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역의 경제 성장을 증대하는데 매우 중요하 다는 것이다.

#### 〈프로젝트의 목적〉

- ▶ 영농분야 및 다른 부분에서 여성들이 가시화되고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
- ▶ 여성들이 이용 가능한 경제적 기회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
- ▶ 정책결정자/자문위원/리더/언론이,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및 영농 사업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 여성들의 식견을 요청하는 것이 지닌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
- ▶ 이 프로젝트에 대한 합의된 평가 및 피드백 체제를 구축하는 것

이 프로젝트는 여성 농업인, 남성 농업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 관계자

<sup>4) &</sup>quot;A Vision for change: National Plan for Women in Agriculture and Resource Management, Standing Committee on Agriculture and Resource Management, 2001,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4,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성별영향평가」에서 재인용"

<sup>5) &</sup>quot;A Short Summary of the Research Report, 1997, Change and Diversity: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 for Rural Women in New Zealand,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4,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성별영향평가」에서 재인용"

들이 참여 집단 협의와 워크샵 등을 거쳐서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장애 요인들을 확 인하고, 여성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농촌 지역 언론의 여성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들의 역할에 대하여 인지하고 그들을 농촌 공동체에서 보다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실제 워크샵에 참여했던 컨설턴트들은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하여 자신들의 자문 활동에서 여성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었으며 언론 역시 농촌여성과 여 성농업인을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하였다. 6

## 3. 요약 및 시사점

기존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과 분야별 해외사례에 대해 정리 해 보고자 한다. 먼저 기존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과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실질적인 사업 참여율이 낮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성별 현실 차이와 욕구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다. 여성의 실질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성참 여율최저쿼터제 등의 실시가 필요하며, 남성과 여성의 현실 및 욕구 차이에 대한 고려 를 통해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사업 진행과정에서 여성들의 의견 반영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여성이 주변적 지위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는 위원회에 여성 참여 규 정을 명시하고, 여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공무원 및 정책업무관련자들의 양성평등 의식 및 성인지적관점 수준이 그리 높 지 않으며, 성별분리통계의 수집·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책 관련자들에게 양성 평등교육 및 성인지적관점 제고를 통해 인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성별분리통계 양식의 개발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존의 사업 홍보 방식은 여성들이 정보 제공 받는데 있어 제한적이므로 부녀 회 및 여성 개인 이메일 등의 여성의 정보 접근성이 높은 수단을 활용하여 홍보의 효과 를 높이고, 지속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sup>6) &</sup>quot;Gender Equal a Sustainable Agriculture Facilitation Programme, Ann Pomeroy, 1998, MAF Policy, 충 남여성정책개발원, 2004,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성별영향평가」에서 재인용"

## <표 4-5> 기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공통 사항

#### 결 과

- 1. 여성이 유리한 우대 조항이 있음에도 실질적인 여성의 참여율이 낮은 수준이 다.
- 2. 사업을 운영에 있어 성별 현실 차이와 성별 욕구 차이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다.
- 3. 성별분리통계의 수집과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4. 기관 및 사업 홍보에 있어 성별에 따라 다른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 여성들의 정 보 접근성에 제한이 있다.
- 5. 정책업무 관련자들의 양성평등의식 및 성인지적 관점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
- 6. 사업 진행 과정에서 운영되는 위원회 의 경우 성별 분업에 따라 남성에 의해 주도되는 상황이며, 여성을 포함시키는 규정이 없어 여성이 주변적 지위에 머무 를 가능성이 높으며 여성들의 의견을 반 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영시키는 데 제약이 따른다.

#### 개 선 방향

- 1. 실질적 여성참여기회의 확대를 위해 여성 참여율 최저쿼터제 등을 실시하고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 구된다.
- 2. 남성과 여성의 현실 및 욕구에 대한 차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 3. 성별분리통계 양식을 개발하고 모든 관련 사업 보고 양식에 성별이 분리된 통 계를 수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의무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 4. 부녀회 및 여성 개인 이메일 등의 다양 한 방법을 활용하여 여성들의 정보 접근 성을 높이고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 5. 정책 관련자들에게 양성평등교육 및 성주류화정책 교육을 실시하고, 성인지적 관점 제고 및 인식수준 향상을 위한 내용
- 6.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수혜 받는 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앞서 기존의 성별영향 분석 평가가 지적하고 있는 공통된 사항과 개선방향에 대해 살 펴보았다. 분야별 세부사업의 결과와 개선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 리 할 수 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경우 평가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에 대한 조항이 존재 하지 않아 여성의 현황을 대변할 수 없고, 예산편성에 있어 성별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혜자의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농어촌의 여성 현황을 대변 할 수 있는 위원의 구성을 위해서는 외부 인사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과 정에 성별에 따른 욕구와 주요문제를 제시하고, 성별에 따른 주민의 만족도와 효과에 대한 평가의 실시가 요구된다.

도시경관계획수립에 있어 전문가집단과 수혜자집단에서 동시에 성별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여성전문위원 구성 자격 요건을 현실화하고, 의사결정권을 여성에게 개방 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조례 및 지침에 양성의 균등한 참여가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의 경우 여성들을 위해 경량의 승용형 농기계 개발과 함께 체계적 기계 교육이 요구된다. 농업인력육성사업은 후계농업인 선정시 농가단위로 선정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농업인 대학을 통한 농업CEO양성사업은 부부 중 남성이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농가단위가 아니라 개인단위의 선정 과 지원이 필요하며 '부부 중 한사람에게만 지원가능'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고, 여성 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표 4-6> 사업별 성별영향분석평가

분 야	사 업	결 과	개 선 방 향
		1. 시도평가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어 농어촌 및 여 성의 현황을 대변 할 수 없 다.	1. 농어촌 및 여성의 현황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는 개선안이요구된다.
보건 복지 증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2. 사업 예산이 성별 수혜도 및 보건의료 욕구보다는 기관의 규모 및 유형에 따라 결정되어 예산편성에 있어 성별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	2.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있어 성별에 따른 욕구 및 주요 문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관리계획·사용계획 등에 성별 관련성을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한 경우 가점을 부여하도록
		3. 남녀 이용자 및 수혜자의 만족도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혜의 성별형평성에 관한 내용이 간과되었다.	해야 한다. 3. 사업 결과 보고 이후 성 별에 따른 주민 만족도와 효과의 제시가 요구된다.
농어촌 환경 · 경관 개선	도시경관 계획 수립	1. 전문가 집단과 수혜자로 부터 동시에 성별 편차를 보인 경우는 시범경관지구 지정, 도시경관브랜드 확보	1. 여성전문위원 구성 자격 요건을 현실화 하여 의사결 정권을 여성에게 개방하고, 경관정책 성별영향평가에

,				
			등 경관계획 시 양성 수혜 자의 의견 반영이 절실함 을 알 수 있다.  2. 선도적 경관행정 수행 시 여성 정책집행자가 유리 한 반면, 유도정책 수행 시 남성 정책집행자 유리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대한 예산편성과 도시디자 인과 신설이 필요하다.  2. 도시경관 관리 조례 및 지침이 필요하며 가능한 한 양성의 균등한 참여하에 명 문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별 견해차가 뚜렷한 각종 경관지구신설 및 규제 시 양성의 균등한 정책 집행이 필요할 것이다.
		농기계 임대사업	1. 농기계교육은 농기계 임 대사업과 반드시 연계 운영 되어야 하며, 농기계를 적 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의 관련 사업이 검 토되어야 한다.	1. 여성들을 위해 경량의 승용형 농기계 개발이 이루 어져야 하며,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농기 계교육의 활성화가 요구된 다.
			2. 여성농업인을 운영위원 회 등에 포함시키는 규정은 없었고, 임대 농기계의 선 정 및 임대에 관련한 결정 에서 여성농업인의 의견 반 영이 제한적이다.	2. 운영위원회 구성시 여성 할당 목표를 두어 여성 농 업인의 의사 결정 참여 확 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역량 강화		1.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목표와 방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근거 규정과 내용 등이 제시 되지 않았다. 2. 후계농업인 선정 시 농	1.여성 농업인 육성을 위한 근거법령 및 계획이 정책추 진기관 및 담당자들로 하여 금 여성 농업 인력 육성의 역할과 책무가 있음을 명시 해야 한다.
		농업 인력 육성 사업	가단위로 선정 및 지원이 이루어져 여성이 배제될 가 능성이 있다. 3. 여성의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운영방 식으로 교육 참여 의사가 있더라도 참여에 어려움이	2. 농가단위가 아닌 개인단 위의 선정 및 지원이 이루 어지도록 '부부 중 한사람 에게만 지원가능' 조항은 삭제될 필요가 있다. 3. 모집에서 교육운영까지

		따른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여성들의 조 건을 고려하고 여성친화적 인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한 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 (농업인대학 교육사업)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제 정한 "여성농업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를 제외 한 나머지 조례는 대부분 여성농업인에 대한 조항을 따로 두지 않고 있었다.	조례 조항 중「입학자격 및 선발 조항」이나「교육」또는 「교육훈련」에 여성에 대한 규정을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 대학을 통한 농업 CEO 양성 사업	부부 중 남성이 교육에 참 여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 농업인의 관심을 고려한 교 육과정 개발이 부진하다.	여성농업인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에 여성이 많 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을 개발해야 한다.
	창업농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	여성농업인의 고령화 추세 를 반영하면 현재 35세로 되어 있는 지원 연령의 상 한선은 수정될 필요가 있 다.	지원 연령의 상한선을 높이 고 35세 이후 귀농하여 영 농하고자 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국경지 역여성건강조정센터'를 운영하여 여성을 위한 포괄적이며 다학문적 서비스를 개발하고, 여성에 특화된 설비와 인력 마련을 통해 농어촌여성들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옹 호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농어촌여성건강프로그램을 통해 성인지적 건강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개 지역의 여성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과 모임을 실시하고 있다.

호주의 농업인력육성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농업과 자원관리에서의 여성을 위한 계 획"은 농촌여성, 여성농업인, 농촌여성 관련 지원기관 종사자로 구성된 '농촌여성 활동 가 집단'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여성들의 정책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지원을 돕고 있다. 연방 농림부는 여성을 주요 정책 수혜자로 재인식하고, 여성을 농업 정책 사업의 결정 및 집행에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실천지침을 개발하여 정책결정부문에서 여성을 포함함에 있어 가장 좋은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방 빅토리아 주의 '농업 및 자원관리에서의 여성 등록명부 프로젝트'는 전문적 여성을 포함하는 데이터 개발을 통해 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에 농업 및 자원 관리 분야에 관심 있거나 경험 있는 여성들을 임명하고 있다.

다양한 해외 사례를 통해 여성들의 참여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의 마련, 정책결정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의 개발, 사업 진행과 운영과정에 여성의 적극적 의견 반영 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표 4-7> 해외사례 분석

분 야	사 업	내 용
ыл	미국의 농어촌/국경지역 여성건강조정센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농어촌지역 여성의 건강문제에 대한 효과적 전략으로 포괄적인 농어촌/국경 여성건강조정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에 특화된 설비 및 인력을 마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어촌여성들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옹호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전문가를 대상으로 농어촌 여성건강에 대한 적절한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 복지 증진	캐나다의 농어촌여성 건강프로그램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Saskatchewan 지역과 Manitova 지역에서는 성 (gender)을 건강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여 성 인지적인 건강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어 촌여성건강프로그램(RHP)은 지역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개 지역의 여성과 Boissevain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결과로 각각의 지역에 관련된 월례교육을 오찬모임형태로 실시하고, 월 1회 여성전문건강클리닉을 운영하며, 젊은 여성이 대상인 금연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농어촌 환경 · 경 관 개선	영국의 '대중교통에서의 성 편향성 진단' (도시경관계획)	교통 관련 조직 내의 현저히 낮은 수준의 여성인 력 고용 현황, 의사결정 단계에서 소수 여성 인력, 교통계획 시 여성 이용자의 의견 반영 실패 등이 교 통부문이 남성 통행자 중심으로 개발되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관련 행정조직의 인식전환, 여성전

		문인 육성 및 의사참여 확대, 실행사례 홍보와 정보 공유, 교통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 양성평등에 대 한 공공부문의 의무사항 도입 등 실천적 정책을 제 시하고 있다.
지역역량 강화		1. "농업과 자원관리에서의 여성을 위한 계획"이 계획은 호주 전역에 구성된 '농촌여성활동가집단'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농촌여성, 여성농업인, 농촌 여성 관련 지원 기관 종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잠재력의 완전한 실현을 통해 혁신적 농업,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활력 있는 농촌 공동체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여성들의 정책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비스지원, 업무 담당자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해호주 농촌 여성 및 여성농업인들의 정책 결정 참여를 강화하고 있다.
	호주의 농업인력 육성사업	2. 연방 농림부의 '수혜자로서의 여성'전략 호주의 연방 농림부는 여성을 농업 정책 사업의 결정 및 집행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실천 지침을 개발하여 정책 결정부문에서 여성을 포함하는 데 가장 좋은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3. 연방 빅토리아 주 '농업 및 자원관리에서의 여성 등록명부' 프로젝트 등록명부 프로젝트는 이 분야와 관련된 전문적 여성을 포함하는 데이터를 개발하여 위원회나 자문단이 구성될 때 활용하기 위함이다. 여성들이 등록명부에 등재될 수 있도록 고안하여 농업 및 자원 관리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위원회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뉴질랜드 농림부의 '성 평등한 지속가능 농업촉진 프로그램'	영농분야 및 다른 부분에서 여성들이 가시화되고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과 여성들이 이용 가능한 경제적 기회들에 대 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여 성농업인, 남성 농업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집단 협의와 워크샵을 통해 여성들이 경험하 고 있는 장애 요인들을 확인하고, 적극적 참여를 이

	끌어내며, 농촌 지역 언론의 여성에 대한 태도를 바
	꾸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 제 5 장 성별요구도 분석

- 1. 문헌 분석
- 2. 면접 결과 분석
- 3. 요약 및 시사점

### 제 5 장 성별요구도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삶의 질에 대한 만족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 30%에 미치지 못하는 응답자가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하여 만족한다고응답한 반면 30%가 약간 넘는 응답자가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는다고응답하였다.

Base=전체		① 전혀	② 별로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⑤ 매우	계	
•	 ■ 전 체 ■		그렇지	그렇지	_0	그렇다	그렇다	
			않다	않다				
■ 전			6.6	25.1	41.5	22.7	4.1	100.0
성	별							
	남	자	7.7	25.3	40.6	22.8	3.6	100.0
	0‡	자	5.6	24.8	42.4	22.7	4.6	100.0

<표 5-1> 설문조사 결과: 삶의 질 만족도

여기에서는 문헌분석, 면접, 그리고 설문조사의 내용을 종합하여 농·어업인들이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특히, 성별로 요구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1. 문헌 분석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여러 문헌을 통해 성별요구도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먼저, 강혜정 외는 한 연구에서 여성농업인의 생애주기별 정책수요를 조사하였다 (2008). 먼저, 중장년 여성농업인의 정책 수요로, 여성농업인이 겪고 있는 제약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여성농업인을 직업인으로 인정하는 법제도적 체계 마련 (17%)과 농업인 연금제도확대 등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15%) 등이 제시되었고, 가사 및 노동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가사도우미 제도 지원(30%), 남편 및 가족의 가사 노동 분담(28%), 여성용 농기계 개발 및 저가 임대(20%) 등이 우선순위를 차지하였다.

자녀 보육 및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육센터 및 방과 후 교실 지원 (25%), 여성농업인센터 확충 및 보유기능 강화(24%), 면지역까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22%) 등이 우선순위를 차지하였다. 마을, 여성농업인센터, 또는 국가 등의 운영주체 문제보다 보육기관의 근접성을 더욱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접근성이 높은 보육 및 교육기관을 설치하되, 지역특성과 역량에 맞게 운영방식을 선택해야한다.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방안으로 부부공동 영농교육(18%), 마케팅, 브랜드, 정보화 교육 등 전문 경영교육 강화(18%), 여성농업인의 경영교육을 위한 통합 교육기관 신설(17%) 등이 우선순위를 차지하였다.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방안이 교육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체계와 방법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농외소득활동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속적인 기술 및 경영교육(17%), 일손 부족 문제해결(15%), 운영자금 지원(14%)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고, 여성농업인의 지역리더육성 방안으로 여성농업인 대상 리더십 훈련 · 교육(24%), 여성의 지역사회활동이 우수한 마을 우대 지원(22%), 육체적으로 힘든 마을일을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 고용 지원(19%) 등이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사회생활과 조직문화 경험이 부족한 여성농업인은 토론, 회의기법 등을 포함한 리더십 교육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장년 여성농업인에 이어, 고령여성농업인의 정책 수요는, 농업인 연금 지원확대 (21%), 고령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촌형 지역 일자리 창출(17%), 고령취약 농가의 집안일을 돕는 가사도우미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15%) 등이 우선순위를 차지하였다. 노동능력을 갖춘 고령여성농업인은 계속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 생활능력을 상실한 독거고령여성농업인 또는 은퇴를 희망하는 여성 농업인은 농업인 연금지원 확대로 안정된노후생활이 보장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여성농업인을 위한생산자원화정책과 복지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잠재적 여성농업인으로 한국농업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7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정책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후계여성농업인의 정책 수요를 살펴보면, 먼저, 조사 대상자 평군 연령은 24세이고 전공분포는 식량작물과 8%, 채소과 14%, 과수과 5%, 특용작물과 26%, 화훼과 31%, 축산과 16%이다. 조사 대상자의 81.8%가 영농종사의무기간 6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로 ① 농촌의자연환경이 좋아서(27.1%) ② 전문 농업경영자가 되고 싶어서(26.3%) ③ 농업은 노력하면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이므로(16.9%) 등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18.2%가 농업에 종사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는 ① 농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복지 및문화시설 때문에(25.9%) ② 여성농업인들의 과중한 노동 부담 때문에(22.2%) ③ 농사를지어서는 돈을 잘 벌지 못할 것 같아서(18.5%) 등으로 나타났다.

향후 영농참여정도에 대하여 남편과 함께 공동경영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66%로 가장 높았다, 농업관련 사업의 참여정도에 대해서도 남편과 함께 생산과 경영을 함께 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후계여성농업인은 독 립경영주보다는 남편과 함께 경영하는 공동경영주의 지위를 더 선호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여학생들은 후계여성농업인의 원활한 영농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 영농자금 확대 지원(53.2%), 영농 및 경영교육 강화(26.0%), 가사노동 및 육아 문제의해결(20.8%) 등을 들었다. 젊은 여성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한국농업대학 여학생들은 충분한 복지시설 확충(20.8%), 여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농외소득원 개발 및 창업 지원(20.8%),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24.7%) 등을 우선순위로 제시하였다. 한편, 중장년 여성농업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도시근로자에 상응한 농가소득 보장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두 설문조사 결과, 젊은 여성의 농촌 유입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영유아 보육시설, 교육기관, 의료시설 등의 복지시설 확충과 여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농외소득활동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들이 본인의 능력과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농외소득활동을 하면서 자녀보육 및 교육을 안심하고 할 수 있는 농촌이 조성될 때, 젊은 여성들이유입되고 후계여성농업인이 육성될 것이다. 농촌에 거주한다고 또는 농업인 남편과 결혼하였다고 하여 모든 여성이 농사를 짓는 것보다, 본인의 선호에 따라 직업 및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은 제3차 여성농어업인육성 5개년 기본계획에 포함된 여성농어업인 수요조사의 결과를 통해 성별 요구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여성농어어업인 수요조사는 여성농어업인 인 26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여성농어업인 대상 전화조사, E-mail 조사, 방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그 결과를 성별 요구도의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농어업인들의 정보화 능력에 대해 살펴보면, 인터넷이나 이메일, 커뮤니티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62.8%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정보화와 관련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을 한 여성농어업인이 19.9%임을 고려할 때 여성농어업인 내부의 정보격차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동수단의 경우, 여성농어업인들이 활동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인 차량 운전과 관련해서는 자가 운전 비율이 84.4%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여성 농어업인들의 농어촌 인식 및 대응욕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농어 업인들의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32.8%, 약간 나빠질 것이다는 의견이 21.8%, 매우 나빠질 것이다는 의견이 19.5% 순

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여성농어업인들이 농어업·농어촌 발전 전망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주계획 및 원하는 영농형태를 살펴보면, 여성농어업인들의 향후 농어촌 거주 계획에 대해서는 이동할 생각이 없다는 의견이 68.1%로 가장 높아 농어촌 정주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원하는 농업경영형태에 관해서는 농사+판매 및 가공형태가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사에만 전적으로 전념하겠다는 의견이 17.3%, 농사와 민박, 체험농원을 포함한 관광 사업을 하겠다는 의견은 16.5%순으로 나타났다. 농업 외 소득관련 정책 항목 중 참여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 2개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농산물가공판매를하고 싶다는 의견이 37.2%로 가장 많았고, 전자상거래 및 직거래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26.9%, 농촌체험마을 조성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17.4%로 나타났다.

분야별 정책중요도 인식을 살펴보면, 소득, 규모, 인력, 복지, 여성참여, 양성평등 6개항목에 대해 3점 척도로 정책 중요도를 측정한 결과 2.22부터 2.89까지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응답했다. 농어촌 복지향상이 평균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정책 참여 확대가 2.84, 전문 인력 양성교육이 2.82, 양성평등의식 확산이 2.77, 소득 향상부업확대가 2.76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업규모 확대에 대한 중요도는 모든 요인 들중 평균값이 2.2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2차 계획 기간에 실시된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만족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핵심과제에 대한 정책 만족도를 살펴보면, 2차 계획 기간 중 목표와 중요 정책 과제들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 파트너십 성취도가 평균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농기술 능력향상 3.44, 삶의 질 향상 3.3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농어업인의 정책참여, 여성농어업인 관련제도, 농업소득의 경우 3점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여성농어업인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사회보험 등 복지혜택과 각종 농업정책 수혜, 문화서비스 향유 항목은 척도 평균 이하로 나타나 이들 정책이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각종 농업 정책 수혜가 가장 미흡하다고 인식 하여 농업정책에 대한 여성농어업인들의 체감도가 낮은 수준이다.

3차년도 계획 목표 및 과제선정에 대한 욕구 측정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관련하여, 직업적 지위 인정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 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직업 인정 조건에 대해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응답자의 23.5%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76.5%가 모른다고 답하였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농어업인에 대한 규정에서 여성 농어업인들이 해당하는 분야를 살펴본 결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고

있다는 의견이 전체 5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다는 사람이 27.9%,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는 11.5%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가경영체 등록시 여성을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농어업인 스스로의 직업적 지위 인식을 살펴보면, 영농에 참여하는 여성농어업인의 합당한 지위에 대해서는 공동경영주라는 의견이 84.6%로 나타나 대부분의 여성들이영농 참여에 있어 공동경영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적 지위인정 방식과 관련하여, 농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사회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농산물 공동출하에 응답자의 95.%가 적합하다고 답했으며, 작목반, 영농법인 등에 부부공동 참여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95.4%, 농가경영체 등록 시 공동명의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92.7%, 여성명의의 농산물 판매 통장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92.4% 순으로 나타났다.

연금과 관련하여, 여성농어업인 본인 명의의 연금을 가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5%가 가입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53.5%로 나타나 가입하고 있는 여성보다 가입하고 있지 않은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명의의 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이유의 경우 돈이 없어서라는 의견이 43.8%로 가장 많았고, 가입할 필요가 없어서라는 의견이 23.4%, 남편이 가입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14.8%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여성농어업인의 노후생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조직참여정도를 살펴보면, 농촌마을개발 및 농촌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마을 운영위원'에 여성위원 20% 할당제에 대해 실제 시행 했을 때 참여 의사가 있는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86.2%가 참여하겠다고 대답했다. 반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경우 바빠서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47.8%로 가장 많았고 능력이 안돼서와 원치 않아서가 각각 26.1%로 나타났다. 생산조직 참여와 관련하여, 현재 참여하고 있는 생산자 조직에 대해 농수축협조합원이 50%로 참여도가 가장 높았고, 작목반이 34.6%, 농어업후계자는 32%, 영농조합은 28.2%가 참여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생산자 조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3%가 참여하고 싶으나 남편이 참여해서 참여하지 않는다에 가장 많은 답을 하였고, 참여할 조직이 없어서가 17.2%,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가 14.9%로 나타났다.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과 관련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농업 전문 인력화를 위한 본인의 능력개발 중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 1,2,3 순위를 종합하여 응 답률을 살펴보면, 농산물 판매 및 마케팅 능력이라는 의견이 23.9%로 가장 높았으며, 농 산물 가공기술 능력 17.3%, 홈페이지·카페 운영 등 정보화능력 16.4%, 농산물 재배기술 16.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실시되고 가공, 체험, 관광, 직거래 등의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 중 소득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해서 5점 척도로 측정을 한 결과 농산물가공판매가 4.57점으로 가장 놓았으며, 도-농직거래실시 4.44점, 전자상거래실시 4.3점, 농촌체험마을조성 3.61점, 농촌관광사업참여 3.54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식품을 판매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판매하고 있다는 사람은 28.0% 였으며, 판매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59.8%, 그리고 향후 참여의향이 있다는 사람은 12.1%로 나타났다. 또한 판매하고 있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종류가 무엇인가에 대해 물은 결과 음료(각종 즙이나 우유 등)가 27.4%로 가장 많았고, 농산물이 19.2% 그다음으로 나타났다. 판매방식은 직거래판매가 79.4%로 가장 많았고, 납품이 13.2% 전자상거래 7.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판매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은 결과,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의견이 25.5%로 가장 많았고, 방법을 모른다 24.8%, 바쁘다 17.4%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의견도 32.2%나 되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 리더 및 차세대 인력 육성과 관련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제약 원인을 물은 결과 지역사회의 남성주도성이 52.6%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들의 인식미비 31.6% 가족의 반대 10.7% 순으로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5.1%가 있었다.

여성농어업인의 맞춤형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먼저 도우미 활용에 대한 결과를 살펴 보면, 도우미 이용경험에 대한 질문에 없다라는 응답이 84.8%, 있다라는 응답이 14.0% 로 나타났고, 또한 도우미 제도를 모른다는 응답도 1.1%로 나타났다. 도우미를 이용한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도우미를 이용하였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출산도우미와 영농 도우미가 각각 47.2%, 가사도우미는 5.6%로 나타났다. 보육과 관련하여, 농어촌 지역 육 아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견해로는 농번기 요구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1.5%로 가 장 높았고, 보육 시설을 늘려야 한다가 26.8%로 그다음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이 없어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의견은 26.4%로 나타났다.

고령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다. 고령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마을기업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은 결과 필요하지만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46.4%로 가장 높았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45.7%로 나타났으며,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2.6%,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5.3% 있었다. 고령 여성농어업인이 가공, 농촌관광 등에 참여한다면 소득에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으로는 약간 기여를 할 것이라는 의견이 48.3%로 가장 높았으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의견이 36.2% 그 다음이었다. 이 결과로 미루어보아 소득 기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85%나 되었다. 반면에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10.9%,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4.5%가 있었

다.

여성농어업인 문화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년 중 시행한 문화활동에 대해 물은 결과 국내여행이 64.7%로 가장 높았고, 해외여행과 영화관람이 각각 40.6%로 나타났으며, 전시회나 연극관람 26.7%, 공연참여도 14.3%로 나타났다.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기초실태나 정책요구조사를 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연구소와 연구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8%에 이르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74%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여성농업인센터와 관련하여,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의 활동에 대해서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복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5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농어업인 취미활동 교육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가 26.1%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보육기능은 14.2%였다.

다음은 여성어업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먼저, 내외적 여건 및 여건 변화와 관련하여, 농어업의 소득증가 방법에 대해 농어촌 관광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52.5%로 과반수이상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농수산물 유통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73%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농수산물 가공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6%가 도움이된다고 답하여 여성어업인들은 농수산물 유통이 소득증가에 특히 도움이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인력화와 관련하여, 농업경영자나 농촌관광 및 체험 등 지역사회 사회 돌봄 서비스 담당자로서 여성어업인의 전문 인력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약 30% 이상이 전문성이 높다고 인식하였으나 농가공업 주체로서 전문 인력화가 잘되어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전체의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향후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어업 및 농어촌 변화를 이끌어갈 농가공 및 농촌관광 등에여성어업인에 대한 참여와 역할 증진에 관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어업인의 지위와 관련하여, 법제도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에 대해서 여성어업인의 지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여성어업인 관련 정책 홍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어업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중 연급 가입절차를 몰라서 가입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22.6%라는 점은 향후 여성 어업인의 연급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역개발 참여욕구와 관련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한다면 어떤 영역에 참여하길 원하는

가에 대해 복수응답을 한 결과 문화관광 영역은 응답자의 56.1%가 참여를 원한다고 응답했고 체험마을은 48.8%, 농수산물 가공판매는 응답자의 75.6%, 영어법인(회사법인)은 응답자의 26.8%가 참여하길 원하다고 답했다.

정책과제 우선순위 도출영역과 관련해서는 여성어업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6 개 항목을 제시하여 중요도를 측정한 결과 복지서비스 확대에 대해 전체응답자의 91.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복지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서비스 욕구로 응답자의 91.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소득향상은 86.8%, 의료서비스 향상은 86.1%, 학교유치는 60.6%, 공장유치는 53.1%로 여성어업인들은 농어촌 지역에서 여성어업인들의 삶의 풍요를 위한 조건으로 복지, 문화, 소득, 의료, 학교, 공장유치 순으로 응답하였다.

지난 5년간 실시된 몇몇 연구는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에 대한 설문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건, 복지 및 교육 정책 등에 대해여성 농어업인이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여성 농어업인이 느끼는 정책의 체감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이 중 성인지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정책 및 사업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농업주종사자 인구 중 53.3%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급격하게 노령화되는 농촌사회의 경제사회적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에 안주하던 과수 및 밭농사에서 활동영역을 확대하여 농산물 직거래와 같은 판매사업,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 도농교류 관련 사업 등 여성농업인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경영체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개인의 경제적 유익을 넘어서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지역사회에는 새로운 활력이 되며 여성농업인에게는 사회적 지위 향상의 기회를 제시한다. 최근에는 여성농업인이 이장이나 지역 리더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그에 대한평가도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들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농업종사현황의 경우, 농업과 관련된 사업에서 모든 여성농업인들이 농산물 및 가공식품류 판매와 유통사업을 희망 하고 있으며, 영농형태별로 농사의 절반정도를 담당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나, 채소 의 경우는 80%이상 담당하는 경우가 38.2%로 높았다.

아동양육 및 복지실태와 관련하여, 농촌지역내의 유아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여건으로는 저렴한 보육료, 교육프로그램, 집과의 거리, 시설·설비 등 환경, 교사의 자질, 특별활동 순이었으며, 농업에 종사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높은 교육비및 가까운 곳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다는 의견이 58.6%로 가장 높았다. 또한 정부 보육정책 중 가장 먼저 시정해야 할 정책으로는 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보

육료지원 대상범위 확대가 83.4%였고, 이용할 의향이 있는 보육유형은 방과 후 보육, 시간제 보육, 농번기 등 계절보육,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의 정책수요와 관련한 사항으로, 농번기에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사도우미 제도와 여성용 농기계 개발 및 저가임대를 원했고, 자녀보육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보육센터 및 방과 후 교실지원을 가장 원했다. 여성농업인의 농산물가공 및 농촌관광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49세까지는 창업 후 지속적인 기술·경영교육지원 및 창업뿐만 아니라 사업운영 자금지원을, 50세 이상에서는 일손부족 문제해결을 가장 희망했다.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활동 활성화 방안으로는 육체적으로 힘든 마을일을 도와줄 수 있는 인력고용지원을, 고령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수요방안으로는 농업인 연금지원 확대와 고령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촌형 일자리 창출을, 후계 여성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영농자금 지원을, 젊은 여성의 농촌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선결과제로는 49세 이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교육기관, 의료시설 등 복지시설 확충을, 50대는 여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농산업관련 농외소득원 개발 및 창업지원을, 60~64세는 도시근로자 소득에 상용한 농가소득보장을 선결과제로 선택하였다.

여성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 제정이 필요 함과 동시에, 둘째, 도우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여성 농업인이 출산 이외 의 질병, 상해(농작업관련)등으로 인해 장기간 농업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에 영농도 우미, 간병도우미, 가사도우미를,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이 전무한 농촌환경에 서 보육으로 인한 농업생산의 차질을 방지를 위해, 여성농업인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 육 시 영유아 보육인이 필요한 경우 보육도우미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우미 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여성농업인센터 확충이 필요한데, 국공립 보육시설 건립, 여성 농업인의 고충상담과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자녀 학습지도 등 통합적인 복지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센터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에는 여성농업인이 농업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반면 과 거에는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받기도 어려웠고, 남성들에 비해 농업정보에도 뒤떨어져 자신들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다. 이에 여성농업인들의 능력을 단기 간에 효율적으로 끌어올리고 여성농업인을 농업·농촌의 주요 인력이자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관차원의 종합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육성 지원센터는 창업을 비롯한 각종교육, 농업경영, 마케팅, 법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여성농업인들에게 농촌정착단계부터 종합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구심체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다섯째, 여성친화적인 농기계보조금지원 확대 및 공동구매 기회마련이다. 여 성농업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동절약형 자동화·로봇화 농기계 보 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농업인들이 농기계를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기 회를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교육 실시이다. 여성농업인들의 농기 계 사용을 확대시키기 위해 시·군 단위에서 영농교육을 실시할 때 현장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건강관리서비스 및 효율적인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이다. 여성농 업인을 위한 건강검진서비스를 확대하고 시·군 단위 보건소에 '여성건강클리닉'을 설치 하거나 읍면으로 찾아가서 골다공증이나 5대 암 조기검진의 의료순회서비스 실시가 필 요하다. 또한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농작업의 피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며 생활체육협의회나 대 학교의 체육학과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자원봉사차원의 매칭도 생각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여성농업인의 기여도 측정 및 보상체계 마련이다. 여성 농업인들이 농촌사회의 가부장적인 사고로 자산의 남성세습을 당연히 여기다가 오랜 기간 농사를 짓고도 자신의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 일본의 경우 '가족경영협정'을 통하여 근로조건, 이익분배 등에 대하여 부부간 협정을 맺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139농가가 체결하였다. 이러한 경영모델이 농촌에 정착되어진다면 노동부담 문제와 허무함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한다(최윤지 외 3, 농업인 부부의 노동시간 구조변화 : 1964~2005). 최근 도시에서 파급 되고 있는 부부재산공동명의제와 같은 형태로 농가에서도 부부가 공동명의 혹은 분할 형태로 보유하도록 성인지적 활동이 요구되며 각 세대의 농산물 출하 시 대금을 입출금 할 수 있는 출하통장을 여성농업인의 명의로 하는 것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아홉 째, 여성농업인단체 및 소규모 동아리 지원이다. 여성농민이 자발적 주체로서 활동 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 단체를 지원해야 한다. 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운영비의 지원이 필요하며, 문화적인 혜택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을 감안하다면, 농촌의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소규모 형태의 동아리 지원도 필요하다.

다음은 경기도 농업기반 여성일자리 활성화 방안 연구에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정책수요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먼저, 농촌여성 일자리 관련 현황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4명 이상은 농사이외의 일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사이외의 일에 종사해 얻는 월평균 소득은 경기지역의 경우 100만원 미만이 3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150만원 이상(26.7%), 50만원 미만(24.4%), 100-150만원 미만(11.1%)순으로 나타났다. 농사 이외의 다른 일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어느 정도인지 질문한 결과 '많다'는 응답이 64.0%로 '적다'는 응답(적은편임 33.7%, 매우 적은 2.3%)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취·창업 의향을 질문한 결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산물 및 가공식품류 판매 분야가 31.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농산물 가공분야와 자영업(각각22.8%), 시간제근무(18.7%), 농촌관광사업(18.5%), 일반직장취업(10.9%)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희망하는 교육(1순위)은 '작물재배 및 축산 등 농업생산기술'이 18.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농업유통, 판매, 마케팅 교육(16.7%), 컴퓨터 이용 농업정보 활용(14.4%), 농산물 가공기술(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농산물 자체를 생산하는 기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기는 하지만, 농산물 판매 및 가공기술 교육에 대한 요구도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성농업인을 위해 앞으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1순위 과제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농산물가공, 유통, 농촌관광 등으로 진출하도록 기술과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2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20.9%), 여성의 가중한 노동부담 경감과 여성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및 복지제도 확대 (각각 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참여희망 여부를 질문한 결과를 볼 때,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의향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기반 여성일자리 사례 및 심흥면접 결과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사업체 사례 분석 결과, 일자리의 규모나 연속성은 제품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과수 같은 경우 일자리가 일시적으로 창출되고 지속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업과 연계되지 않는 한 실제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농업기반 여성일자리 관련 심층면접 결과를 살펴보면, 심층면접을 통해 파악한 농촌여성의 일자리 창출 사업아이템 선정과 관련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하면, 우선 농촌지역에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을 한다면 무엇보다 '기계화'가 되지 않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사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 그 원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향후 발생가능한 대기업과의 경쟁에서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농촌지역에서 단기간에 농업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상품화가 가능한 아이템을 선정하고, 사업을 시작해서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농촌자원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기획'이 필요한데 이러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에 익숙한 여성인력이 농촌지역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성농업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 먼저, 농촌여성 창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농촌지역은 도시와 매우 다른 사업 환경에 놓여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창업컨설팅이 필요하다. 또한, 농촌여성의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여성 창업이 지역여성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업 활성화는 필수적이다. 더불어, 사회적 기업 형태의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농촌여성'이 될 때 의미가 크다. 따라서 농촌여성 인적자원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훈련과정을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농촌여성 관련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촌여성의 인적특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지원방안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정책지원 사업선정 방법이 필요하다.

최근 한 여성농업인단체에서 정부에 요청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법적·사회적 지위 확보를 통한 농업인으로서의 권리 보장
-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 보상과 농가 및 국가경제 소득 기여에 대한 인정 방안 마련
  - O 「공동농업경영주」로서 권리 보장
- 중앙 및 지방정부 내에 여성농업인정책 추진 전담 부서 및 정책 개발과 연구 기 능 확보
  - O 여성농업인육성지원 조례 제정 확대
  - O '여성조합원 가입 확대를 위한 40% 할당제' 시행
  - 2. 여성농업인 전문 인력화를 위한 종합시스템 마련
- 「여성농업인육성재단(가칭, 이하 재단)」등 민간 차원의 여성농업인 총괄육성기 구 신설
  - 재단 내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을 위한 다양한 하부기능 부여
  - O 안정적인 사업기반 마련을 위한 「여성농업인발전기금」마련
  - O 여성농어업인의 날 제정
  -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언론 및 홍보 활동 지원

- O '여성농업인용 농기계 지원 종합정책' 개발·추진
- 3. 여성농업인 창업 지원을 위한 대책 수립
- 여성농업인의 종합적인 창업 지원을 위한 '농촌형 가공·창업지원 특별법(가칭)' 마련·시행
  - O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확대와 자금 지원 현실화
  - O 여성농업인 직거래장터 (women farmer's market) 설치 지원
  - 4. 여성농업인 복지정책 및 농촌형 종합복지정책 수립
  - O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대한 여성농업인 지원 확대
  - O '도우미 쿠폰제' 도입
  - O 여성농업인대상 건강검진 항목 및 지원 확대
  - 여성 농민 질병의 공공의료 질 개선과 접근권 보장
  - O 「농촌 산후조리센터」설치 및 운영 지원
  - O 여성농업인 자기학습 지원
  - O 여성농업인센터사업 중앙사업 환원 조치 시행
  - O 이주여성농업인 정착 지원
  - O 「농산어촌 교육특별법」 제정·실시
  - O 각 읍·면별 1개소 '농촌종합문화복지센터'설치 및 운영 지원
  - O '노인부양수당' 지원
  - 5. 여성농업인 정책 인프라 확보
- 지자체-농협-유관기관-지방연구원 등 여성농업인육성 위한 유관기관 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성
  - O 여성농업인을 측면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 pool 양성
  - 6. 국민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농축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
  - O 식품산업 업무의 농림부 일원화

- '지적재산권·생산이력제·향토지적재산권', FTA 대비 강력 보호
- O '지역공공급식' 시스템 개발 및 추진
- 자가 채종 제한하는 종자산업법 시행령 개정
- 토종씨앗 보존 육성 제도 마련
- O 올바른 식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원산지표시제와 생산이력제를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시 처벌 강화
- O 수입농축산물에 대한 검사 및 검역체계 강화
- O GMO 관련 법률 정비와 관리체계 강화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급속한 농어촌 고령화 진행에 따른 영세·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여성 1인 노인가구에 대한 고려로써 농어촌 여성의 연금 가입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노령화되어 있는 자급농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의 주체로서 종합적 역량 강화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정보화 역량을 중점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농외 소득원의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넷째, 여성농업인 복지·문화정책 수립을 위해 건강, 보육 등 돌봄노동, 문화향수 등다양한 방면으로의 방안을 마련한다.

다섯째,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환경·경관관리를 포함하여 복지, 주택, 환경 및 산업정책을 포괄하는 종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여섯째, 다문화 가족과 여성 결혼이민자의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

#### 2. 면접 결과 분석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및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면접을 통해 성별 요구도를 파악하는 시도를 하였다. 농ㆍ어업인에 대한 면접은 7월 16일 - 12월 15일 사이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농ㆍ어업인에 대한 면접은 개별 면접 뿐만 아니라 집단 면접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집단 면접은 전남 나주군, 충남 괴산군, 경기도 파주군 등에서 이루어졌으며, 개별 면접은 연구원에 의한 면접과 더불어 설문조사 기간 동안 훈련된 조사원에 의한 구조화된 면접 질문을 활용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적으로 농업인으로 정의하는 데 세 가지 기준을 사용한다: 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②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사람; ③ 농어업 관련 식품과 생산품을 거래한 비용으로 1년에 200만원 이상을 버는 사람 현실적으로 여성농업인 중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200만원 이상을 벌어 본인 이름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가 미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성농업인을 정의하는 기준은 ①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인구" 중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중 65% 이상의 여성이 60세 이상의 고령 여성농어업인이다. 이는 현재 농촌의 여성인력이 고령여성에 의존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농촌의 여성인력 구조가 약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20-40대의 젊은 여성 농어업인이 농촌에 남을 수 있도록 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 증진 분야와 관련하여, 여성들에게 심각한 '농부증'을 치료하기 위한 한방 치료에 대한 요구가 높다. 즉 침술과 한약 등을 통해 몸의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하며 보건소와 병원의 거리가 멀어 찾을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건강검진의 경우 의료보험을 통해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다문화 여성에게는 이것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현재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농업소득 (농업판매 매출액)이 연간 3000만원 이상인 농촌가구는 전체 13%이다. 87%는 연간 3000만원 이하를 벌고 이 중 많은 부분은 경영비로 지출되기때문에 연간 3000만원 이하를 버는 농가는 절대빈곤층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따라서 현재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생산소득과 생산 외 소득 증가를 이룰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령농업인들을 위해서는 불안한노후를 보장해줄 수 있는 연금문제가 중요하다. 최소한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해줄 수 있는 수준의 연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과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의 수준의 향상이 여성 농어업인, 그 중에서도 특히 20-40대의 여성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다. 농사와 가사일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 농어업인의 특성 상 자녀를 직접 보육하며 양질의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2008년에 실시된 여성 농어업인 실태조사에서도 여성 농어업인이 농촌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로 자녀교육을 꼽았다 (첫 번째 이유는 소득불안정). 따라서 농사일을 하는 동안 아이들을 맡아서 키워줄 수 있는 보육시설과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것이 많은 여성 농어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예산과 다양한 과제를 통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성 농어업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효과는 노력에 비해 크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적인 문제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면과 리 단위의 지역에 제대로 된 보육시설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읍 수준에는 보육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여성 농어업인들의 보육에도움을 주고 있으나 면과 리에는 필요한 시설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면과 리 수준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할만한 나이의 어린이가 한 지역에 1-2명으로 시설을 마련하기에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예산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1-2명의 어린이를 보육하기 위해 면과 리 단위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가 제시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대안으로는 면 단위 수준에서 운영 중인 여성 농업인 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여러 가지 교육과 여성 농업인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센터에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읍과 리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도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안은 현재 여성 농업인센터의 운영이지자체로 이양되면서센터의 기능이 확대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한 두 번째 대안으로는 각 가정으로 찾아가는 보육 돌보미서비스를 면과리의 가정에 제공하는 것이다. 즉 가정보육도우미가 지역의 가정으로 찾아가 주변에 거주하는 몇 명의 아이들을 공동으로 돌보는 방식이다. 이는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농촌의 작은 마을에서 활동한 보육도우미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방과 후 교육도 현재 시행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여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30-40대의 젊은 여성들이 자녀 교육문제로 갈등하다 농촌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해야 한다. 또한 귀촌·귀농을 고려하는 가정에게도 농촌의 학교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인센티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활동 다각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소득은 평균 3000만원 수준으로 도시 평균 소득의 80% 수준이다. 또한 양극화가 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몇몇 고소득 농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연간 1000만원 정도를 버는 영세소농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같은 현실에서 많은 여성 농어업인들은 농업으로 얻는 소득 이외에 농사 외 활동을 통해 소득을 증가시키기를 원한다. 딸기를 제배해서 딸기잼을 만들어 팔거나 가정에서 만들어 먹던 전통식품을 상업화하는 것이 이러한 예이다. 그러나 이처럼 소규모 창업 형태의 식품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의 규제에 따라야 하고 이에 맞는 시설도 구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 뿐만 아니라 법적지식과 시설 설치와 이용에 대한지식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여성 농어업인들이 이러한 지식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창업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다. 특히 소규모라 할지라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모든 요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업 전반에 대한 교육과 함께 마케팅과 판매, 판로 개척, 시설 및 기계 이용 등의 세부적이고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원스탑 서비스를 통해제공되어 여성 농업인들이 쉽게 찾아가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농업관련 기술과 필요를 채워주고 있으나 이는 남성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여성 농업인이 방문하고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성 농업인을 위해 특화된 창업 교육이 부족한 문제 또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활동 분야 중 농촌 체험 및 관광 사업은 여성이 농외 활동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야이다. 현재 많은 여성들이 숙박, 민박 체험 등의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지역의 여성 사무장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관리 교육, 리더십 교육 등이 요구된다.

한 전문가는 여성에게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여성 농업인들, 특히 30-40대의 여성들은 가사와 농사일로 교육에 참여할만한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다. 또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이 멀어 거리접근성도 떨어지고, 특별히 높은 교육열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 너무 먼 곳이나 1 박 2일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리 필요한 교육이라고 해도 참여하 기가 어렵다. 실제로 여성들이 관광대학이나 환경대학 등에 참여하기 위해 새 벽에 일어나 먼 곳까지 이동하여 참여하기도 하는데 정말 많은 희생과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1가구 1인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경우는 남편이 참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여성이 이러한 교육에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농촌에서는 '현장 밀착형'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큰 효 과를 거두기 어렵다. 즉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각 지역의 특성화에 맞추어 필요 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센터를 두고 그곳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요구에 대한 맞춤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통해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설비나 교육을 마련하여 마을 전체적으로 제공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배즙을 내어 파는 경우에 한 가정이 가공, 판로개척, 마케팅, 판매를 모두 하기 위해 마케팅과 판매 교육을 받는 등의 노력을 하는 대신 주변에서 배즙을 판매하는 모든 농가를 위해 그 지역 자체에 가공시설을 마련하고 판매와 마케팅을 모두 관리해주는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운영하여 생 산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 교육 도우미가 필요하다. 미작이나 과일의 경우 농한기와 농번기가 뚜렷한 편이기 때문에 교육 참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축산이나 화 훼, 친환경 사업의 경우 일을 미루고 교육에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기간 동안 농사를 대신해줄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하다.

또한 계속적으로 교육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만이 중복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관리가 절실하다.

문화·여가 분야와 관련하여, 젊은 층에서는 문화와 여가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은 편이다.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영화관이나 공연관을 찾기 위해서는 먼 거리를이동해야 하는데 가사와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는 그럴만한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는 것이 문제로 여겨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 수준에 설치되어 있는마을회관이나 면 단위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 등을 확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필요가 있다.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바우처 등을 제공하고 이를 원하는 문화·여가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른 전문가는 문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연령별로 요구도가 매우 다르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전통문화의 복원은 원하지 않고 있으며 극장이나 공연시설의 부족을 문제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군 단위에는 극장이 없고 있더라도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는 다목적 문화센터를 마련하여 이 곳에서 영화도 상영하고 공연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있는 시민문화센터를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역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특히 도농교류 관련 사업에서 여성의 역할이 필요하다. 여성 특유의 따뜻함과 부드러운 리더십 등을 통해 귀농가정들과의 융화를 위해 참여할 수있는 영역이 많이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자질 이외에 부족한 점을 보강해줄 수 있는 리더십 교육, 경영·관리 교육 등을 통해 여성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귀농을 통해 새로 농촌에 편입된 귀농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 면에서의 지원이 요구된다. 첫 번째는 기존의 마을 주민과 융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의 정착을 도와야 한다. 두 번째는 실제로 거주하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술 분야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여성 농업인이 밭농사와 화훼 등에 종사하기때문에 관련 기술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여성을 위해 특화된 여성친화적 기술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기계 또한 사용하기 쉽고 작은 농기계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져서 여성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 대상 면접에 더하여, 여성농어업인인 단체의 리더와의 면접 결과를 통해 성별

요구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 여성농업인단체의 리더는 다음과 같이 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농가인구나 농업주종사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53.3%로 증가하고 여성농업인의 경제 사회적 활동 범위의 확대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농산물 직거래와 같은 판매사업,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소비자와 도농교류에서 여성농업인이 적극 참여하여 활동하는 경영체는 경제적 성과와 교류의지속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오늘날 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의 주역일 분만 아니라 향토식품의 기능보유자로서 1 차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생산자이다.

장류나 농식품 가공, 생산 및 유통에 참여하는 여성대표들은 매출확대보다 규모는 작지만 내실 있는 경영을 하고, 체험교육이나 블로그를 통해 생산과정을 공개하는 등 소비자와 끊임없이 소통·교류하며, 대부분 자녀를 후계자로 확보하여 가족농 기업으로서의 육성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여성농업인이 이장이나 지역 리더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꼼꼼한 업무처리로 마을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투명한 사무관리나 적극적인 사업 유치로 마을반전기금을 조성하여 마을의 분위기가 바뀌는 곳이 늘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활동에 지원이 필요하다. 농촌사회는 여전히 남성에게 책임과 권한을 집중하여 여성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특히 농촌 사회에서 여성 농업인의 낮은 지위는 청장년층 여성의 농촌 정주를 기피하게 만들어 농촌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성농업인이 경영자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실제 사업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적인 각종 교육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한 여성 농업인은 여성농업인의 전문경영 능력과 농어촌 마을 리더 역할 향상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다차원화 되어가는 농어업산업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여성농업인의 다양한 역량 개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이 필요며, 앞으로 여성농업인들이 지역개발이나 농어촌의 사회 서비스 제공자로 농어촌을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을 잘해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여성농업인단체 리더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시책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여성

농업인의 법적·사회적 지위확보를 통한 농업인 권리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이 무보수 가족 종사자로 간주되면서 각종 정책 대상자 선정이나 정책 자금 대출에 있어 제한을 받고 있고 농업 종사 경력도 인정받지 못한다. 특히 각종 재해 발생 시 명확한 직업적 지위가 없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각종 사회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어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이 취약하다.

프랑스에서는 여성농업인을 농업임금근로자나 농업경영주 또는 공동 농업경영주로 세분화해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달리한다. 일본 역시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해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해 농업인연금, 농업개량자금 등의 제도를 통해 지원한다. 이에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해 '공동농업 경영주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여성농업인은 공동 경영주로 인정받아 각종 정책 대상에 포함되어 농업인으로서 자격을 얻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녀는 이어, 여성농업인을 위한 '여성농업인 복지정책' 수립을 강조하고 있다. 직업 인으로서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은 여성농업인의 생애주기와 도농공 간 격차를 해소 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정책을 개발하여 여성 농업인의 농업·농촌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 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후계 여성농업인 인력 육성에 관심 기울여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농어촌은 결혼이민여성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들을 신규 농어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우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이후에는 후계 농업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단계별 교육이 필요하다.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역·기초지방자치 단체의 여성농업인 전담조직 및 인력확보가 시급한 실정이고, 지자체·농협·유관기관·지 방연구원 등 여성농업인육성을 위한 유관기관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 여 성농업인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역할과 자원을 분담하기 위해 유기적 협의체를 구성 하여 여성농업인 특성에 맞는 사업, 교육, 육성방안, 지원 등을 발굴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3. 요약 및 시사점

지금까지 이 장에서는 다양한 문헌과 전문가 및 농ㆍ어업인 면접, 그리고

농·어업인 설문조사를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성별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분석 결과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의 분야와 사업에 따른 성별 요구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 • 복지 증진 분야이다. 농어업인 생활안정 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안 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가 필요한데, 특히, 농어업인 연금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후계 여성농업인을 위한 영농자금 지원과 농부증 치료를 위한 한방치료 지원도 필요하다.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건강관리서비스 및 효율적인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농어촌 취약계층 복지 지원 사 업과 관련하여, 고령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촌형 일자리 창출, 여성 1인 노인가구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영세·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 대책 마련, 농번기 인력고용지 원, 노령화되어 있는 자급농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 다. 또한, 여성 농업인을 위한 건강 관련 복지정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여 성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에 요구가 높다. 여성 농업인을 위한 보육 관련 복지정책 수립과 관련해서는 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보육료지원 대상범위 확대, 면단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보육도우미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 나아 가, 문화 가족과 여성 결혼이민자의 정착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확충 및 활용, 농번 기 시 가사도우미 제도, 다문화 여성에게 건강검진 홍보도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분야 사업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농어촌 특 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사업에서는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확충, 초등학생 교육 수준의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활동 다각화 분야 사업별 요구도 분석 결과는 매우 다양하다. 먼저, 농어촌산업 고도화 사업과 관련하여, 여성농업인 교육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성 농업인을 위한 특화된 창업 교육 등 여성농업인의 창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사업의 활성화, 부부공동 영농교육, 마케팅·브랜드·정보화·관리·리더십(토론 및 회의기법 등 포함) 교육 등 여성농업인 경영 능력 향상 지원, 여성농업인의 경영교육을 위한 통합 교육기관 설치, 지속적인 기술 교육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법적 지식과 시설 설치 이용에 대한 창업교육을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제공, 창업

후 지속적인 기술 및 경영교육지원 및 창업뿐만 아니라 사업운영 자금지원, 농산물가공, 유통, 농촌관광 등으로 진출하도록 기술 및 자금을 지원,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센터 설립 등이 필요하다. 더불어, 농외 소득원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요구가강한데, 구체적으로, 지속적인 기술 및 경영교육, 일손 부족 문제 해결, 운영자금 지원, 고령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촌형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관리와 교육기간 동안 농사 도우미 제공도 중요하다.

문화·여가 여건 개선 분야 사업별 요구도 분석 결과, 여성농업인을 위한 문화 정책 수립, 여성농업인단체 및 소규모 동아리 지원, 여성농업인 센터의 확대 및 적극 적 활용, 문화바우처 제공, 다목적 문화센터 마련 혹은 현재 시민문화센터를 다목적 으로 활용 등이 필요하다.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분야 사업별 요구도 분석 결과 환경·경관관리를 포함하여 복지, 주택, 환경 및 산업정책을 포괄하는 종합정책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지역역량 강화 분야 사업별 요구도 분석 결과, 여성의 지역사회활동이 우수한 마을 우대, 리더십 교육, 경영·관리 교육 등을 통해 여성 인력을 육성, 귀농여성농업인에 대한 마을 주민과의 융화를 통한 정착 기회 제공, 귀농여성농업인에게 기술 분야에서의 여성친화적인 교육 제공, 여성용 농기계 개발 및 저가임대(보조금 지원 및 공동구매 기회마련),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교육 실시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제 6 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 1.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과제
- 2. 대상 사업별 성별영향분석평가

### 제 6 장 농 ·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 1.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과제

제6장에서는 2011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추진 실적 | 에 포함된 118개 사업과제 가운데 시행계획 내용과 집행과정 면에서 성별격 차를 심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10개의 사업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실시하였다. 사업과제의 목표와 추진근거 및 사업대상을 살펴보고 사업 내용을 성별요구도와 성별형평성 면에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향 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행되는 사업이 사업관련 제도와 예산배분 면에 서 보다 양성친화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 2. 대상 사업별 성별영향분석평가

#### 1) 보건 · 복지 증진: 농어촌 취약계층 복지 지원

보건·복지 증진 분야의 세부사업 중 하나인 농어촌 취약계층 복지 지원 사업을 위해 총 15가지 사업과제가 진행되었다. 이 중 농지담보 노후 연금제도 지원과 취약농 가 인력지원 사업과제는 여성 농어업인들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위해 요구되는 사 업과제이다. 농지담보 노후 연금제도의 경우 노령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함 으로써 효과적인 노후대책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취약 농가 인력지원 사업은 취약농 가에 대해 영농도우미와 가사도우미 등의 인력을 지원하여 질병이나 사고 등의 문제 로 인해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사업과제이다.

그러나 사업과제의 시행계획과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제도 면에서 여성 농업인들에 게 차별적인 면이 존재하며 해당 과제를 통한 혜택이 절실한 여성 농업인들은 수혜대 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농지담보 노후 연금제도 지원 (과제번호 1-3-2-1)

#### 가. 개요

#### 가) 사업목적

본 사업은 농어촌 고령농업인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즉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수산식품 부 농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시행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이다.

#### 나) 추진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기금관리법 제 10조. 제 24조의 5가 추진근거가 된다.

#### 다) 사업대상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중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 나.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 가) 성별요구도

농촌 지역이 노령화되어 가면서 고령농업인들의 안정된 노후가 농촌 전체의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길기 때문에 이들 고령여성농업인에 대한 보건·복지 제도가 요구된다. 현재 고령농업인을 위한 복지제도는 농지연금과 경영이양직불제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제도 모두 자기 소유의 농지가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여성농업인은 가사, 육아, 농사에 모두 참여하면서도 농업의 부수적인 인력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를 위해 경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고령여성농업인을 위한 연금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 나) 성별형평성

'농촌형 역모기지론'인 농지연금은 농촌의 고령농업인들에게 연금을 제공하는 동시에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 혹은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인의 노후대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성별형평성의 관점에서 제도 자체에서 여성농업인들의 수혜 를 제한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존재한다. 먼저 대부분의 농지 소유자가 남성인 농촌의 현실에서 농지연금은 여성농업인들의 노후보장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 대 다수의 가구에서 농지의 소유자가 남성이고 따라서 농지연금의 수혜자도 남성인 경 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여성이 연금액을 수령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 다. 가입자 생존 시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은 가입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가입 시에 발생하는 계약과 조건에도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요소들이 있다. 먼저 농지연금 가입 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는 조항은 재산을 형성하는 과 정에서 발생한 여성 배우자의 역할을 간과한 것으로 여겨진다. 농지연금 제도가 부 부보장을 위한 제도로 만들어졌다고 하면서도 배우자의 동의 없이 농지연금에 가입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배우자는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된다. 즉 여성 은 농지를 담보로 연금 수령을 하기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적 소유권자인 남성이 재산에 대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입요건에 명시한 '영 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이라는 조건도 여성의 경우 실질적으로 농업활동을 하고 있 으나 농업인으로 증명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농지 연금 가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 10.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 농지연금 신청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는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서 □ 신청자 명의의 총 소유농지 면적이 3만m² 이하이어야 합니다.

### 다) 성평등을 위한 개선방향

따라서 대부분의 농지 소유자가 남성인 현실에서 농지담보 노후 연금제도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있는 대부분의 농촌여성의 경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여성의 독립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농지 획득에 기여한 바가클 때에는 공동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거나 '가정경영협약서' 등을 통해 여성도 농지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즉 부부간에

「농지연금 바로 알기 (Q&A)」 2010.9.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췌

계약을 통해 연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재산권과 독립성을 보호하고 노 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 취약농가 인력지원 (과제번호 1-3-5-1)

가. 개요

#### 가) 사업목적

본 사업은 취약농가의 기초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최소한의 사회보장 의 성격과 비슷하다. 구체적으로 사고·질병 및 취약농가에 영농 및 가사도우미를 지 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과 취약농가 기초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 사회과에서 담당하며 사업의 시행주체는 농협중앙 회이다.

#### 나) 추진근거

사업의 추진 근거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39조가 되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12조. 제 15조를 근간으로 하다.

### 다) 사업대상

영농도우미의 경우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75세 이하의 농업인 사업대 상이며, 가사도우미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 다문화가정, 조손가 구, 장애인 가구 등을 지원한다.

### 나.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 가) 성별요구도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존의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에서 여성 농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농번기와 경제 활동 시 필요한 인력의 지원이었다(전문가 면접 결과 pp.138-144). 가사와 육아, 농사를 모두 병행해야 하는 농어촌 여성의 현실에서 농번기나 사고·질병이 발생한 경우 일을 대신해 줄 도우미 인력이 요구된다. 또한 농업 및 농업관련 사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가사와 농사를 대신해줄 대체 인력이 반드시 요구된다. 따라서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 나) 성별형평성

영농도우미와 가사도우미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지원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내용과 조건을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여성농어업인이 사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조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영농도우미의 경우 사업 지원대상이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75세 이하의 농업인이며 이 때 사고는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은 5일 이상 입원한 경우로 병·의원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도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을 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영농도우미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우 심각한 사고·질병이 아닌 상황에서 농번기에 영농도우미를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도우미의 경우 사업 지원대상은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 국민기 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과 동거하는 부부가구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가사도우미는 농번기와 교육을 위해 가사도우미가 필요한 30대-50대의 여성 농어업인은 활용할 수 없다. 이는 30대-50대의 젊은 여성농어업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농업교육, 사업체 운영, 창업 등에 대한 교육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의 농업지식, 창업기회 등의 차이로 이어져사회·경제적 능력의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영농도우미의 경우 연간 10일 이내, 가사도우미의 경우 연간 12일 이내로 수혜기 간이 매우 짧다는 사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영농도우미의 경우 농업인인 본인과 배우자의 사고·질병인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고, 부부가 동시에 사고를 당하거나 질 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여전히 연간 10일까지만 지원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녀가 아프거나 돌보아야 할 부모가 있는 경우 혹은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사고·질병의 경우 이 제도가 여성농어업인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매우 미비하다. 가사도우미의 경우에도 연간 12일 이내로 초·중·고급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나 대학/대학원 교육 등을 받기 위해 사용하기에는 기간이 매우 짧아 많은 여성농어업인의 기회를 제한하 게 된다.

가사도우미의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부부중심의 가구에 대해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과 동거하는 부부가구가 주요 수 혜대상인데 이 때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령여성농업인. 미혼모 가정 등이 차별적 으로 배제될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영농도우미와 가사도우미는 도우미의 임금에 있어서도 남녀 차별적인 면이 드러나는데 영농도우미의 경우 일당이 52,000원인 반면, 가사도우미는 10,000원 (활동비)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가사도우미는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활동비 만을 지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전통적으로 가사노동에 대해 정당한 급여 를 지급하지 않는 문화가 제도로 이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영농도우미의 경우 남성·여성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나 가사도우미는 대부분 여성의 참여가 많은 직업 군으로 남녀 간의 임금 차이가 제도로 굳어질 우려가 있다.

### 취약농가 인력지원

-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대상
- 영농도우미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75세 이하(1936.1.1 이후 출생 자)의 농업인
- \* 농업인: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①항 제1.2.3호에 해당하고 농가의 농지소유규모가 5ha 미만인 자

- -사고는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은 5일이상 입원한 경우로 병의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입 원을 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가사도우미
-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 손(祖孫)가구 및 장애인과 동거하는 부부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 \* 지원대상자의 영농활동과는 관련 없으며 실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 지원
- 2. 지원금액 및 조건
- 영농도우미: 국고 70%(최대 36,4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
- 목적: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의 임금으로 1일 52,000원 이내에서 지역농협이 정하는 금액
- 지원일수: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 \* 입원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10일 이상) 10일 지원, (5~9일) 5일 지원, (5일이상 재입원시) 5일 지원(단, 연간 10일 초과 불가)
- \* 부부가 동시에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발생시에도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명 기준으로 하여 연간 10일까지만 지원
- 영농도우미 임금이 52,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국고에서는 36,400원만 지원 (차액 자부담), 52,000원/일 미만인 경우는 국고에서 70% 지원(자부담 30%)
- 가사도우미: 국고 70%(7,000원/회), 농협부담 30%(3,000원/회)
- 목적: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가사도우미(자원봉사자)의 활동비용으로 1인당 10.000원을 지급
- 지원일수: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
- 가사도우미(자원봉사자)는 가구당 1회에 1명이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해당 가구의 특성·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1명이상 파견할 수 있음. 가사도우미를 1인이상 파견한 대에는 농협·이장·인근 주민의 확인을 거쳐 다수인 파견사우서<서식 4>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
- \* 농어촌 주민 복지증진 차원에서 경로당 시범 지원(농협에서 별도 계획 수립)
- \* 서식 4는 농협중앙회에서 전 지역 농협으로 별도 배부

- 3. 도우미 신청 절차
- 영농도우미
-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가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서식 1>에 증빙서 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
- \* 전화신청 시는 농협담당자가 이용신청서를 작성·접수하고 증빙서류 추후 확보
- 신청 기간
- 입원시: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30일(가료 기간)이내
- 진단시: 진단기간 내
- \* 가료기간 및 진단기간이 도과한 경우 신청시점 의사소견서로 영농활동 가능여부 파다
- \* 동일한(사고·질병) 사유로 인한 영농도우미 지원은 1회만 가능(통산)
- \* 가사일이나 농장의 허드렛일 처리를 위해 영농도우미를 파견할 수 없음
- 가사도우미
- 지역농협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연초(1/4분기 중) 관내 취약농가에 대해 일 제조사를 실시하고 가사도우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는 지역농협 사업 담당자가 「가사도우미 이용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직접 신청·접수하며.
- 일제조사시 누락되었거나 연도 중 가사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가구가 직접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ㆍ접수

### 도우미 신청 제외 대상

- 영농도우미
- 당해연도에 영농도우미를 이미 지원 받은 가구(상이한 사유라도 미지원)
- ㆍ 당해연도에 가사도우미 지원을 받은 가구(다문화 가족은 모두 지원가능)
- 농업인(영농에 종사하는 배우자 등 포함)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 가사도우미
- 당해 연도에 가사도우미를 이미 지원 받은 가구
- · 당해연도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은 가구(다문화 가족은 모두 지원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혜자, 노인돌보미 서비스 수혜자, 가사간병 도우미

및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수혜자,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지원, 수혜자 등 중앙정부 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 65세이상 단독가구는 복지부 서비스 이용토록 안내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시행지침」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에서 발췌

### 다) 성평등을 위한 개선방향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사업 대상자와 지원 조건 면에서 성별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소들이 발견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신청자격조건을 완화하여 좀 더 많은 사람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농업인 당사자와 배우자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와 노부모 등이 사고·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제도를 현실화하고 여성농업인들의 노동을 줄여주어야 한다. 또한 여성농업인 당사자도 단순부상과 질병 여부에 관계없이 2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사도우미의 경우도 사업 지원대상에 농업교육을 받는 20-50대의 여성을 포함시켜 여성들이 가사 부담을 덜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많은 지역역량 활성화 사업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지원대상 외에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령여성농업인과 미혼모 가정에도 가사도우미를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사도우미의 일당을 현실화하여 현재 10,000원의 활동비에서 영농도 우미 일당인 52,000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가사도우미와 영농도우미에 대한 일당을 현실화 할 때 이는 농촌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 도 존재한다.

#### 2)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분야의 세부사업 중 하나인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운영 사업을 위해 총 5가지 사업과제가 진행되었다. 이 중 대표적으로 한국농수산대학 개 편ㆍ운영 사업과제는 농어촌 발전을 선도할 후계농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과제이다. 전문적인 농어업인을 양성함으로써 부가가치가 있는 농어업 활동을 개 발하고 지역의 리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국농수산대학의 설립목표이다. 그러나 하국 농수산대학교 입학 및 졸업생과 예산배분을 분석한 결과 많은 여학생이 교육의 혜택 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졸업 이후 농어업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한국농수산대학 개편·운영 (과제번호 2-1-5-2)

가. 개요

### 가). 사업목적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운영은 농어업, 농어촌 발전을 위한 후계농업인력을 양성 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농어업인구의 급감과 고령화, 농수산시장 개방 확대 등 여 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우리 농어업 농어촌의 발전을 이끌어갈 후계농어업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농어업 화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학 제개편을 진행하고, 국내·외 장기현장 실습교육 내실화 등으로 우수한 농어업인력을 양성하고 졸업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이 성공적으로 영농에 정착하도록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담당 및 시행을 맡고 있다.

### 나) 추진근거

사업의 추진근거는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및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이 된다.

#### 다) 정책대상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 나.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 가) 성별요구도

농어촌의 여성인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여성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여성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농어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농수산대학은 정부의 지원 하에 농어촌 분야의 경제·사회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해당 분야의 대학 교육은졸업 후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농어업 전문인력 및 지역 리더와 사업가로서의 성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 나) 성별형평성

1997년 개교한 한국농수산대학은 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대학으로 한해 330명의 입학생을 뽑으며 이 중 70%를 수시에서 충원하고, 나머지 30%를 정시에서 모집하고 있다. 학비는 전액 면제이며, 2010년까지 졸업생 2291명을 배출했으며 이 가운데 자가 영농을 하는 1260명의 지난해 연평균 소득은 6516만원으로 신세대 엘리트 농사꾼을 양성하고 있다. 학생의 80% 정도가 대를 이어 농사를 지으려는 영농 후계자"이며 따라서 가장 중요한 선발 기준은 영농정착의지이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지원자 본인 또는 직계존속(외족제외)의 영농·영어 기반에 대해 규모에 따라점수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사용하였으며, 영농기반의 경우 농지(소유 및 임차), 가축, 임야, 영농시설, 목초지,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농지를, 영어기반은 양식장,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한 어장, 선박, 염전의 규모를 고려하여 선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발조건은 토지 및 영농·영어기반을 보유한 특정계층만을 선 발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고 특히 농촌의 젊은 여성 인적자원의 희소 성을 감안하여 부모가 소유한 농지가 없더라도 입학이 가능한 특례입학 제도 실시하 게 되었다. 특례제도를 통해 여학생을 유치한 결과 전체 여성 합격률을 12-13%에서 20%까지 끌어올린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농수산대학에서 양성된 예비여성 농업인을 위한 특화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장 적응을 하지 못하고 영농현장 을 이탈해 당초의 교육 목적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졸업 후 영농유예자는 약 10.6%로 10명중 1명은 영농을 유예하거나 포기해 학자금을 상환하 였는데 여성 졸업생의 경우는 비율이 더 높아 2011년까지 여학생졸업생 총 267명 중 14%가 영농을 유예하였다. 또한 이행기간 만료까지 포함할 때 영농현장에 있지 않 은 여성졸업생 비율은 약 50%정도로 추정되어 여성 졸업생이 다른 업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성 평등 효과분석>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전체	여성(비율)	남성(비율)
	세출예산현액	7,623	839	784
0013	사업대상자	571,357(100)	270,688(47.4)	300,669(52.6)
08년	지출액	7,494	824	6,670
	수혜자	843(100)	124(14.7)	71(85.3)
	세출예산현액	7,954	875	7,079
0013	사업대상자	581,921(100)	274,223(47.1)	307,698(52.9)
09년	지출액	7,835	862	6,973
	수혜자	925(100)	131(12.2)	794(85.8)
	세출예산현액	13,638	2,046	11,592
l 10년	사업대상자	576,298(100)	272,637(47.3)	303,661(52.7)
10년	지출액	12,883	1,907	10,976
	수혜자	853(100)	126(14.8)	727(85.2)
	세출예산현액	12,558	2,246	10,312
1113	사업대상자	633,539(100)	301,274(47.6)	332,265(52.4)
11년 -	지출액	12,096	2,226	9,870
	수혜자	889(100)	164(18.4)	725(81.6)

<sup>\*</sup> 통계출처: 2011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 - 졸업생통계(교학과).

<sup>※</sup> 수혜자: 한국농수산대학 신입생(59명)과 재학생(2~3학년생 105명) 모두 포함

실제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운영에 대한 성인지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수혜자가 남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사업대상자는 633,539명 중 여성이 301,274명으로 47.6%, 남성이 332,265명으로 52.4%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수혜자 889명으로 이 중 여성의 비율은 18.4%인 164명,남성이 81.6%인 725명이다. 전체지출은 12,096백만원으로 비율에 따라 여성에게 2,226백만원, 남성에게 9,870백만원 사용되었다.

사업 결과는 성과목표치인 15%를 초과한 17.8%를 달성하였고 '09년 '10년의 여성 수혜율은 각각 14.7%, 14.8%인데 비해 '11년에는 18.4%로 전 해에 비해 소폭 상승했 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대상자의 숫자에 비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여성의 비율은 남성수혜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즉 전체 사업대상여성 301,274인 중 혜택을 받는 164명의 여성은 0.054% 정도이다. 반면 남자의 경우 전체사업대상자 중 혜택을 받는 비율이 0.22%로 4배에 이른다. 따라서 사업수혜 및 예산 분배에 있어서 사업의 많은 혜택이 남성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다) 성평등을 위한 개선방향

여성 대학입학수험생을 대상으로 한국농수산대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능력 있는 여학생들의 농수산대학 입학을 장려해야 한다. 또한 졸업 후에도 농어업계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최소한의 영농기반규모를 가진 여학생을 중심 으로 우선 선발하도록 기준을 바꾸어나가 졸업 후 계속해서 농어업 관련 분야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전공과목에 있어서도 여학생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농어촌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여성 특화된 과목을 개발하여 여성의 농어업 안착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여성졸업생들의 취업과 창업도 적극 지원하여 정예 후계농업인력 양성소로서의 이미지를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농·수산업에 대한 편견을 깨고 농·수산 사업가, 기술전문가로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졸업생 보수교육, 우수아이디어지원사업, 여성 CEO 과정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운

영하여 여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나아가 성공적인 졸업생을 배출하여야 한다.

#### 3)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

세 번째 사업 분야인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분야의 세부사업 중 하나인 농어촌 기초 생활여건개선 사업을 위해 총 10가지 사업과제가 진행되었다. 이 중 농어촌 정보이용 활성화 사업과제는 인터넷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정보이용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이 를 사업운영과 소득창출로 연결시킨다는 목표로 실시되고 있다.

농어업에서도 정보와 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많은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 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화는 농어업인의 사회적, 경제적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 나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5.1% (76명)만이 현재 농 업과 관련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의 62.2%가 집에 컴 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22.1%는 집에 컴퓨터가 있지만 사용할 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84%에 달하는 여성농업인이 컴퓨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10.7%는 컴 퓨터를 사용할 줄 알지만 농업과 관련해 이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성 농어업인의 정보이용률은 매우 낮은 현실이지만 현재 실시되는 사업과제의 시행 계획과 예산배분을 분석한 결과 정보 이용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여성 농어업인의 비율은 매우 낮은 형편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여성 농어업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위치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1) 농어촌정보이용활성화 (3-3-3-3)

### 가. 개요

#### 가) 사업목적

농어촌정보이용활성화 사업은 정보 이용 교육을 통해 농어업인의 정보격차를 해 소시키는 동시에 소득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농어촌 거 주자 중 정보화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정보화선도자로 지정하여 인근 농어업 인에 대해 정보화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사업의 담 당은 농림수산식품부 정보화담당관실이며 시행주체는 농림수산식품부, (재)한국농 림수산정보센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 나) 사업대상

농어업종사자를 포함한 농어촌 주민 전체가 정책대상이다.

# 나.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 가) 성별요구도

정보화 사회에 정보활용 능력은 여성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위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정보화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취업영역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으므로 여성의 정보이용활성화가 요구된다.

### 나) 성별형평성

2011년 전체 사업대상자 1,542,000명 중 여성이 683,000명으로 44%, 남성이 859,000명으로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실제 수혜자는 14,047명으로 이 중 여성이 38%인 5,291명, 남성이 62%인 8,756명이다. 전체지출은 267백만 원으로 수혜자의비율에 따라 사용되었다.

사업 결과는 성과목표치인 45%에 미치지 못하는 38%로 나타났다. 전체 여성 사업대상자는 전체 사업대상자의 44%로 수혜자는 이보다 낮은 수준 (38%)으로 나타났다. 또한 '09년에 64%였던 여성수혜자는 해마다 감소하여 '10년에는 41%, '11년에는 38%로 떨어졌다. 아래의 표에 보다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성 평등 효과분석>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전체	여성(비율)	남성(비율)	
	세출예산현액	534	341(64%)	193(36%)	
09년	사업대상자	1,648,000	738,000(45%)	910,000(55%)	
092	지출액	534	341(64%)	193(36%)	
	수혜자	23,390	14,936(64%)	8,454(36%)	
10년	세출예산현액	427	173(41%)	254(59%)	

	사업대상자	1,566,000	683,000(44%)	883(56%)
	지출액	427	173(41%)	254(59%)
	수혜자	24,187	9,824(41%)	27,569(59%)
	세출예산현액	267	101(38%)	166(62%)
1113	사업대상자	1,542,000	683,000(44%)	859,000(56%)
11년	지출액	267	101(38%)	166(62%)
	수혜자	14,047	5,291(38%)	8,756(62%)

\* 통계출처: 사업대상자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성/산업별취업자 중 "농업, 임업 및 어업"산업 종사자

이러한 결과는 정보활성화 교육을 받은 여성의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실제 사업대상자 비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낯선 사람을 집안에 들여야 하는 방문교 육의 특성상 여성수혜자의 비율이 낮을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의 수준은 취업기회 의 확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다) 성평등을 위한 개선방향

여성참여를 저해하는 방문교육 대신 마을회관, 여성농업인센터 등의 기관을 활용 하여 여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수 있다. 또한 여성교사를 적극 활용하여 여 성교육생에 대한 방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업대상자 44% 이상의 수 준으로 수혜자를 끌어올려 여성인력의 정보화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 4) 경제활동 다각화: 농어촌산업 고도화

경제활동 다각화 분야 세부사업인 농어촌산업 고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 8개 의 사업과제가 진행되었다. 이 중 복합산업화지원 관리와 농어업 경영컨설팅, 소규모 농어업 창업 및 소득화 지원 사업과제는 1차 산업으로 간주되던 농어업의 범위를 다각 화하여 가정경제를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실시되었다. 이 외에도 창업후계 농어업인 육성 (후계농업경영인 평가 및 홍보), 창업후계 농어업 경 영인 육성지원사업, 농가 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등의 사업과제를 통해 농어촌 인재의 역량을 강화하여 농어업 관련 사업을 운영·확장할 수 있는 지역역량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어촌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불안정하고 낮은 농어촌의 수입을 증진시켜 가장 현실적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농어업 관련 생산활동 외 관광, 상품생산 등의 다양한 소득원의 개발을 통해 많은 여성 농어업인들 이 원하는 안정적이고 다양한 수입을 거둘 수 있다.

응답자의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40% 정도만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В	lase=전체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계
■ 전		체 🔳	4.5	23.3	32.5	31.0	8.7	100.0
성	별							
	남	자	4.8	21.8	31.4	31.6	10.3	100.0
	여	자	4.3	24.6	33.6	30.4	7.1	100.0

<표 6-1> 직업에 대한 만족도

직업에 대한 만족도에 비하여 월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약 20% 정도만이 자신의 수입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Ва	ase=전체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계
 <b>■</b> 전	체 🔳		11.4	35.5	28.8	19.9	4.3	100.0
	별							
	남	자	12.3	33.7	29.1	19.9	5.0	100.0
	여	자	10.6	37.3	28.5	20.0	3.5	100.0

<표 6-2> 월 수입에 대한 만족도

이러한 결과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 로의 다양한 사업의 전개가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는 6개의 사업과제의 시행계획과 예산배분을 분석한 결과 농어촌산업고도화 관련 사업과제의 혜택을 받고 있는 여성 농어업인의 비율은 매우 낮은 형편이다. 여성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적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하여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분야 인 만큼 현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1) 복합산업화지원(포괄보조) 관리 (과제번호 4-1-1-1)

#### 가. 개요

#### 가) 사업목적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은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 산업화를 촉진하여 창업 및 기업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활동 다각화를 모 색하고자 한다. 예컨대 농산물(1차)를 가공한 식품과 민예품(2차)를 판매하여 농촌지 역의 역사·문화자원 탐방 및 관광서비스(3차) 제공을 결합하는 형태이다. 본 사업은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다 양한 1차·2차·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함을 목 적으로 한다.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산업팀이 담당하며 시행주체는 각 시· 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된다.

#### 나) 추진근거

농어촌정비법 제 72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 한 특별법 제 31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50조, 및 국가 균형발전특별 법 제 16조 등이 추진근거가 된다.

#### 다) 사업대상

농어촌에 거주하는 모든 농어민이 사업대상이다.

# 나.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 가) 성별요구도

최근 농 · 수산업의 추세는 단순 작물 생산을 넘어서, 지역민들이 직접 상품을 가공, 식품으로 만들어 시설을 현대화하는 1 · 2 · 3차 산업이 융합된 형태로 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어업인들은 생산부터 마케팅까지 전 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역량이 농어촌의 경제력 향상으로 이어진다. 이를 위 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 식품 등의 소비기반을 확충하는 프로그램을 구축 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상업기반을 마련해줌으로써 상품 개발의 효율적인 판로를 개 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기존 농어촌의 주 소득워천이 일차적인 작물생산에 서 산업의 복합화로 이행함에 따라 여성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여성 농어 업인들은 상품의 생산부터 가공. 마케팅에 이르는 과정에 참여. 주도함으로써 농어 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성장의 주요한 동력이 된다. 이와 같은 여성 인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이 충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훈련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1·2·3차 산업 복합화를 위한 생산· 마케팅 기반 구축"과 "농수산물 특화 품목 육성사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이 존 재하지만 여성 농어업인이 온전하게 참여하기 어려운 법적, 제도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프로그램 역시 남성위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따라서 복합산업화지원 프로그램에서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 농어업인이 효과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나) 성별형평성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과제는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바탕으로 1차부터 2차, 3차에 이르기까지 산업의 복합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여성 농어업인 역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특히 향토 및 식품 산업에서 두곽을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전통음식, 민예품, 관공 서비스 등으로 활동분야가 넓어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사업 지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1·2·3차 산업 복합화를 위한 생산·마케팅 기반구축

### ㅇ 사업내용

-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식품업체의 설비 현대화 등 지원
- 로컬푸드 등 지역 농수산물・식품 소비기반 확충 프로그램 지원
- 향토 상품 수출 및 마케팅
- 지원부문 : 생산자단체 또는 농어업인 조직(작목반) 생산·유통·시설비, 농 수산물 가공시설비, 홍보·마케팅비용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지원대상 : 시장·군수·구청장, 생산자단체, 농어업인조직, 가공업체 등

### □ 농수산물 특화품목 육성사업

#### ㅇ 사업내용

- 타 지역과 차별성을 가진 특화 품목(시·군별 특화품목 지정)을 육성하기 위한 생산 • 유통 • 가공분야 등 자본성 시설 지원
- ㅇ 지원부문 : 생산자단체 또는 농어업인 조직, 가공업체의 농수산물 가공시설 비 등 시설지원(지역특화품목을 활용 제조 가공업체·식품업체의 설비 현대화)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20~1,000백만원)
  - ㅇ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농어업인조직, 가공업체 등

그러나 이에 반해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프로그램에서 여성의 참여를 장 려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1·2·3차 산업 복합화를 위한 생산·마 케팅 기반 구축"과 "농수산물 특화품목 육성사업" 모두 비용의 50%를 자비로 부담 해야 지원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상태가 열악한 여성 농어업인은 참여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산업 복합화는 제품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기 때문에 일정수준 이상의 규모와 자본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 중심 의 조직들은 남성 중심의 조직에 비해 최근에 활발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자생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여성의 경우 자신의 이름으 로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경제활동을 할 근거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사 업자금대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용의 50%를 자비로 부담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건은 현실적으로 여성 농어업인 및 조직에게 불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다) 성평등을 위한 개선방향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프로그램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성 농어업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단체에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성 농어업인을 지원함으로써 아이디어 및 상품 제조 능력은 있지만 영세한 여성 농어업인 및 조직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의 밑바탕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 농어업 경영컨설팅 (과제번호 4-1-3-1)

# 가. 개요

#### 가) 사업목적

농어업 경영컨설팅 사업은 농업경영컨설팅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농가의 기술·경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비즈니스모델 개발·보급, 네트워크 구축 지원으로 사업역량 강화를 기대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담당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산업팀이다.

#### 나) 추진근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등의 지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농어업경영의 규모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농어업경영체의 회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등이 추진근거가 된다.

### 다) 사업대상

일정규모 이상의 전업농, 농업법인, 유통조직 및 마케팅 조직 등이 농어업 경영컨설팅의 대상이다.

### 나.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 가) 성별요구도

농어업 분야에서 여성의 취업영역을 확대하여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농어업인의 미소사업경영 및 사업체 운영이 활성화됨에 따라이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통해 유통, 마케팅에 있어 더욱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도록 해야 한다.

# 나) 성별형평성

2011년 전체 사업대상자 1,212,050명 중 여성이 217,266명으로 18%, 남성이 994,784명으로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실제 수혜자는 850명으로 이 중 여성이 10.7%인 91명, 남성이 89.3%인 759명이다. 지출 내역으로 분석했을 때 전체지출은 2,916백만 원으로 수혜자의 비율에 따라 여성에게 312백만 원, 남성에게 2,604백만 원이 사용되었다.

사업 결과는 성과목표치인 10%를 초과한 10.7%를 달성하였고, '10년 수혜비율 10.5%에서 소폭 상승한 10.7%가 되었다.

농어업경영컨설팅의 수혜를 받은 여성농어업인은 '09년 9%에서 '11년 10.7%로 매년 증가하였으나 증가의 폭은 매우 미비하다. 또한 사업대상자 18%에도 미치지 못하는 10.7%의 수혜자 비율은 농어업경영컨설팅 사업의 혜택을 받은 여성 농어업인이 매우 소수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농어업경영컨설팅이 개인이 아닌 농어가 및 법인단위에 지원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지는데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남성이 대표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여성이 수혜를 받는 경우도 통계에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교육의 장소가 농업기술센터나 다른 도시인 경우 여성들의 참여 욕구는 매우 떨어지게 된다. 육아, 가사, 농어업참여 등으로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이 많은 여성 농어업인들은 여성친화적인 교육환경이 제공되지 않으면 교육을 받기 어렵다.

< 성 평등 효과분석>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전체	여성(비율)	남성(비율)
	세출예산현액	_	_	_
09년	사업대상자	1,212,050	217,266(18%)	994,784(82%)
091	지출액	5,520	497(9%)	5,023(91%)
	수혜자	1,433	131(9%)	1,302(91%)
	세출예산현액	4,456	468(10.5%)	3,988(89.5%)
10년	사업대상자	1,212,050	217,266(18%)	994,784(82%)
10년	지출액	4,456	468(10.5%)	3,988(89.5%)
	수혜자	998	105(10.5%)	893(89.5%)
	세출예산현액	2,916	312(10.7%)	2,604(89.3%)
11년	사업대상자	1,212,050	217,266(18%)	994,784(82%)
1111	지출액	2,916	312(10.7%)	2,604(89.3%)
	수혜자	850	91(10.7%)	759(89.3%)

#### 다) 성평등을 위한 개선방향

여성수혜자의 비율을 사업대상자 수준 (18%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사업 홍보활동이 요구된다.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통계수치에 여성수혜자의 수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 사업대상자의 수 자체도 18%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성기업인을 육성하는 사업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성을 기업의 공동대표로 등록하거나 각종 농어업 교육에 법인의 대표로 여성을 참여시킨 경우

훈련비용을 경감해주고 다른 농어업 경영관련 프로그램 지원 시 우선적으로 선발하 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시간적, 공간적으로 멀리 이동하기 어려운 여성 농어 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보다 여성친화적인 상황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즉 여 성농업인센터와 마을회관 등 여성의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 한 농기계 훈련과 작물에 관한 교육과는 달리 직접적인 활동이 필요없는 컨설팅 교 육의 성격 상 인터넷 강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훈련과정의 일부를 온라인 수 강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

(3) 소규모 농어업 창업 및 소득화 지원 (과제번호 4-1-3-2)

#### 가. 개요

### 가) 사업목적

농촌지역의 창업 및 농촌자원 소득화를 위해 지역농산물에 부가가치를 증진시 키고 이를 농가 소득증대로 연결시키고자 한다. 이와 함께 지역 식자재와 문화를 활 용하여 향토음식의 상품화 및 체험 공간 조성으로 우리 식문화 계승 및 확산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표이다. 사업의 담당은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이다.

#### 나) 추진근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 증진), 제 21조(식품산업육성), 제 22조(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1조(향토산업의 진흥 : 지 역고유문화, 기술, 특산품 등의 조사, 발굴, 상품화 및 계승에 대한 지원), 농업인 등 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12~'17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식품산업 인력교육,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건립, 농 어업인의 식품가공 활성화), 식생활교육지원법 제 11조(식생활 체험활동 촉진), 제 12조(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과 지역농수산물의 활용). 제14조(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의 수립), 제 24조(전통 식생활문화 및 농어촌 식생활 체험 활성화), 제 29조(권한의 위임 위탁)이 추진근거가 된다.

### 다) 사업대상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농업인

### 나.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 가) 성별요구도

소규모 농업인 창업 소득화 지원과제는 국내원료를 기반으로 한 농업인의 창업 및 농촌자원 소득화 지원으로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증진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목표로 한다. 특히 2006년부터 2010년까지 92억원을 투자형 600개소에서 3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는 39개소에서 35.5억원을 투자한 실정이다. 특히 이 분야에서는 여성 농어업인의 참여를 증진시켜 농·어가의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더불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권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반면에 사업을 위한 전반적인 준비작업에 있어서 각종 법적,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한다는 점에서 여성 농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하여 아이디어는 풍부하지만 절차상의 경험이 부족한 여성 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이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나) 성별형평성

소규모 농업인 창엄 및 소득화 지원은 가공 작업장 및 시설설치, 가공장비 구입 및 설치, 포장개발, 유통 개선, 상표등록 및 출원, 홍보,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 전자상거래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등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된다. 다음은 가공사업의 설립신청 예이다.

#### I. 가공사업장 설립절차

Q1. 농업인 소규모 창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공장등록,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절차에 따라 합니다.
- ☞ 공장등록은 비산업단지는 소재지 시 군 구청(지역경제과 또는 기업지원과)
- 에 신청하고,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사무소에 신청합니다.
- ☞ 사업자등록은 관할세무서에 하며
- ☞ 영업신고는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합니다.
- Q2. 가공사업 설립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인허가명세서와 관련 첨부서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 공장등록신청일 경우 : 공장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의제처리 시 해당 법 령에서 규정하는 관련서류가 있습니다.
- ☞ 창업사업계획승인일 경우 :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부동산권 리자의 사용동의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 입주계약신청일 경우 :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 업허가증,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의 사본 등 필요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 니다.

- Q3. 사업자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개인기업인 경우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주민등록증 지참, 사 업허가증 사본,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동업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법인기업인 경우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정관 1부, 개시년도 대차대조표 1부, 사업허가증(해당업종에 한함), 주주 또는 출자명세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1부

위와 같이 현실적으로 신청서 작성부터 상표등록, 가공장비 설치, 홍보에

이르기까지 여성 농어업인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복잡한 각종 법률용어를 이해하고 복잡한 신청서 작성과 절차를 따르는 것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체에서 관리하는 품목이 식품인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도 함께 따라 식품위생법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 Q1. 영업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 식품제조, 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은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의 식품위생담당과에 영업 신고를 합니다.

#### \* 신고제외업종

-식품첨가물 또는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단순 절단, 피박, 건조, 절임, 숙성,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집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다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하거나 판매하게 하는 경우 제외)

Q2. 영업신고 시 신청서류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 영업신고를 할 때는 아래와 같은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관할기관에 방문하여 신 청하시면 됩니다.

#### \* 신청서류

가. 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37호 서식) : 영업신고 시 수수료 28,000 원

# 《참고자료》

① 법제처(www.law.go.kr)

식품위생법 조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서식 37호 다운로드

② 기타: 시 군 구청 홈페이지 민원서식자료실

③ 건강진단서는 영업신고 시 함께 제출(보건증 발급)

-발급기관 : 보건소

-지참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중 하나)

나. 교육이수증 1부(교육 이수 시)

식품공업협회(www.kfif.or.kr)

식품위생교육 메뉴 클릭 후 신규식품영업자 식품제조업 등 위생교육 일정 확인 후 교육당일 현지(교육장)에서 교육 10분 전까지 접수 및 수강료 납부 (신규교육 35,000원)

다. 제조 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 라.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환경종합정보서비스(www.etips.me.go.kr)

환경기술동향 메뉴 ⇒ 자료실 ⇒ 검색창에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입 력 후 검색키 입력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현황 다운로드 후 해당기관을 선택 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동법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

- Q3. 영업신고 수리절차는 무엇인가요
- ☞ 신고인 ⇒ 접수 전 상담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허가 시 해당) ⇒ 결재 ⇒ 허가신고증 교부
- Q4. 영업신고 후 구비해야 할 법적 서류는 무엇인가요?
- ☞ 영업자는 영업신고 후 영업 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의무적으로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위반 시 지도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비치서류

가. 영업신고증(변경신고 이행유무): 영업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추가제조식품군 변경신고

나. 품목제조보고서 : 품목제조보고 이행

다. 생산·작업기록부: 생산 및 작업기록서류 작성 및 3년간 보관

라. 원료수불부 : 원료수불관계서류 작성 및 3년간 보관

마. 자가품질검사일시 : 자가품질검사실시 및 2년간 성적서 비치(법적검사 항목 및 검사횟수의 준수 여부)

라. 건강진단결과서 :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및 관련서류 보관(년 1회 이상)

사. 위생교육이수증 : 영업자 위생교육 이수

아. 음용수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 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사용 및 관련 서류 보관(음용수의 경우 년 2회 이상, 기타 용수의 경우 1년 1회 이상 정기수질검사)

자. 생산실적보고서: 생산실적보고 이행

차. 제품거래내역서 : 제품에 대한 거래내역을 3년 이상 보관

이처럼 소규모 농어업인의 창업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높지만 실상 지원 프로그램의 활용도나 그 효과는 미비한 편이라 볼 수 있다. 소규모 사업체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복잡한 법률 용어를 이해하여 많은 서류를 작성하고 정부의 관리· 감독 지침을 파악하여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배워 관리할만한 시간 역시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다. 특히 남성에 비해 사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여성의 경우, 창업지원을 받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더 크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많은 여성 농어업인들이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창업을 포기하고 위생이나 시설 관리가 비교적 자유로운 농촌체험이나 관광사업 등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보다 다양한 방면에서 여성 농어업인을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을 홍보, 성장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 개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때 이러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요즘에 활성화되기 시작한 농수산분야의 여성 창업인 육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다) 성평등을 위한 개선방향

복잡한 법률용어를 이해가 어렵고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이유로 여성 농어업인들은 자신이 가진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어려운 법률 용어를 문의하고. 서류작성과 제출에 도움을 주거나 대행해주는 서비스부터 이후 영업신고와 위생관리까지 주기적으로 컨설팅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여 좀 더 효과적인 창업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여성농업인센터를 활용하여 여성 농어업인들이 쉽게 찾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5) 경제활동 다각화: 체험, 휴양기반구축 및 도농교류활성화

경제활동다각화의 세부사업 중 하나인 체험·휴양기반구축 및 도농교류활성화 사 업을 위해 총 7개의 사업과제가 진행되었다. 이 중 농가-마을-거점별 특성화된 농어촌 체험·휴양 기반 확충,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농촌체험활동활성화 지원 등의 세 개 사 업과제의 시행계획과 예산분배 내용을 살펴본 결과 여성의 요구도와 활용도가 높은 체험·휴양 및 도농교류 관련 산업에서 여전히 여성인력의 교육과 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체험·휴양 및 도농교류 관련 사업은 여성특유의 따뜻함과 친화력 등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여성이 가진 음식, 민속공예 등의 소프트웨어적 자질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따 라서 잠재적인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여 이를 그 지역만의 독특한 체험·휴양 관광으 로 발전시키고 도농교류를 활성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를 통해 농어업 생산 이외의 수입을 제공함으로써 여성 농어업인들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인력을 발굴하고 이들의 잠재적인 가치를 살려 사업에 연결시켜 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과제 실행결과는 리더교육과 체험·휴양 및 도농교류 사업 발굴에 있어 여성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 과정과 내용에 있어서도 여 전히 불리한 환경임을 알 수 있다.

(1) 농가-마을-거점별 특성화된 농어촌 체험 · 휴양 기반 확충 (과제번호 4-2-1-1)

### 가. 개요

#### 가) 사업목적

도시와 농어촌 간 인적·물적·문화적 자원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를 통해서 도시에서는 농어촌 환경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으며 농어촌에서는 소득증진에 기여하며, 전 국토상 지역균형개발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 소관이다.

### 나) 추진근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 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가 추진근거가 된다.

### 다) 사업대상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계획

#### 나.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 가) 성별요구도

최근에는 농가소득을 높이고 지역균형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추세이다. "농가-마을-거절별 특성화된 농어촌 체험·휴양 기반 확충" 프로그램 역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적, 물적, 문화적 자원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 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를 추진근거로 하여 농어촌 테마공원의 조성, 신문화 공간 조성,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조성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조성 사업은 다수의 여성 농어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의 역량 강화, 여성 리더 배출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역의 특성 및 마을의 환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여성들이 마을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득증진,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이러한 체험프로그램들은 대다수가 최근에 만들어진 프로그램들로, 아직은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시행중인 몇몇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여성들 이 참여하기에는 여러 하게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다. 따 라서 문제점을 개선하여 여성 농어업인이 처한 환경을 고려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 성별형평성

농어촌 체험 · 휴양마을 조성사업을 위하여 2012년에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 사무장 운영지침과 사무장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2012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 운영 지침

#### □ 사업목적

- O 농촌체험마을에 도농교류를 촉진 할 수 있는 사무장을 지원하여 농외소 득 증대와 농촌의 활력 증진을 통한 체험마을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자 함이다.
- 농촌체험마을에 사무장을 지원하여 체험프로그램 개발, 방문객 유치, 홍 보 등 농촌체험 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 ※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 어업과 농산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산어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 제6조(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지원 대상 마을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체 험·휴양마을로 지정받은 마을
- -(계속 지원마을)'11년까지 사무장을 지원한 실적이 4년을 초과하지 않은 체험마을 ※ '11년까지 지원받은 마을 중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받지 않은 마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규 지원마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중 지자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마을 ※ 다만,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중 어촌체험마을(수산개발과), 산촌생태마을(산림청)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지원됨에 따라제외

#### □ 자격 및 역할

- 자격: 마을사무장은 체험마을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19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서 상근직으로 근무 할 수 있어야 한다. (동일한 조건일 경우취약계층, 여성농어업인, 농업인자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사 교육과정이수자 순으로 채용)
- 역할: 농어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농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 농어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따른 회계·문서 등 마을사무관 리, 농어촌마을 행사기획, 고객관리, 주민교육 등 필요한 사항

# □ 지원 내용

- □ 지원 기간 : 5년 (기본 3년 + 필요시 2년)
  - 시장·군수는 매년 마을사무장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여 다음 연도 채용여부

	기어라		사 업 비(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명)	계	예산액		ગો મો ધો	마 을	
		AI 	계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	자부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350	5.040	2,520	2,520	_	2,016	504
사무장채용지원사업	350   5,040	2,320	2,320		2,010	504	

를 체험마을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O 시장·군수는 마을사무장을 3년간 지원한 체험마을에 대하여 계속 지원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2년간 지원기간 연장을 시 · 도지사에게 신 청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지원연장을 신청한 체험마을 사무장에 대한 운영성과 점검을 통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채용 방법 및 역할 분담
  - O 채용방법: 체험마을, 마을사무장, 시장·군수 3자간 협약체결
  - O 역할분담: 마을사무장은 마을에서 채용하며, 시·군은 마을에서 사무장 채용에 필요한 행정 지원
- □ 활동비 지원내용
  - O 지원액: 마을사무장 1인당 월 120만원(국고50%, 지방비40%, 마을자부담 10%)
    - 지자체별로 지방비 및 마을자부담 지급비율은 조정 시행 가능
    - 지자체 또는 마을에서 월120만원을 초과하여 추가지원 가능 (국고보조금은 최대 월60만원 한도 내 지원)
  - O 지원기간: 계속지원 마을사무장은 '11년도에 이어 '12년도에 계약기간을 변 경하여 채용하는 것이므로 12개월분 지급
    - 신규지원 마을사무장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분을 적용하되, 3월 이후 채용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지원방법 : 시·군에서는 마을 자부담을 매월 확인 후 국고 및 지방비 지

급

O 지원형태: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

# □ 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O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농어촌정책국 농어촌 사업팀

시·도, 시·군 : 농촌마을사무장채용지원 담당과

- O 기관별 역할 분담
  - 지침시달 및 시·도별 사업량·국고 배정(농식품부)
  - 지원대상마을 선정(시·도) 및 지방비 확보(시·도, 시·군)
  - 사업시행 및 예산 집행(시·군): 지원대상마을 추천 및 사무장 채용대상자 공모·선정, 협약 체결 및 이행점검 등 사업 사후관리 및 보조금 지급

### ■ 농어촌 사무장 교육

### □ 교육목적

- O 농어촌체험관광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마을사무장의 원활한 업무수 행능력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사업기획 및 마을관리 역량배양,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의 증가에 따른 교육수요 확대
- 사무장 개인의 역량에 맞는 초·중·고급의 세분화 교육 : 초급·중급·고급, 체험프로그램 개발 과정

#### □ 교육 대상

O 초급과정: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지역 신규 사무장

○ 중급과정 : 초급과정 수료자 또는 사무장경력 1년 이상인자

○ 고급과정 : 사무장경력 2년 이상인 자 중 중급과정 이수자 또는

사무장경력 3년 이상인 자

# □ 교육 기간

# O 초급과정

- 이론교육 : 3월, 4월, 5월, 3박4일(합숙), 4회 시행 - 현장실습: 4월, 5월, 6월, 2박3일(합숙), 4회 시행

O 중급과정: 5월~6월, 9월, 3박4일(합숙), 2회 시행

O 고급과정 : 10월, 3박 4일(합숙), 1회 시행

# □ 교육장소

O 초급과정(각 25명)

구분	회 차	기 간 (교육인원)	교육장소	교육장 위치				
	1차	04.17~20 (25명)	무안 월선마을	전남 무안군 청계면 월선리 246				
이론	2차	04.24~27 (25명)	천원 벌랏한지마을	충북 청원군 문의면 소전리 164				
<b>교육</b> (합숙)	3차	05.01~04 (25명)	고령 개실마을	경북 고령군 쌍림면 합가1리				
	4차	05.08~11 (25명)	횡성 봉화마을	강원 횡성군 공근면 공근리 47				
현장 실습	이론교육 종료 후 교육기간·장소·멘토 결정							

# O 중급과정(각 25명)

구	분	기 간	교육장소	교육장 위치	
1단	계	05.15~ 18	건설경영연수원	충북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662	

#### O 고급과정

기 간	교육장소	교육장 위치
10.9~12	제주 풍림리조트 "아라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2677

#### O 기타사항

- 교육당일 초급과정은 10만원 (이론교육 6, 현장교육 4), 중급과정은 12 만원(1단계교육6, 2단계교육 6), 고급과정은 8만원 현장 납부
- 교육 수료는 총 교육시간 80%이상 출석 한 경우 수료증 발급
- 권역단위(농촌마을) 사무장 교육은 농식품부 지역개발과 교육일정에 따라 시행할 계획

### \* 웰촌포털 교육정보광장 2012년 사무장과정 교육일정에서 발췌

구체적인 지침을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여성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운영은 농촌체험마을에 사무장을 지원하여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방문객 유치, 홍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는 많은 여성 농어업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사업을 통하여 여성의 역량을 강화, 여성 리더 양성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여성 사무장들이 농어촌체험관광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수준에 맞는 단계별 교육과정으로 구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농어촌 사무장 운영 지침에서 제시한 사무장의 자격 요건과 농어촌 사무장; 교육 대상 기간을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여성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농어촌 사무장 운영 지침에서 제시한 사무장의 자격 요건에 의하면 마을사무장은 체험마을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19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서 상근직으로 근무 할 수 있어야 하며 동일 조건일 경우 취약계층, 여성농어업인, 농업인자녀,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사 교육과정 이수자 순으로 채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여성 농어업인을 위한 우대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육아와 육아·가사·

농사를 병행해야하는 여성에게 상근직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은 여성 참여의 기 회를 제한 할 가능성이 있다. 농어촌 사무장 교육은 초·중·고급의 세 과정으로 구성 되어 있다. 초급과정은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간 4회 시행되며 회당 25명씩 교육 받도록 되어 있다. 초급과정의 현장실습은 2박 3일 진행되며 다른 과정은 3박 4일의 합숙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대상은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사업 지역의 사무장이다. 중급·고급과정의 경우 전 단계의 과정을 수료하거나 경력 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사무장 교육의 비용은 국고로 부담하고 숙식의 경우 4~6 만 원 정도를 자비로 부담한다. 농어촌 사무장 교육은 2박 3일 또는 3박 4일 일정으 로 합숙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육아·가사·농사를 병행해야하는 여성들이 교육 과정 에 참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교육장의 위치에 있어서도 교육생들의 주거 지와 관계없이 먼 곳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으며 고급과정의 경우 제주도에서 실 시되었다. 이 또한 여성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 다) 성평등을 위한 개선방향

농어촌 사무장 운영 지침 및 농어촌 사무장 교육과정 검토 결과 상근으로 근무 해야만 사무장 채용이 가능하다는 점, 출산 및 양육, 가사를 부담해야 하는 여성에게 는 부담스러운 합숙형태의 교육 등이 여성의 참여훈련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우선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사무장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으로 기준을 조정하 여 여성이 지역 리더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예컨대 상근으로 근무하는 대신에 몇몇 담당자들이 파트타임으로 나누어 순환근무를 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시간 및 장소의 제 한을 탄력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인터넷 교육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즉 개인적 혹은 마을회관과 같은 일정 장소에서 교육 대상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한다면 여성의 교육훈련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2)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과제번호 4-2-2-1)

가. 개요

#### 가) 사업목적

도시와 농어촌 간 인적·물적·문화적 자원의 원활환 교류를 통한 농어촌지역의 활력 회복 및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사업을 통해서 침체 된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성장의 원동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 담당이며 시행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한국 농어촌공사가 된다.

# 나) 추진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0조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및 제 51조 (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그리고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제36조 (농산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제37조 도농교류센터의 설치·운영,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제67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에 근거해 사업이 추진되었다.

#### 다) 사업대상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이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제도

#### 나.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 가) 성별요구도

2002년부터 실시되어 약 1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시와 비도시 지역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궁정적인 효과가 있다. 즉 도시와 농촌 간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도시지역 주민은 농어촌 지역의 각종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마을은 여성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분야로, 체험마을리더로서 여성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현재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체험마을리더로서 교육을 받는다면 개인의 역량

을 강화시킬 수 있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나) 성별형평성

현재 농어촌마을 리더양성과정 교육 프로그램이 다수의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교육대상
  - 초급: 농어촌지역개발분야 교육 경험이 없는 마을리더이거나 마을리더가 되고자 하는 자
  - 중급: '농어촌마을리더' 초급과정 또는 농식품부주관 리더과정 이수자중 중급 3단계를 모두 이수하고자 하는 자
  - O 고급: '농어촌마을리더'중급과정 이수자, 마을리더 5년이상 경력자 중 고급3 단계를 모두 이수하고자 하는 자
- 교육인원(금회 모집인원)
- 초급: 300명(30명×10회)
- 중급: 25명(25명**×3단계**)
- 고급: 25명(25명×**3단계**)
- 교육기간 및 장소
- O 초급과정

회차	시행기간 (기간중1박 2일)	교육장소	교육장 위치
1차	3.29~4.1	청메골 선산마을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선산마을
2차	4.12~4.15	회룡포여울마을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186 [여울마을체험장]
3차	4.26~4.27	대호농어민교육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리 533

		복지센터	
4차	6.7~6.10	개실마을	경북 고령군 쌍림면 합가1
5차	6.28~7.1	대기리마을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2리 953
6차	8.31~9.1	(제주지역 선진마을)	

# O 중급과정

단계	시행기간 (2박3일)	교육장소	교육장 위치
1단계	3.30~4.1	건설경영연수원	충북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662
2단계	4.12~4.14	안덕건강힐링 체험마을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95
3단계	5.2~5.4	건설경영연수원	충북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662

# O 고급과정

단계	시행기간 (2박3일)	교육장소	교육장 위치
1단계	5.31~6.2	건설경영연수원	충북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662
2단계	6.14~4.16	건설경영연수원	충북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662
3단계	7.12~7.14	건설경영연수원	충북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66

# 기타 사항

O 교육생 자부담(현장에서 현금납부)

• 초급 : 2만원

• 중급 : 총12만위(4만원×3단계) • 고급 : 총12만원(4만원×3단계)

- 초급은 당일 오전9:30시까지, 중급·고급 오전11:00까지 도착하여 등록
- O 교육수료는 총 교육시간의 80%이상 출석한 경우 인정
- O 교육생선발기준 : ①여성농업인 ② '10년 리더과정 이수자(초중급) ③ ~09년까 지 리더과정 이수자④ 기타 마을사업동기화과정 등 이수자 우선순

도농교류활성화 인적역량강화사업농어촌마을 리더양성과정 교육안내 중 발췌 (2011.3) 농산업도농교류지원본부 역량강화팀

농어촌마을 리더양성과정 교육은 초·중·고급 세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초급은 회당 300명으로 연간 10회가 운영되며, 중급은 25명, 고급은 25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중급과 고급의 경우는 각 등급 당 3단계의 교육과정이 있다. 각 단계의 프로그 램은 교육생이 부담하는 자부담금이 있는데 초급은 2만원 중급 고급은 4만원씩 3단 계로 각 12만원씩을 부담하게 된다. 교육생 선발기준 기준에서는 여성농업인을 우대 하고 있으며 그 밖에 2010년 리더과정 이수자와 이전 과정 이수자. 기타 마을사업동 기화과정 등에게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농어촌마을 리더양성과정 교육은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어 체계적인 교육 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부담금의 수준도 높지 않은 편이어서 여성들이 체계적으 로 농어촌마을 리더로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교육생 선발에 있어 여성농업인을 우대함으로써 많은 여성 농업인을 교육시키겠다는 의지가 드러 나다.

그러나 자세한 계획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현재의 제도는 여성 농업인들의 참여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고, 특히 초급을 넘어서는 중급, 고급 과정으로 심화된 교 육을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먼저 교육이 열리는 지역을 살 펴보면 초급의 경우 상반기 중 몇 개의 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급은 충청북도 충주와 전라남도 완주군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급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도 많은 여성들이 원거리를 이동하여야 하고 중급과 고급의 경우는 자신이 사는 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교육이 실시되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기간에 있어서도 초급은 1박 2일, 중급과 고급은 2박 3일동안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많은 여성들의 참여를 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 즉 교육을 받기 원하는 20-50대 여성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농사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집을 떠나 1박, 2박을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장소와 기간의 시스템에서는 교육이 필요한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중급과 고급은 각각 3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모든 단계를 다 참여해야만 급수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전 급을 획득해야 다음 급수로 올라갈 수 있고, 고급의 경우는 마을리더 경력 5년을 요구하여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여성에게는 불리하다.

# 다) 성평등을 위한 개선방향

앞서 검토한 농어촌마을 리더양성과정의 경우 출산과 양육, 가사를 부담하고 있는 여성의 상황에 적합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교육들이 합숙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농어업 여성들의 교육훈련 참여율 저하에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의 교육훈련 참여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합숙형태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인터넷 교육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경우 교육비용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도 여성의 교육훈련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해야 한다.

# 5) 지역발전 인적자원 확충 및 컨설팅 강화

지역역량 강화 분야의 세부사업 중 하나인 지역발전 인적자원 확충 및 컨설팅 강화사업을 위해 총 2개의 사업과제가 진행되었다. 단계별·맞춤형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와 역량강화 교육 품질 제고 등의 목표를 위해 지역 리더를 양성하고 농업인 교육훈련, 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 등의 도농교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사업과제 중 특히 농업인 교육훈련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시행계획과 예산분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여성인력의 교육과 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발견되었 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농어업인들이 경제적 ·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 는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여성 수혜율은 대상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여성 농어업인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지역의 인 적자원 확충과 직결되고 이는 지역역량 강화로 연결된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의 참 여를 저해하는 제도적 문제를 발견하여 여성의 교육 수혜율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하다.

# 1) 단계별·맞춤형 교육훈련 강화: 농업인 교육훈련 (과제번호 7-1-1-0)

#### 1) 개요

# 가) 사업목적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은 실무중심의 현장학습체제를 구축하고, 농업인 역량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 전문성과 창조성을 겸비한 농업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 나) 추진근거

농촌진흥법 제7조 (교육훈련의 실시)와 농촌진흥법 제2조3항 (교육훈련사업의 정 의) 및 동법시행령 8조 (교육훈련기본계획), 9조 (교육훈련기관), 농촌진흥청과 그 소 속기관직제 제 11조2항, 12조2항에 근거에 사업이 추진된다.

#### 다) 사업대상

창업단계 교육의 정책대상자는 귀농희망자, 이주여성농업인, 창업농 (창업 후 5년 미만)이며 예비창업단계는 특성화 농고생. 농대영농정착교육과정 참여 학교 및 학생 을 지원한다. 또한 현장실습교육은 농업인, 농고·농대생, 귀농희망자에게 교육을 제 공하고 경영교육은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 CEO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2)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 가) 성별요구도

30-50대의 여성농어업인들은 농업을 통한 소득 안정화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전문영역에 대한 교육은 여성인력을 활용하고 취업영역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농업분야의 여성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소득안정화를 이루는데 필수적이다. 특히 예비창업단계부터, 창업, 현장실습과 경영으로 이어지는 농업인 교육훈련은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된다.

# 나) 성별형평성

2011년 농업인 교육 훈련사업에 사용된 예산을 성별영향분석평가 기준을 통해 살펴보면 전체 교육생 중 여성수혜자의 비율은 28.9%로 남성농업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전체 사업대상자 2,965,000명 중 여성이 1,527,000명으로 51.5%, 남성이 1,377,000명으로 48.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실제 수혜자는 25,832 명으로 이 중 여성이 28.9%인 7,471명, 남성이 71.1%인 18,361명이다. 지출 내역으로 분석했을 때 전체지출은 18,968백만원으로 수혜자의 비율에 따라 사용되었다.

사업 결과는 성과목표치인 16%를 초과한 28.9%를 달성하였으나, '09년 수혜비율 32.6%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사업대상자의 비율이 51.5%인데 비해 실제 여성수혜자의 비율은 28.9%로 낮은 것은 여전히 교육훈련이 여성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여성이 편하게 찾기 어려운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과정이 개설되거나 특정 지역에서 1년에 한 두 차례 개설되는 경우 여성의 참여율을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 다) 성평등을 위한 개선방향

여성단체 및 교육기관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여성에 대한 농업인 교육훈련 기회를 넓혀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내용도 다양화하여 여성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면서 동시에 이를 창업의 기회로 연결시키도록 훈련하여야 한다.

# □ 성 평등 효과분석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전체	여성(비율)	남성(비율)
	세출예산현액	19,620	6,475	13,145
09년	사업대상자	3,117,322	1,607,025(51.6)	1,510,297(48.4)
09년	지출액	19,614	6,472	13,141
	수혜자	29,162	9,509(32.6)	19,653(67.4)
	세출예산현액	25,998	7,539	18,459
10년	사업대상자	3,062,956	1,561,892(51.0)	1,501,064(49.0)
10연	지출액	25,985	7,536	18,449
	수혜자	27,042	7,805(28.9)	19,237(71.1)
	세출예산현액	26,791	7,748	19,043
l 11년	사업대상자	2,965,000	1,527,000(51.5)	1,377,000(48.5)
1111	지출액	18,968	5,486	13,482
	수혜자	25,832	7,471(28.9)	18,361(71.1)

<sup>\*</sup> 통계출처 : 농림수산식품통계연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농업교육훈련 실 적자료



# 제 7 장 정책개선 과제

1.	정책의	성차별적	요인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2.	정책의	성차별적	요인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 제 7 장 정책개선 과제

# 1. 정책의 성 차별적 요인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 1) 여성 농ㆍ어업인 소프트웨어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

시설 설비와 건설 등의 하드웨어 중심 사업을 지양하고 여성 농·어업인의 소프트웨어적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친근함과 친화력, 돌봄 등의 능력은 특히 최근 들어 진행되고 있는 도농교류 사업과 관광·체험 사업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의 특산물과 자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이를 가공생산하고 체험·관광 산업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도 여성 농·어업인만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적 역량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프트웨어적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개발과 도농교류에 활용하여 경제발전과 지역활성화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다각화되어 있는 마케팅, 창업 컨설팅 등의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창업, 홍보, 마케팅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여성 농·어업인들이 시간을 따로 만들어 모든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장기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때로는 지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서 1박 2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 농어업인은 창업과 사업운영에 필요한 과정을 습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적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관리와 운영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원스탑 서비스가 요구된다. 즉 현재의 과목당 교육 대신 여성 농어업인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지식과 법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단일화된 창구를 만들어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지역 리더개발과 도농교류 관련 교육에 있어서도 여성의 소프트웨어적 자질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관광, 민박, 체험교실 등의 활동 등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목적 문화센터, 여성농업인센터, 마을회관 등의 장소에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많지 않은 여성 농·어업인들의 자질을 끌어내주는 서비스를 통해서만 이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할 수 있다. 또한 여전히 가부장적인 유교문화가 강한 농·어촌 지역에서 여성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여성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여성수혜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맞춤서비스와 여성특화 프로그램을 통해서만이 여성의 잠재적인 소프트웨어적 능력을 효과적으로 지역개발 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 2) 여성 농·어업인의 농업 외 소득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제도 구축

현재 젊은 여성 농·어업인들이 가장 원하는 농어촌에서의 삶은 농어업 외 수입을 통해 가계수익을 안정화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창업, 관리, 마케팅과 홍보에 대해 언제나 찾아가 질문하고 배울 수 있는 '현장밀착형' '맞춤형'의 원스탑 시스템 컨설팅이다. 농어업 노동과 가사, 육아 이외에 직장 생활이나 사업운영의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여성농·어업인에게는 농업 산출물을 활용한 가공제품이나 민속공예 등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고 이를 관리, 마케팅해 줄 수 있는 도움이 절실하다.

또한 특산품이 생산되는 지역의 각 가정이 식품위생법 상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가공시설을 마련하고 판매와 마케팅을 대행해서 관리해주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운영하여 생산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여성 농어업인들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 3) 여성 농·어업인의 문화·여가 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문화·여가에 대한 여성들의 수요는 매우 높지만 현실적으로 농·어촌 지역은 문화생활을 하기에 매우 열악한 현실이다. 문화·여가에 대한 요구도 분석 결과, 여성농업인을 위한 문화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고 시설도 열악하여 도시에 서 누리는 수준의 공연과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진행 하는 찾아가는 공연, 도서관 건립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게 하는 한편, 영화관이 멀어 방문하지 못하는 면·리 지역의 주민을 위해 여성농업인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다목적 문화센터 등을 건립하여 영화를 상영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바우처 활용을 현실화하여 농·어촌에서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현재 농·어촌 지역의 문화바우처 사업 집행율 하위 10개시·군은 모두 농·어촌 지역으로 평균 집행율이 10.9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도시지역인 상위 10개시·군 평균 집행률 55.57%와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러한현상은 농·어촌 정보화 활용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문화바우처 혜택을받기 위해서는 우선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이나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해당 은행에 ARS로 등록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보화 활용율이 낮고 개인시간을 갖기 힘든 여성 농·어업인의 현실에서 문화바우처의 혜택을 보기에는 현실적인 장벽이 높다. 또한 문화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의 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 문화바우처 제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때우 낮다. 따라서 이 제도를 정착시키고 농·어촌 지역에서의 문화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바우처의 수령과정을 간소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 4) 여성 농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도농교류와 휴양·체험 관광,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 등의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강조되면서 여성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여성 리더를 양성할 필요가 점차 커지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사업을 살펴본 결과 여성들이 식품과 가공된 농산물을 통해 창업을 하고 숙박·민박 및 농촌 체험 등의 농업 외 활동에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농·어촌 지역의 여성리더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대부분의 기업주와 실질적인 대표는 남성이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동을 제공하는 자리에 머물고 있다. 또한 마을에서도 사무장 등 리더십 위치는 남성인력 중심이다. 그러나 도농교류가 활발해지고 여성의 소프트웨어가 농어촌 산업의 중심

으로 떠오르면서 여성리더의 육성이 요구되므로 중점적으로 여성리더 육성을 위해 리더십 프로그램에 여성할당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리더역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창업과 농업 외 활동 (체험교사, 숲 설명가 등) 등에 대한 지원도 열악하다. 농어촌 지역의 여성은 많은 자원을 스스로 축적한 상태로 그들이 향유하는 문화와 음식, 성품 등이 모두 좋은 소프트웨어의 자질을 담고 있다. 따라서 여성 농·어업인의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여성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여성 인력과 리더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정을 비롯한 지자체의 노력이 시급하다.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는 여성농어업인을 전문 인력화해 지역 농어업 발전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7년 9월 아산시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뒤 현재까지 전체 203개의 광역·기초 지자체 중 55개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전체 자치단체 중 약 27%만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의 실행의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나서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여성농업인 전담 부서가 없어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고 중앙 정부에도 여성 농어업인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여성 인재를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여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정책이 지속성을 갖고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 2. 정책의 성 차별적 요인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분야	과제명	문제점 (개선 전)	해결책 (개선 후)
보건·복지 증진	농지담보 노후 연금제도 지원 (1-3-2-1)	1. 대부분의 농지소유자가 남성이므로 여성이 남성의 연금수령액에 의존 2. 농지연금 가입시 배우자 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조항 3.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	1/2. 여성 농업인들도 '가 정경영협약'등을 통해 남편 이 수령하는 농지담보 연 금에 대한 권리 확보가 가 능하도록 개선 3. 영농경력을 증빙하는 서

		인'이라는 가입요건	류를 현실화하여 여성의
		한 기년도 /[日本신 	농업활동 인증이 용이해지
			도록 개선
		1. 영농도우미의 사업 지원	1. 신청 조건을 완화하여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
		신청을 위한 자격 조건이	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매우 까다로움	2. 영농 및 가사도우미 이
		2. 1년간 영농도우미는 연	용 일수를 현실적으로 개
		간 10일까지, 가사도우미는	선
	취약농가	12일로 제한	3. 가족의 간병을 위해 영
	인력지원	3. 농업인이 아닌 가족이	농업무를 할 수 없을 경우
	(1-3-5-1)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에 걸	를 위해 가족의 사고 질병
		린 경우 영농도우미를 이용	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
		할 수 없음	선
		4. 영농도우미는 일당	4. 가사도우미에게도 업무
		(52,000원), 가사도우미는	에 대해 영농도우미 수준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활동	의 보수가 지급되도록 개
		비 (10,000원)만 지급	선
		1. 여전히 낮은 입학생 비	1. 인터넷 강의 등의 확충
	한국농수산 대학 개편·운영 (2-1-5-2)	율 - 접근성이 떨어져 타	을 통해 접근성 문제를 해
교육여건		도에서의 입학과 통학이 어	결하여 여학생 비율을 높
개선		려움	임
		2. 예비여성농업인을 위한	2. 여성에게 특화된 과목을
		특화된 과목이 부재하여 졸	마런
		업 후 타 직종으로 취업	1/2. 여성농업인센터 등을
		1. 정보활성화 교육 여성수	활용하여 여성친화적인 환
기초생활 인프라	농어촌 기자 10 전	혜자는 2011년 38%로 점점	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함.
	정보이용활	하락	2. 여성교사를 적극 활용하
	성화	2. 낯선 사람을 집안에 들	여 여성교육생에 대한 방
	(3-3-3-3)	여야 하는 방문교육의 형태	문교육을 실시

	복합산업화 지원 관리 (4-1-1-1)	1. 자부담 50% (국고 50%, 지방·자부담 50%) 조건은 경제적 자본이 남성에 비해 열악한 여성 농어업인 (단 체)에게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 더욱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음.	1. 여성 농어업인과 단체에 저금리 융자를 통해 자금 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경제활동 다각화	농어업 경영컨설팅 (4-1-3-1)	1. 법인단위 지원으로 (법 인 당 1명) 교육생을 선발 하는 경우 여성보다는 법인 의 대표인 남성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여성의 참여 율이 낮을 가능성이 있음. 2. 농업기술센터 등의 장소 가 교육장소로 활용될 경우 여성들이 이용하기 어려움	1. 여성을 공동대표로 세우 거나 농어업 교육에 법인 의 대표로 여성을 참여시 킨 경우 훈련비용을 경감 해주거나 농어업 경영관련 프로그램 지원 시 우선적 으로 선발권을 부여하는 제도 마련 2.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는 여성 농어업인의 특 성을 고려하여 보다 여성 친화적인 여성농업인센터 나 인터넷을 통해 강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
	소규모 농어업 창업 및 소득화 지원 (4-1-3-2)	1. 복잡한 법률과 문서작성에 대한 두려움 2. 위생관리와 시설에 대한 강한 규제에 대한 정보의부재 3. 위생관리, 유통, 마케팅, 홍보 등 사업체 운영에 대한 어려움	1. 문서의 간소화 1, 2, 3. 문서작성, 법률상 담, 사업체 운영 컨설팅 (유통, 마케팅, 홍보) 등의 문제를 한 곳에서 묻고 대 답해줄 수 있는 원스톱 서 비스 스타일의 조직 운영
	농가마을거 점별	1. 다단계로 이루어지는 교육	1. 교육단계의 개선: 1주일 에 2회씩 4주 와 같은 형

		T	
	특성화된 농어촌체험 휴양 기반 확충 (4-2-1-1)	2. 접근성이 떨어지는 교육 장소 3. 가정주부 및 여성농어업 인이 참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교육기간 (1박 혹은 2 박) 4.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사 무장의 자격 요건	3. 여성만을 위한 무박 교 육프로그램을 신설 4. 자율근무제 등을 두어 여성 사무장의 활동이 가 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4-2-2-1)	1. 다단계로 이루어지는 교육 육 2. 접근성이 떨어지는 교육 장소 3. 가정주부 및 여성농어업 인이 참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교육기간 (1박 혹은 2 박) 4. 고급 수강을 위한 마을 리더 5년 조건	1. 교육단계의 개선: 1주일에 2회씩 4주 와 같은 형식으로 운영 2, 3. 교육생의 가정에서가까운 여성농업인센터,마을회관 등의 이용을 통한 교육 장소 접근성 강화;인터넷 강좌 등을 통한 교육 서비스 제공 3. 여성만을 위한 무박 교육프로그램을 신설 4. 마을리더 5년 조건 해지
지역역량 개선	농업인 교육훈련 (7-1-1-0)	1. 여성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기술센터에 교육과정 개설 2. 여성수혜자 비율 28.9%는 다른 농어업 교육 프로그램에 비해 양호한 수치이나 여전히 사업대상자 비율	1. 여성농업인센터, 마을회 관을 비롯한 여성친화적인 환경에서 교육과정 개설 2. 여성에게 특화된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창업, 현장실습, 경영으로 연계 되는 교육훈련에 대해 적

#### 3. 세부사업별 제도개선을 위한 대안

2011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1) 보건·복지 증진, (2)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3)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4) 경제활동 다각화, (5) 문화·여가여건 개선, (6)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7) 지역역량 강화 등 7개 사업분야 중 (5) 문화·여가여건 개선과 (6)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을 제외한 다섯 개 분야에서 성별불평등한 요소를 찾을 수 있었다. (6)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분야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과제가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 상 수혜자와 예산분배의 내역을 성별로 나누는 것이 어려웠다. (5) 문화·여가여건의 경우 전문가 인터뷰와 설문결과 여성 농어업인의 높은 요구에비해 적정한 수준 문화·여가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는 농어촌 지역 전반에서 보여지는 특성이며 특별히 여성에게 불공평한 사업시행 내용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총 21개 세부사업 중 (1) 보건·복지 증진 분야의 농어촌 취약계층 복지지원, (2)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분야의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3)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분야의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 (4) 경제활동 다각화의 농어촌산업 고도화, (5) 경제활동 다각화의 체험·휴양기반구축 및 도농교류활성화, (6) 지역역량 강화의 지역발전 인적자원 확충 및 컨설팅 강화 등 6개의 세부사업에서 성별격차를 심화하는 사업시행 내용과 제도개선사항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제6장과 제7장 1절에서 설명한 18개의 사업과제에 대한 사업시행 내용과 관련지침, 예산분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사업분야	세부사업
보건·복지 증진	농어업인 생활안정 강화 농어촌 보건·의료기관 확충 <b>농어촌 취약계충 복지 지원(2)</b> 농어촌의 능동적 복지기반 강화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1)우수 공교육프로그램 확충 및 교원확보교육비 부담경감 및 균등교육기회 제공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주도의 개발체계 정착지원 정주계층별 선도거점 개발 <b>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1)</b>
경제활동 다각화	농어촌산업 고도화(3) 체험, 휴양기반구축 및 도농교류활성화(2)
문화·여가여건 개선	생활친화형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농어촌 주민 문화향유 지원 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 및 교육강화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활용 농어촌 환경오염 방지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구축
지역역량 강화	지역발전 인적자원 확충 및 컨설팅 강화(1) 지역발전 네트워크 강화 도시민 및 귀농인력 활용 강화

# (1) 농어촌 취약계층 복지지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은 가사와 육아, 농어업을 병행하여 남성 농어업인에 비해 개인시간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농어업에만 전념하는 대신 육아와 가사를 함께하는 특성 상 노동의 강도에 비해 농어업의 조력자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현실은 여성 농어업인이 사회적으로는 농어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모

호하게 하는 한편, 경제적으로도 독립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한다.

농지담보 노후연금 제도와 취약 농가 인력지원 사업과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이러한 사업과제들은 실제로 이러한 여성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농지담보 노후연금은 농어업에 참여하여 가정경제에 도움을 준 여성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며 따라서 '가족경영협약' 등을 적극적으로권고하여 여성도 가정경제권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가족경영협약'은 이미 2004년 농촌진흥청의 지원으로 부부가 가족경영협약을 체결하는 운동을 벌였다. 이를 통해 가사분담, 의사결정 시 부인의견 존중, 노동보수 및 자산 분배를위한 합리적 의사결정, 여성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경제적 보수 등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 의논하고 이를 문서화 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노동에 대한 책임 감과 경영참여를 증가시키고 남성은 여성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보상하는 민주적인 가정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정한 계층이나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제공되던 가사도우미와 영농도우미 서비스는 젊고 건강한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농어업과 가사,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여성의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 창업지원, 여성리더 발굴 등의 제도가 효과를 보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므로 훈련과 창업교육에 참여하는 여성 농어업인에게로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여성 농어업인 자기역량 강화를 위한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창업 및 사업운영, 기술 교육 등에 참여할 때 대신 가사와 농어업을 돌보아줄 수 있는 도우미를 파견하도록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예산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 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일부 지원을 통해 여성 농어업인의 노동을 경감해주어야 한다.

#### (2)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원학교, 방과 후 학교, 기숙형 고교 등은 도·농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학교의 수업효과를 향상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육성 프로그램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성이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얻고 평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농수산 분야를 특화하여 교육하는 한국농수산대학의 경우는 입학생과 졸 업생의 비율, 졸업 후 농수산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의 구성을 살펴보았을 때 수혜 자의 상당수가 남학생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제 공하는 화훼 전공 등에 더하여 농식품 가공과 지역역량개발 등의 보다 여성 친화적 인 전공과목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3)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사업과 관련된 사업과제는 불량주택을 개량·철거하고 생활용수를 개발을 추진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등의 사업이다. 또한 도로정비 와 벽지와 오지에 운행하는 공영버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 이러한 사업들은 사업의 성격 상 여성과 남성이 모두 특혜를 받으며 수혜자와 예산 의 성별 구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보이용 활성화 교육에 대한 예산은 수혜자를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할 수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수혜자의 다수가 남성이며 여성의 정보이용율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의 정보활용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으나 정보이용 교육이 기술센터 등에서 이루어질 경우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가정방문 교육의 경우도 여성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벽지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 자체를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정보이용 능력은 정보화시대에 모든 농어업인에게 필요한 기술이며 더 나아가 경제활동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센터를 잘 활용하고,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이용 수업을 개최하고, 여성 가정방문 교사를 활용하는 등 정보화교육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각화된 노력이 필요하다.

#### (4) 농어촌산업 고도화 및 체험·휴양기반구축 및 도농교류활성화

농어촌산업 고도화와 체험·휴양기반구축 및 도농교류활성화 사업은 모두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동을 다각화하고 농어업외 소득을 발생시켜 농어촌의 소득안정을 이루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산업과 농어촌생산품 수요확대 지원 등의 사업과제를 통해 농어촌 생산·유통 기반을 구축하고 향토기업을 육

성하는 등 농어업인의 생산 외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가마을거점별로 특성화된 농어촌 체험·휴양기반을 확충하고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각종 페스티벌과 사업을 지원육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 기술 교육,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많은 프로그램이 비효율적이고 남성중심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업기술센터 등의 단체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농업기술과 농기계 사용법에 대한 훈련, 창업과 경영에 대한 컨설팅 교육, 도농교류 및마을 특색화 산업 인력 양성 교육, 마을 리더 및 사무장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마을의 인재를 육성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만들어 가계수익 안정화를 도모하는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여러 기관이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때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효과적인 홍보도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와 사업수혜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다. 즉 특정 프로그램을 알고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여 다양한 교육을 받는 반면, 상대적으로 정보 습득이 떨어지는 사람은 전혀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때 폭넓은 사회생활의 기회가 없는 여성은 교육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우며 이는 장기적으로 여성의사회·경제적 위치를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이어진다.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자격과 실행 방식도 여성의 교육 참여를 저해하는 큰 원인이다. 몇몇 프로그램은 전 단계 이수를 필수로 명시하거나, 농업경력 5년, 10년 이상을 자격에 포함시킨다. 여성의 농업활동이 근거로 남기 어렵고, 출산과 보육으로 인해 경력의 단절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이러한 자격 조건들은 여성의 교육 프로그램, 특히 고급 프로그램으로의 진입을 막게 된다. 또한 1박 2일, 2박 3일로 타 도시나 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일부 프로그램은 여성의 참여율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남성에 비해 장거리이동이 쉽지 않은 여성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남성중심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가사와보육을 책임져야 하는 여성이 참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근거리인 경우에도 농업기술센터처럼 이용자의 다수가 남성인 공간에서 남성과 함께 이루어지는 교육은 여성의 교육 참여 욕구를 꺽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여성의 경력 부분은 예외적으로 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교육 프

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도 1박 2일과 같은 형식으로 초중고급을 모두 참여해야 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대체 수강하여 타 지역으로의 이동과 숙박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지역을 중심으로 열리는 교육도 내용을 여성의 필요에 맞추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장소도 마을회관이나 여성농업인센터 등으로 좀 더 여성친화적인 장소에서 여성에게 필요한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5) 지역발전 인적자원 확충 및 컨설팅 강화

농어촌 지역리더, 사무장,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 다양한 지역개발 주체에 대한 맞춤형 역량교육을 통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도농교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역개발과 함께 도시민들이 찾아올 지역을 소개하고 귀농인구를 교육할 인력을 육성한다. 그러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교육의 수혜자가 남성중심이며 여성 리더를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을 나타났다.

지역개발과 도농교류는 현실적으로 많은 여성 농어업인이 참여를 원하고 있으며 여성만이 가진 장점과 소프트웨어적 능력을 바탕으로 많은 발전이 가능한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기술교육이나 사무장 교육, 리더교육 등에서 실제로 많은여성이 배제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여러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가사노동과 육아, 농어업을 겸업하는 여성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이는 보건 · 복지 분야에서 언급했던 도우미 제도의 확대와 프로그램 운영의 현실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즉 농번기와 농한기가 비교적 뚜렷한 생산분야에는 농한기를 적극 활용하여 여성의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1:1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내에서 여성리더를 육성하고자 하는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것도 여성의 프로그램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이다. 여전히 대부분의 기업주와 실질적인 대표는 남성이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사업이나 생산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동을 제공하는 조력자의 자리에 머물고 있다. 마을에서도 사무장 등 리더십 위치는 남성인력 중심이다. 그러나 도농교류가 활발해지고 여성의 소프트웨어가 농어촌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여성리더의 육성이 요구되므로 중점적인 여성리더 육성을 위해 리더십 프로그램에 여성할당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농·어업인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을 살펴보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정부가 마련한 법률의 내용과 부처별, 분야별 지원정책 현황 및 예산 등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이해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농어업인 지원 정책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성별 격차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있는 지원 사업을 찾아내었다. 10개 사업의 성 차별적 요인과 배경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이 양성 모두의 행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이다.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와 농산물시장 개방이라는 두 가지 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변화를 겪고 있다. 농가인구는 1980년 총 인구의 28.9%에서 2010년 6.4%로 급격히 줄어들었고 전체인구에서의 고령화율인 11.3% 보다 3배 정도 높은 31.8%의 높은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다. 농어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영세·고령 농업인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1인 노인가구에 대한 지원도 시급한 상황이다. 2011년도 농가의 가구당 총소득은 3,014.8만원으로 전년대비 6.1%p 감소했으며 농산물가격의 상대적 하락으로 꾸준한 농업소득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도농간의 사회적, 경제적 격차는 계획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부재와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문제가 맞물려 농어촌의 극빈층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 환경적인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농어촌 주민에게 외부 압력인 동시에 새로운 도전을 제공하기도 한다. 즉 꾸준한 농업소득이 보장되기 어렵고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농공단지와 같은 고용노동형 농외소득 증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의 고유한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녹색관광을 포함하여 다양한 농외소득원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도농교류를 통해 농촌과 도시와의 불균형을 해소시키고 귀농을 장려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노동력을 제공하도록하고 있다. 한편 농산물시장의 개방 속에서 식품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저장・가공부

문의 역할이 증대되고, 유통경로의 전문화·다양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여성은 농업주종사자 중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농형태도 논벼 위주에서 채소·과수·화훼 등원예작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들은 여성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작목이기 때문에 여성의 농업노동 참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발달, 상품의 포장과 마케팅 등 농업경영에 있어서도 여성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어 점점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영농인력의 주체로서 여성인력의 위상을 새롭게하여 그에 걸맞는 IT 능력 등 다양한 역량 강화프로그램이 설계되고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부적·외부적 환경 속에서 여성 농어업인들을 농어촌 지역의 가치있는 노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필요와 요구를 수용하고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개 선을 이루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문헌분석과 전문가 인터뷰, 농어업인 면접조사 등을 통해 여성 농어업인들의 필요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성별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보 건·복지,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경제활동 다각화 분야, 문화·여가 여건 개선, 환 경·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의 면에서 다양한 여성 농어업인의 요구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성별요구도 분석을 바탕으로 2011년에 시행된 118개의 사업과제를 살펴보고 대상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10개의 사업과제에서 제도개선이 요구되었다. 보건복지 증진, 교육여건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경제활동 다각화, 지역 역량 개선 등의 분야에서 성별요구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부문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① 가사'・육아・농어업을 병행하는 여성의 삶에 대한 지원 부재
- ② 남성중심적인 개인역량강화 훈련
- ③ 창업 및 농업 외 활동 진출 장벽
- ④ 여성 리더 육성 제도의 부재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은 가사와 육아, 농어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육체노동양이 많으며 개인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개인역량강화를 위한 훈련이나 농업 외 활동을 통한 창업, 마을 사무장 등의 리더십 등을 발휘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또한 여성 농어업인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활동과 공간의 부재로 농한기나 여가 시간에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두 번째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인역량강화 훈련 및 리더 교육 프로그램이 여성의 현실과 필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기술과 농기계 사용법에 대한 훈련, 창업과 경영에 대한 컨설팅 교육, 도농교류 및 마을 특색화 산업 인력 양성교육, 마을 리더 및 사무장 교육 등 다양한 교육들이 마을의 인재를 육성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업기술센터 등의 단체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이 농업과 어업 외의 수입을 통해 가계수익 안정화를 도모하고 꾸준히지역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리더로 성장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관련기관에서 여러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교육 내용이 중복되고 홍보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와 사업수혜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자격과 실행 방식도 여성의 교육 참여를 저해하는 큰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몇몇 프로그램은 전 단계 이수를 필수로 명시하거나, 농업경력 5년, 10년 이상을 자격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의 농업활동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출산과 보육으로 인해 경력의 단절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이러한 자격조건들은 여성의 교육 프로그램, 특히 고급 프로그램으로의 진입을 막게 된다. 또한 1박 2일, 2박 3일로 타 도시나 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일부 프로그램은 여성의 참여를 어렵게 한다. 근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농업기술센터처럼 이용자의 다수가 남성인 공간에서 남성과 함께 이루어지는 교육은 여성의 교육 참여를 어렵게 하기도 한다.

세 번째로 여성의 창업과 농업 외 활동 (체험교사, 숲 설명가 등)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다. 많은 문화와 식품, 체험 관련 자원을 축적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여성들이 이와같은 자원을 상품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각종 법적,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현실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여성 농어업인들에게 마케팅, 유통, 홍보 등과 같이 과목별로 세분화 되어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필요한기술적 지식과 법률 정보 및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단일화된 창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농어촌에 여성리더가 많지 않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 또한 미비하다는 점이다. 예전에 비해 많은 여성들이 식품 및 농산물 가공, 숙박·민박 및 농촌 체험 등의 농어업 외 활동에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리더의 역할을 하는 여성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즉 대부분의 기업주와 실질적인 대표는 남성이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동을 제공하는 자리에 머물고 있다. 또한 마을과 지역 공동체에서도 사무장 등 리더는 남성이 맡고 있으며 여성 리더를 육성하려는 제도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도농교류가 활발해지고 여성의 소프트웨어가 농어촌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여성리더의 역할이 중요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 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분석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다.

- ① 여성 농ㆍ어업인 소프트웨어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
- ② 여성 농·어업인의 농어업 외 소득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제도 구축
  - ③ 여성 농ㆍ어업인의 문화ㆍ여가 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④ 여성 농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향후 지역개발과 지역역량강화 사업의 방향은 시설 설비와 건설 등의 하드웨어에서 문화와 경관, 식품 등의 소프트웨어적 역량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친근함과 친화력, 돌봄 등의 능력이 지역에서 향유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적 자원과 결합하여 도농교류 사업과 관광·체험 사업에 큰 강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의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개발과 도농교류에 활용하여 경제발전과 지역활성화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다각화되어 있는 마케팅, 창업 컨설팅 등의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여성 농·어업인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던 세분화된 교육 프로그램 및 지리적으로 멀고 장기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프로그램 운영형태 대신 여성 친화적인 맞춤형 서비스 형태로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즉 현재의 과목별 교육 대신 여성 농어업인들이 사업을 운영하고 역량강화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단일화된 창구를 만들어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맞춤서비스와 여성특화프로그램을 통해서만이 여성의 잠재적인 소프트웨어적 능력을 효과적으로 지역개발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두 번째 제도 개선의 방향은 농어업 외 소득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젋은 여성 농·어업인들이 가장 원하는 농어촌에서

의 삶은 농어업 외 수입을 통해 가계수익을 안정화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찾는 삶이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창업, 관리, 마케팅과 홍보에 대해 언제나 찾아가 질문하고 배울 수 있는 '현장밀착형' '맞춤형'의 원스탑 시스템 컨설팅이다. 농어업 외에 직장 생활이나 사업운영의 경험이 없는 여성 농·어업인에게는 농업 산출물을 활용한 가공제품이나 민속공예 등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고 이를 관리, 마케팅해 줄 수 있는 도움이 절실하다. 또한 각 가정이 식품가공사업을 위한 모든 설비를 갖추는 대신 마을 단위로 가공시설을 마련하여 판매와 마케팅을 대행해서 관리해주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운영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생산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세 번째로 농어촌 지역의 여성 농·어업인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여가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에 대한 여성들의 수요는 매우 높지만 현실적으로 농·어촌 지역은 이를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여성 농·어업인을 위한 문화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고시설도 열악하여 도시에서 누리는 수준의 공연과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진행하는 찾아가는 공연, 도서관 건립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게 하는 한편, 여성농업인센터 및 마을회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영화를 상영하는 다목적 문화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바우처 활용을 현실화하여 농·어촌에서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농어촌 정보화 활용 수준 및 가맹점 수를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제도는 농어촌의 문화 활동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문화바우처의 수령과정을 간소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 리더를 포함한 농·어업인을 육성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도농교류와 휴양·체험 관광,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 등의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가 강조되면서 이 분야에서의 여성이 진출이 늘어나고 농어업 외 활동에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농·어촌 지역의 여성리더는 찾아보기 쉽지 않고 대부분의 기업주와 실질적인 대표, 마을의 사무장 등의 리더십 위치는 남성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농교류가 활발해지고 여성의 소프트웨어가 농어

촌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여성리더의 육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리더십 프로그램에 여성할당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여성 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의 제정과 중앙부처의 여성 농어업인 전담 부서 설치와 같은 실질적인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는 여성농어업인을 전문 인력화 하여 지역 농어업 발전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7년 9월 아산시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뒤 현재까지 전체 203개의 광역·기초지자체 중 55개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전체 자치단체 중 약 27%만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의 실행의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나서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고 여성 농어업인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여성 농어업인 전담 부서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강혜정, 2008,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수산식품부.

경남발전연구원. 2007.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김영옥 외, 2001, 「여성농업인의 취업유형별 소득전망과 정책개발」. 농림부.

김영옥 외. 2005,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중간평가」. 농림부.

김영옥·김이선, 1999, 「21C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연구」. 농림부.

김영옥·김이선, 2003,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부.

김정호 외, 2007, 농가의 경제사회적 성격 변화와 전망, 농촌경제연구원.

김준, 2008, "제18장. 어업경영", 『푸른 들, 숲, 바다 그리고 삶』, 통계개발원

김철규, 2008, "제4장. 한국경제와 농림어업", 『푸른 들, 숲, 바다 그리고 삶』, 통계개 발원

김흥주, 2012, "제3장. 농촌가족의 구조와 변동", 『새로운 농촌사회학』, 집문당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2009) 농기계임대사업 성별영향평가

전라북도. 2006. 전라북도 농업 인력 육성정책 성별영향평가

창원대학교 여성커리어개발센터. 2005. 경상남도 창업농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사업 및 도시 경관 계획 수립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4,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여성부

통계개발원, 2008, "푸른 들, 숲, 바다 그리고 삶" 보도자료

통계청, 「2008년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개요」

통계청, 2006, "2005 농림어업총조사 최종집계결과" 보도자료

통계청, 2011, "2010 농림어업총조사 최종결과" 보도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농업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농업인대학 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허미영, 2012, "제11장. 농촌과 여성", 『새로운 농촌사회학』, 집문당

Hafkin N. and Taggart N, 2001, Gender, Information Technology And Developing

Countries: An Analytic Study. Washington, DC: WID Office USAID

# (부록 1)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남자	여자	계
연령	만 19~29세	87( 8.7%)	90( 9.0%)	177(17.7%)
	만 30~39세	86( 8.6%)	114(11.4%)	200(20.0%)
	만 40~49세	101(10.1%)	94( 9.4%)	195(19.5%)
	만 50~59세	105(10.5%)	104(10.4%)	209(20.9%)
	만 60세 이상	110(11.0%)	109(10.9%)	219(21.9%)
	중졸 이하	248(24.8%)	177(17.7%)	425(42.5%)
학력	고졸	191(19.1%)	237(23.7%)	428(42.8%)
	대졸	50( 5.0%)	97( 9.7%)	147(14.7%)
	서울	11( 1.1%)	17( 1.7%)	208(20.8%)
	부산	15( 1.5%)	19( 1.9%)	74( 7.4%)
	대구	16( 1.6%)	18( 1.8%)	54( 5.4%)
	인천	18( 1.8%)	19( 1.9%)	57( 5.7%)
	광주	13( 1.3%)	15( 1.5%)	28( 2.8%)
	대전	15( 1.5%)	15( 1.5%)	30( 3.0%)
	울산	10( 1.0%)	11( 1.1%)	21( 2.1%)
2) (r)	경기	115(11.5%)	116(11.6%)	231(23.1%)
지역	강원	36( 3.6%)	36( 3.6%)	32( 3.2%)
	충북	34( 3.4%)	36( 3.6%)	30( 3.0%)
	충남	50( 5.0%)	51( 5.1%)	41( 4.1%)
	전북	47( 5.7%)	49( 4.9%)	36( 3.6%)
	전남	47( 5.7%)	47( 4.7%)	34( 3.4%)
	경북	26( 2.6%)	27( 2.7%)	53( 5.3%)
	경남	31( 3.1%)	30( 3.0%)	61( 6.1%)
	제주	5( 0.5%)	5( 0.5%)	10( 1.0%)
	100만원 미만	179(17.9%)	198(19.8%)	48( 4.8%)
	100만원~199만원 이하	144(14.4%)	139(13.9%)	283(28.3%)
	200만원~299만원 이하	104(10.4%)	96( 9.6%)	200(20.0%)
	300만원~399만원 이하	41( 4.1%)	52( 5.2%)	93( 9.3%)
	400만원~499만원 이하	9( 0.9%)	15( 1.5%)	224(22.4%)
	500만원~599만원 이하	6( 0.6%)	7( 0.7%)	103(10.3%)
	600만원~699만원 이하	1( 0.1%)	1( 0.1%)	25( 2.5%)
	700만원~799만원 이하	2( 0.2%)	2( 0.2%)	12( 1.2%)
	800만원~899만원 이하	1( 0.1%)	1( 0.1%)	4( 0.4%)
	900만원~999만원 이하	1( 0.1%)	0( 0.0%)	2( 0.2%)
	1,000만원 이상	1( 0.1%)	0( 0.0%)	6( 0.6%)
	계	489(48.9%)	511(51.1%)	1000(100%)